
환 경 국

2026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환경정책과



하동천 생태탐방로 운영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양촌읍 누산리 1065-1번지 일원
사업규모	생태탐방로 면적 : 97,686㎡(보행길이 약 2.5km)		
사업목적	하동천 생태탐방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관리를 통한 탐방로를 이용하는 탐방객 편의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5,546	90,357	70,957	0	19,400	0	87,754	-2,603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5,546	90,357	70,957		19,400		87,754	-2,603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7,754	
하동천 생태탐방로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운영경비	= 86,340	
		- 관리운영경비(운영물품 구입, 공공요금 등)	= 23,036	
		- 시설물유지보수(수목관리, 목재데크 유지보수 등)	= 63,304	
		○ 경상이전	= 300	
	402-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 영조물(재해)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 100,000원*3회	= 300	
		○ 자본지출	= 1,114	
		- 자산 및 물품취득비(시설정비용 공구)	= 1,114	

□ 예산요구 사유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인 하동천 생태탐방로의 유지관리(수목, 시설물 등), 시설물 적기 보수 등을 위한 필수 예산
- 10년 이상 노후화 된 탐방로의 안전사고 예방 및 탐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 예산

□ 예산증감 사유

- 유지관리대상 수목 확대에 따른 제초 및 병충해 방제 등 관리비용 증액
- 탐방객 및 작업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선유지비 및 자산취득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1. 08. : 하동천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준공
 - 2011. 10. : 하동천 생태탐방로 위탁관리 운영 협약 체결(김포시↔김포도시관리공사)
 - 2011. 11. ~ 현재 : 하동천 생태탐방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위탁대행관리 운영중
 - 2026. 01. ~ 2026. 12. : 분기별 대행사업비 교부, 탐방로 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연간이용객 : 22,317명 -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자보수: 파손 나무펜스 보수, 시설물 정기점검(전기, 소화기 등), CCTV설치, 탐방로 안내판 설치 전동공구 구입 등
2024	- 연간이용객 : 28,025명 -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자보수: 파손 나무펜스 보수, 시설물 정기점검(전기, 소화기 등), 가로등 및 데크등 유지보수, 병충해 방제(수간주사)등
2025	- 연간이용객 : 23,381명(2025. 10. 31.기준) -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자보수: 파손 나무펜스 보수, 시설물 정기점검(전기, 소화기 등), 병충해 방제, 조류관찰대 철거, 보행데크 관리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2,533	129,763	-	2,770	
2024	75,546	73,728	-	1,818	
2025	90,357	90,357	-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환경정책과	사업규모	97,686㎡(보행길이 2.5km)	본예산 요구액 (천원)	120,509
부기명 (세부사업)	하동천 생태탐방로 운영	사업위치	양촌읍 누산리 1065-1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수질총량팀장 김선영	담당자	행정8급 강민지	전화	2150
-----	-------	------------	-----	----------	----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사업기간	2026. 2.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농가(9농가)		
사업목적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야생동물 포획을 최소화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생태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 제7조 제2025-50호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방조망·경음기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7,000	27,000	27,000	0	0	0	27,000	0	
국비	13,500	13,500	13,500				13,500	0	
도비		0						0	
시비	13,500	13,500	13,500				13,500	0	
기타		0						0	자부담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7,000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3,000,000원*9농가 =	27,000	

예산요구 사유

-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철제 울타리, 방조망 등)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예산증감 사유

- 증감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2. :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6. 3. :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공고 및 접수

- 2026. 4. ~ :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및 보조금 지급(추후 수시 공고 및 보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집행금액 : 29,460천원 ○ 지원농가 : 8농가(철제울타리 : 6농가, 방조망 : 2농가)
2024	○ 집행금액 : 24,000천원 ○ 지원농가 : 7농가(철제울타리 : 6농가, 방조망 : 1농가)
2025	○ 집행금액 : 18,000천원 ○ 지원농가 : 3농가(방조망 : 3농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0	29,460	-	540	
2024	27,000	24,000	-	3,000	
2025	27,000	18,000	-	9,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차진복	담당자	행정9급 채민서	전화	2833
-----	-------	------------	-----	----------	----	------

야생동물 피해지원 및 보상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지역
사업규모	야생동물 대상		
사업목적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주택가 내 조류, 파충류 등에 의한 피해 민원 증가에 따라 기피제를 구입·지원하여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및 제58조의2 제5항 제23조의3 제3항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사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7조 제1항
제7조(피해보상 한도) ① 농작물 피해 관련 보상은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7,920	21,420	21,420	0	0	0	24,760	3,34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7,920	21,420	21,420				24,760	3,34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4,760	
야생동물 피해지원 및 보상	201-01 사무관리비	· 피해방지단 운영비(GPS시스템, 안전용품 등) : 5,760,000원 · 야생조류 AI, 야생멧돼지 ASF 관련 비용 : 3,000,000원	= 5,760 = 3,000	
	206-01 재료비	· 유해야생동물 유인먹이 구입 : 1,000,000원	= 1,000	
	301-14 기타보상금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 보상금 : 10,000,000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 5,000,000원	= 10,000 = 5,000	

□ 예산요구 사유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필요
-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유인 먹이비 및 인쇄비, 상해사고 방지를 위한 위성항법 장치(GPS), 수렵보험 가입, 안전용품 등 지원 필요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보상금 예산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른 보상을 위한 500만원 예산 확보
- 야생멧돼지 포획 증가와 잔여 개체가 7~8마리로 확인됨에 따라 사체 수거·처리 비용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 수립
 - 2026. 1. ~ 2026. 12. :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수리 및 관계기관(경찰서, 군부대) 협의 등
 - 2026. 1. ~ 2026. 12.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2026. 1. ~ 2026. 12. :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 및 지급
 - 2026. 12.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상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포획 포상금 집행액: 5,887천원 - 포획수: 751마리(고라니 등 : 30마리, 조류 721마리) - 농가 피해보상 집행액 : - 천원
2024	- 포획 포상금 집행액: 9,841천원 - 포획수: 1,240마리(고라니 등 : 27마리, 조류 1,213마리) - 농가 피해보상 집행액: 3,038천원 - 보상 농가 수: 3농가
2025	- 포획 포상금 집행액: -천원 - 포획수: 708마리(멧돼지 등 : 3마리, 조류 705마리) - 농가 피해보상 집행액: 1,305천원 - 보상 농가 수: 1농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020	9,966	-	6,054	
2024	27,920	19,169	-	8,751	
2025	21,420	5,755	-	15,66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차진복	담당자	행정9급 채민서	전화	2833
-----	-------	------------	-----	----------	----	------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부상 야생동물 구조 약 500여건					
사업목적		조난 및 부상 야생동물을 적기에 구조·이송 및 치료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민원해소 및 자연생태계 보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34조의4 제1항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①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조난 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환경기본조례			제5조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무를 진다. 3. 야생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4,000	34,000	34,000	0	0	0	34,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4,000	34,000	34,000				34,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4,000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201-01 사무관리비	·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이송비 : 22,000,000원	= 22,000	
	206-01 재료비	· 부상 야생동물 먹이 구입 : 12,000,000원	= 12,000	

□ 예산요구 사유

- 부상야생동물의 구조의뢰 건수 증가 및 야생동물 보호의식 향상에 따른 야생동물 구조·치료 활동지원 확대
- 구조 이후 먹이 공급을 통한 회복지원으로 자연복귀를 촉진하여 관내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증감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2026년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25. 12. : 2026년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용역 계약 의뢰(자산관리과)
 - 2026. 1. ~ 2026. 12. :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이송 용역 착수
 - 2026. 1. ~ 2026. 12. : 월별 부상 야생동물 먹이 구입 및 공급
 - 2026. 1. ~ 2026. 12. : 부분 기성계 제출 및 부분 준공
 - 2026. 12. : 용역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구조 및 이송 용역 건수 : 505건 · 먹이(생닭) 구입 : 1,569마리
2024	· 구조 및 이송 용역 건수 : 436건 · 먹이(생닭) 구입 : 2,150마리
2025	· 구조 및 이송 용역 건수 : 282건 · 먹이(생닭)구입 : 1,140마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 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2,000	31,923	-	77	
2024	34,000	33,970	-	30	
2025	34,000	17,245	-	16,75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차진복	담당자	행정9급 채민서	전화	2833
-----	-------	------------	-----	----------	----	------

조난동물 구호체계 구축사업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부상 야생동물 치료 약 50건		
사업목적	부상 및 조난 야생동물을 적기에 구조·치료하여 야생동물 관련 민원 해소 및 자연생태계 보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4조의4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조난 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환경기본조례	제5조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무를 진다. 3. 야생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000	5,000	5,000	0	0	0	5,000	0	
국비		0						0	
도비	1,000	1,500	1,500				1,500	0	
시비	4,000	3,500	3,500				3,5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	
조난동물 구호체계 구축사업	307-01 의료 및 구료비	·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 : 5,000,000원	= 5,000	

□ 예산요구 사유

- 각종 산업·도시화로 인해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 구조·치료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멸종위기종의 경우 도(道)지정 동물병원에 치료를 의뢰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증감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2026년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계획 수립
- 2026. 1. ~ 2026. 12. : 2026년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사업 추진
- 2026. 11. ~ 2026. 12. : 2026년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 지원[도(道) 지정 기관 : 한마음 동물병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치료건수 : 35건
2024	○ 치료건수 : 45건
2025	○ 치료건수 : 18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200	3,200	-	-	
2024	5,000	5,000	-	-	
2025	5,000	-	-	5,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차진복	담당자	행정9급 채민서	전화	2833
-----	-------	------------	-----	----------	----	------

야생멧돼지 포획장비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고촌, 장기, 월곶)
사업규모	야생멧돼지 포획장비 15기(포획틀 5기, 포획트랩 10기)		
사업목적	야생멧돼지 포획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야생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안전망 구축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3 제5항 및 제58조 5호
		제23조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야생생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의 3. 서식지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93	10,906	10,906	0	0	0	13,000	2,09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093	10,906	10,906				13,000	2,094	
기타		0						0	자부담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000	
야생멧돼지 포획장비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야생멧돼지 포획장비 유지관리 용역 : 12,000,000원 · 소규모 수선비 : 1,000,000원	= 13,000	

예산요구 사유

- 2025.8.기준 3마리 포획했으나 잔여 개체 7~8마리로 추정됨에 따라 포획 활동 장기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필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된 포획 장비의 정기 점검과 유인 먹이 교체를 통한 야생멧돼지 포획을 제고

예산증감 사유

- 포획 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GPS, 진동센서 등 전자 부품 수리 및 트랩 발판 교체 등을 위한 소규모 수선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2026년 야생멧돼지 포획장비 유지관리 추진 계획 수립
 - 2025. 12. : 2026년 야생멧돼지 포획장비 유지관리 용역 계약 의뢰(자산관리과)
 - 2026. 1. ~ 2026. 12. : 야생멧돼지 포획장비 유지관리 용역 착수
 - 2026. 1. ~ 12. : 부분 기성계 제출 및 부분 준공
 - 2026. 12. : 용역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포획장비 점검 횟수 : 45회
2024	· 포획장비 점검 횟수 : 85회
2025	· 포획장비 점검 횟수 : 69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500	4,222	-	2,278	
2024	10,093	9,081	-	1,012	
2025	10,906	6,505	-	4,40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차진복	담당자	행정9급 채민서	전화	2833
-----	-------	------------	-----	----------	----	------

동물원 허가 및 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동물원 신규·변경 허가 대상		
사업목적	관내 등록 동물원 1개소를 포함한 동물원 허가변경심사 및 관리업무를 통해 동물복지 실현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처리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동물원 허가관리 업무처리 지침	제8조 및 제12조 제1항 1,2,3호 제10조 제2항, 제4항 제8조의3 제1항 제7994호 제9조 제1항 환경부_2023.12.
		제8조(허가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② 허가권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되, 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이하“검사관”이라 한다)중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검사관이 현장조사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하여 동물의 생태 및 동물복지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지원 2. 제22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대한 검사 지원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① 도지사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3,000	3,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3,000	3,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동물원 허가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검사관 수당 - 서류 검토 수당 : 100,000원*2회*5개소 - 자문료(현장조사) : 200,000*2회*5개소	= 1.000 = 2.000	

□ 예산요구 사유

- 2023년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동물원 허가 심사 절차 수행
검사관 수당 및 자문료 지급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 관내 동물원 허가 대상 서류 접수 및 행정절차 이행
 - 2026. 1. ~ 2026. 12. : 검사관 위촉 및 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차진복	담당자	행정9급 채민서	전화	2833
-----	-------	------------	-----	----------	----	------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하천변
사업규모	약 40,000㎡		
사업목적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생물을 제거하여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교란식물을 관리하기 위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8,000	48,000	48,000	0	0	0	48,000	0	
국비	24,000	24,000	24,000				24,000	0	
도비		0						0	
시비	24,000	24,000	24,000				24,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8,000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401-01 시설비	·노무비: 350*40,000㎡*2회	= 28,000	
		·경비: 7,500,000원	= 7,500	
		·일반관리비: 2,100,000원	= 2,100	
		·이윤 및 부가세 등: 10,400,000원	= 10,400	

□ 예산요구 사유

○ 생태계교란 식물인 단풍잎돼지풀 및 가시박 등이 분포되어 있는 하천변을 대상으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을 실시하여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

□ 예산증감 사유

○ 증감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4. : 2026년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6. 05. : 계약 및 1회차 제거 작업 실시
 - 2026. 09. : 2회차 제거 사업 실시
 - 2026. 10. : 준공 및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봉성포천 상류부 ~ 중류부 86,000㎡ 제거 완료
2024	○ 거물대천 중류부 ~ 하류부 89,500㎡ 제거 완료
2025	○ 거물대천 시점 ~ 가현교차로 및 마송천 총 70,000㎡ 제거 완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8,000	38,924	-	9,076	
2024	48,000	41,949	-	6,051	
2025	48,000	41,080	-	6,92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차진복	담당자	행정7급 유예나	전화	2246
-----	-------	------------	-----	----------	----	------

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 운영지원(사업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사)자연보호중앙연맹 김포시협의회	대표자	이만근
사업목적	자연보호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 조성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환경실천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이 필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แท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제2항
		제54조(국고보조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제3조(지원) 김포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조직과 자연보호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2,400	2,400	2,400	0	0	0	3,345	945	
시비	1,800	1,800	1,800				2,645	845	
자부담	600	600	600				700	1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합 계	계	보조금	자부담	
			3,345	2,645	700	
자연보호김포시 협의회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중앙회비 및 경기도회비 · 700,000원 * 1회 =	700		700	
		- 현수막 50,000원 * 12회 =	600	600		
		- 자연보호 활동 자재(소모품) 구입 · 장갑, 낫, 흙공 등 =	845	845		
		- 자연보호동산 식재사업(야생화) * 1,200,000원 1식 =	1,200	1,200		

□ 예산요구 사유

- 자연보호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환경실천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자연보호활동 활성화 및 다양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소모품(장갑, 낫, 흙공 등) 구입비 증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사)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 ○ 추진실적 - 겨울철새 먹이주기&환경정화활동 (23. 1. 7.) - 계양천 일대 환경정화활동 1차 (23. 3. 4.) - 계양천 일대 환경정화활동 2차 (23. 4. 1.) - 우리동네 탄소줄 조성사업 관련 나무식재 (23. 5. 22.) - 기초질서 및 탄소중립 제로 캠페인 운동 (23. 6. 3.) - 계양천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정화활동 (23. 7. 1.) - 철책 근처 한강 도로변 환경정화활동 (23. 9. 2.) - 나진포천 일대 환경정화활동 (23. 10. 7.) - 사우동 미세먼지지거함-수질보전실천 캠페인운동 (23. 11.4.) - 구래동 일대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운동 (23. 12. 2.)
2024	○ 보조사업자 : (사)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 ○ 추진실적 - 장릉산 플로킹산행 및 환경정화활동 (24. 1. 6.) - 완치조류 방사-철새먹이주기 행사 (24. 1. 25.) - 금파로12 설맞이 대청소 (24 2. 3.) - 사우·북변 일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운동(24. 3. 2.) - 덕포진 일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24. 4. 6.) - 자연보호헌장비 청소 및 주변 정화활동 (24. 5. 4.) - 계양천 생태교란식물 퇴치 및 환경정화활동(24. 6. 1.) - 사우4거리 미세먼지 저감실천운동 및 환경정화활동 (24. 7. 6.) - 계양천 수질정화(흙공던지기) 및 추석맞이 환경정화활동 (24. 9. 7.) - 자연보호헌장선포 제46주년 기념행사 및 수련대회 (24. 10. 5.) - 풍무동 중앙공원 꽃무름심기 행사 및 환경정화 (24. 10. 29.) - 기초질서 캠페인 및 미세먼지 저감실천운동(24. 11 .2.) - 기초질서 캠페인 및 미세먼지 저감실천운동 (24. 12. 7.)
2025	○ 보조사업자 : (사)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 ○ 추진실적 - 홍도평 설맞이 환경정화 활동 (25. 1. 4.) - 기현산 일대 산불조심 캠페인 및 족자 현수막달기(25. 2. 1.) - 금파로 겨울철새먹이주기행사 (25. 3. 3.) - 문수산 일대 산불조심캠페인 및 족자현수막달기(25. 3. 22.) - 수안산 자연보호동산 식목행사 및 자연정화활동(25. 4. 5.) - 자연보호헌장비 청소 및 주변 정화활동 (25. 5. 3.) - 연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역사탐방 및 워크샵 (25. 6. 7.) - 수안산 생태교란식물 퇴치작업 및 환경정화활동 (25. 7. 5.) - 사우동 기초질서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25. 9. 6.) - 계양천 추석맞이 대청소 및 환경정화활동(25. 10. 4.)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2,400	1,800	600	2,400	1,800	600	0	0	0	
2024	2,400	1,800	600	2,400	1,800	600	0	0	0	
2025	2,400	1,800	600	2,400	1,800	600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차진복	담당자	행정7급 서국원	전화	2258
-----	-------	------------	-----	----------	----	------

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 운영지원(운영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사)자연보호중앙연맹 김포시협의회	대표자	이만근
사업목적	자연보호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 조성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환경실천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이 필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템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제2항
		제54조(국고보조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제3조(지원) 김포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조직과 자연보호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11,850	11,810	11,810	0	0	0	17,184	5,374	
시비	7,530	7,490	7,490				16,440	8,950	
자부담	4,320	4,320	4,320				744	-3,576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합 계	계	보조금	자부담	
			17,184	16,440	744	
자연보호김포시 협의회 운영지원	307-03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 사무국 인건비 · 기본급 : 10,320월 * 5시간 * 20일 * 12월 =	12,384	11,640	744	
		- 사무실임차료 : 3,600,000월 * 1회 =	3,600	3,600		
		- 사무실운영 공과금 · 각종 공과금(전기요금 및 통신료 등) : 100,000월 * 12월 =	1,200	1,200		

□ 예산요구 사유

- 자연보호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환경실천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실 상근 직원 인건비 현실화, 사무실 확장 이전에 따른 임대료 증액 등으로 운영비 증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사)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 ○ 추진실적 - 겨울철새 먹이주기&환경정화활동 (23. 1. 7.) - 계양천 일대 환경정화활동 1차 (23. 3. 4.) - 계양천 일대 환경정화활동 2차 (23. 4. 1.) - 우리동네 탄소소수 조성사업 관련 나무식재 (23. 5. 22.) - 기초질서 및 탄소중립 제로 캠페인 운동 (23. 6. 3.) - 계양천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정화활동 (23. 7. 1.) - 철책 근처 한강 도로변 환경정화활동 (23. 9. 2.) - 나진포천 일대 환경정화활동 (23. 10. 7.) - 사우동 미세먼지저감·수질보전실천 캠페인운동 (23. 11.4.) - 구래동 일대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운동 (23. 12. 2.)
2024	○ 보조사업자 : (사)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 ○ 추진실적 - 장릉산 플로깅산행 및 환경정화활동 (24. 1. 6.) - 완치조류 방사·철새먹이주기 행사 (24. 1. 25.) - 금파로12 설맞이 대청소 (24 2. 3.) - 사우·북변 일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운동(24. 3. 2.) - 덕포진 일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24. 4. 6.) - 자연보호현장비 청소 및 주변 정화활동 (24. 5. 4.) - 계양천 생태교란식물 퇴치 및 환경정화활동(24. 6. 1.) - 사우4거리 미세먼지 저감실천운동 및 환경정화활동 (24. 7. 6.) - 계양천 수질정화(흙공던지기) 및 추석맞이 환경정화활동 (24. 9. 7.) - 자연보호현장선포 제46주년 기념행사 및 수련대회 (24. 10. 5.) - 풍무동 중앙공원 꽃무름심기 행사 및 환경정화 (24. 10. 29.) - 기초질서 캠페인 및 미세먼지 저감실천운동(24. 11 .2.) - 기초질서 캠페인 및 미세먼지 저감실천운동 (24. 12. 7.)
2025	○ 보조사업자 : (사)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 ○ 추진실적 - 홍도평 설맞이 환경정화 활동 (25. 1. 4.) - 가현산 일대 산불조심 캠페인 및 족자 현수막달기(25. 2. 1.) - 금파로 겨울철새먹이주기행사 (25. 3. 3.) - 문수산 일대 산불조심캠페인 및 족자현수막달기(25. 3. 22.) - 수안산 자연보호동산 식목행사 및 자연정화활동(25. 4. 5.) - 자연보호현장비 청소 및 주변 정화활동 (25. 5. 3.) - 연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역사탐방 및 워크샵 (25. 6. 7.) - 수안산 생태교란식물 퇴치작업 및 환경정화활동 (25. 7. 5.) - 사우동 기초질서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25. 9. 6.) - 계양천 추석맞이 대청소 및 환경정화활동(25. 10. 4.)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11,850	7,530	4,320	11,585	7,265	4,320	265	265	0	
2024	11,850	7,530	4,320	11,507	7,187	4,320	343	343	0	
2025	11,810	7,490	4,320	11,810	7,490	4,320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차진복	담당자	행정7급 서국원	전화	2258
-----	-------	------------	-----	----------	----	------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위원회 2회 개최		
사업목적	각종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의 효율적인 대처와 환경보전시책 추진과정의 이견조정 및 환경오염대책 마련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의견수렴으로 환경정책 추진의 투명성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제2항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 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1항
		제2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김포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환경정책 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를 둔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200	3,200	3,200	0	0	0	3,2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200	3,200	3,200				3,2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200	
환경정책 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 * 16명 * 2회	= 3,200	

□ 예산요구 사유

- 환경정책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회의 참석 수당

□ 예산증감 사유

- 증감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1. 25. :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완료
- 2019. 5. 7. : 환경정책위원회 위촉
- 2019.~2022. : 환경정책위원회 6회 개최
- 2023. 8. 9. :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 2023. 8.~12. : 환경정책위원회(3기) 구성 완료
- 2024. 3.~11. : 환경정책위원회(3기) 위촉 및 위원회 개최
- 2025. 3.~12. :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 2026. 1.~11. : 환경정책위원회(4기) 위촉 및 위원회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 8. 9. :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 2023. 9.~12. : 환경정책위원회(3기) 구성 완료
2024	· 2024. 1. 16. : 환경정책위원회 위원(3기) 위촉 및 회의 개최 · 2024. 7. 10. : 환경정책위원회 개최(김포시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 등) · 2024. 9. 27. : 환경정책위원회 개최(환경정책관련 포럼 개최 논의 등)
2025	· 2025. 11. : 2025년 환경정책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20	-	-	1,120	
2024	2,560	2,000	-	560	
2025	3,200	-	-	3,2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차진복	담당자	행정7급 서국원	전화	2258
-----	-------	------------	-----	----------	----	------

어린이활동공간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어린이활동공간 114개소, 물놀이형 수경시설 48개소		
사업목적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자발적 관리의식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해당조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4항
		④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2,800	22,800	22,800	0	0	0	58,864	36,06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2,800	22,800	22,800	0	0	0	58,864	36,064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8,864	
어린이활동공간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수수료(114개소) : 58,000,000원	= 58,000	
		· 물놀이형 수경시설 검사 : 18,000원*48개소	= 864	

□ 예산요구 사유

- 최근 어린이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검사수수료 증액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물놀이 안정성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어린이활동공간 검사대상 확대를 위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수수료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 2026.01.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 계획 수립
 - 2026.02. ~ 10.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및 환경안전검사 실시
 - ※ 환경보건법 개정(시행 2021.01.)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업무 사무이양(국가→시)
 - 물놀이형수경시설 지도점검
 - 2026.05.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 수립
 - 2026.06. ~ 09.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어린이활동공간 : 106개소 점검 · 물놀이형 수경시설 : 89개소 점검
2024	· 어린이활동공간 : 78개소 점검 · 물놀이형 수경시설 : 99개소 점검
2025	· 어린이활동공간 : 78개소 점검 · 물놀이형 수경시설 : 99개소 점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160	20,036	-	124	
2024	22,800	22,236	-	564	
2025	22,800	21,459	-	1,34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성은영	담당자	환경9급 고민지	전화	2835
-----	-------	------------	-----	----------	----	------

생활환경 측정장비 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잔류염소측정기 1대, 조도계 1대, 휘도계 1대		
사업목적	생활환경 측정장비 정도검사를 통한 측정치 정확성 확보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検査)를 받아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700	870	870	0	0	0	900	3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700	870	870	0	0	0	900	3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00	
생활환경 측정장비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잔류염소측정기 검사 수수료 : 370,000원*1건	= 370	
		·빛방사 측정기기 검사 수수료 : 530,000원*1건 - 조도계 1대, 휘도계 1대	= 530	

□ 예산요구 사유

- 잔류염소 측정 기기 및 빛공해 측정기기 정기검사를 통해 장비 신뢰성 확보 조명 빛공해 관리

□ 예산증감 사유

- 빛방사 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12. : 조도계 및 휘도계 구매
 - 2020. 03. : 잔류염소 측정기 구매
 - 2026. 02. : 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검교정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조도계 및 휘도계 검교정 실시
2024	- 잔류염소측정기 정도검사 실시 - 조도계 및 휘도계 검교정 실시
2025	- 잔류염소측정기 정도검사 실시 - 조도계 및 휘도계 검교정 실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00	1,287	-	13	
2024	1,700	1,465	-	235	
2025	870	838	-	3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성은영	담당자	환경9급 고민지	전화	2835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7. : 「김포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1.~2024. :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개최(5회)
 - 2025.06. :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2025.10. :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개최
 - 2026.연중 :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12.27. :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개최
2024	· 2024.07.22. ~ 24. :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 회의 개최(서면) · 2024.11.06. :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 회의 개최(대면)
2025	· 2025.06.13. ~ 17. :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 회의 개최(서면) · 2025.10.31. :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 회의 개최(대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80	480	-	-	
2024	640	620	-	20	
2025	800	700	-	1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성은영	담당자	공업7급 이예슬	전화	2257
-----	-------	------------	-----	----------	----	------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장학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2. ~ 2026. 7.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김포공항소음피해지역
사업규모	항공기소음피해지역 내 거주 대학생 및 고등학생 375명		
사업목적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공항공사75% 시25%)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
		제4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82,000	0	82,000	0	0	300,000	218,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82,000	0	82,000	0	0	300,000	218,000	한국공항공사 지원 7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0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장학금 지원사업	301-04 장학금및학자금	· 대학생 1,000,000원*225명 · 고등학생 500,000원*150명	= 300,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고촌읍, 풍무동, 사우동, 북변동, 감정동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보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 사업비 : 300백만원[한국공항공사 지원금 75%(225백만원), 시비 25%(75백만원)]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대비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5.11. :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 승인요청(시→한국공항공사)
 - 2026.01. :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 승인통보(한국공항공사→시)
 - 2026.03. : 사업공고 및 주민홍보
 - 2026.04. : 신청접수
 - 2026.05. : 공항소음피해지역 거주여부 확인 및 점수산정 / 지급대상 선발
 - 2026.06. : 장학금 지급
 - 2026.07. :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장학금 지원사업 장학생 선발 104명(고등학생 44명, 대학생 6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82,000	82,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성은영	담당자	공업7급 이예슬	전화	2257
-----	-------	------------	-----	----------	----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및 개량 지원 54동		
사업목적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석면의 안전한 처리 기반을 조성하여 안전한 시민 생활권 보장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2항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84,960	245,040	245,040	0	0	0	238,720	-6,320	
국비	192,480	122,520	122,520				119,360	-3,160	균특
도비	28,872	18,378	18,378				17,904	-474	
시비	163,608	104,142	104,142				101,456	-2,686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38,720	
슬레이트 처리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 주택 지붕 철거 : 3,520,000원 * 30동	= 105,600	
		- 비주택 지붕 철거 : 5,400,000원 * 20동	= 108,000	
		·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 주택 지붕개량 : 6,280,000원 * 4동	= 25,120	

□ 예산요구 사유

○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 지원을 통한 철거 촉진과 주민 건강피해 예방

□ 예산증감 사유

○지속적인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으로 사업량 감액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12. : 사업 공고 및 슬레이트 면적조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폐기물 처리
 - 2026.01. :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결과 보고 및 위수탁 사업비 정산
 - 2026.02. :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123동 대상 슬레이트 처리지원
2024	· 59동 대상 슬레이트 처리지원
2025	· 43동 대상 슬레이트 처리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22,480	372,573	-	149,907	
2024	384,960	274,116	-	110,844	
2025	245,040	245,04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성은영	담당자	행정7급 장주동	전화	2855
-----	-------	------------	-----	----------	----	------

석면피해 구제급여(기금)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10명) 및 요양급여(76명)		
사업목적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
	구제급여는 기술원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29,320	292,014	292,014	0	0	0	271,080	-20,934	
국비	229,320	292,014	292,014				271,080	-20,934	기금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71,080	
석면피해 구제급여 (기금)	301-14 기타보상금	·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10명) 및 요양급여(76명)	= 271,080	

- 예산요구 사유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건강피해 신속 구제

- 예산증감 사유
-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대상자 감소(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12. : 매월 피해인정자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석면노출 피해자 및 유족 구제급여 지급(23명)
2024	· 석면노출 피해자 및 유족 구제급여 지급(21명)
2025	· 석면노출 피해자 및 유족 구제급여 지급(2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70,000	363,042	-	6,958	
2024	229,320	221,132	-	8,188	
2025	292,014	140,076	-	151,93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성은영	담당자	행정7급 장주동	전화	2855
-----	-------	------------	-----	----------	----	------

석면피해 구제급여(시도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10명) 및 요양급여(76명)		
사업목적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
	구제급여는 기술원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5,480	32,446	32,446	0	0	0	30,120	-2,326	
국비		0						0	
도비	12,740	16,223	16,223				15,060	-1,163	
시비	12,740	16,223	16,223				15,060	-1,163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120	
석면피해 구제급여 (시도비)	301-14 기타보상금	·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10명) 및 요양급여(76명)	= 30,120	

- 예산요구 사유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건강피해 신속 구제

- 예산증감 사유
-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대상자 감소(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사업량 감액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12. : 매월 피해인정자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석면노출 피해자 및 유족 구제급여 지급(23명)
2024	· 석면노출 피해자 및 유족 구제급여 지급(21명)
2025	· 석면노출 피해자 및 유족 구제급여 지급(2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7,000	36,304	-	696	
2024	25,480	24,570	-	910	
2025	32,446	15,564	-	16,882	10.31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성은영	담당자	행정7급 장주동	전화	2855
-----	-------	------------	-----	----------	----	------

석면비산 농도 측정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석면 비산 농도 측정 등 3회, 석면방진마스크 70매		
사업목적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비산농도 측정을 통한 시민 안전 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4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200	4,750	4,750				4,75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4,750	4,750				4,75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750	
석면비산 농도 측정	201-01 사무관리비	· 석면 비산 농도 측정 등 : 1,550,000원 * 3회	= 4,650	
		· 석면 방진마스크 구입 : 100,000원	= 100	

□ 예산요구 사유

- 석면건축자재 사용 면적이 5,000m² 이상인 건축물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석면 해체 작업 시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비

□ 예산증감 사유

- 증감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12. :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점검, 석면 비산 농도 측정 및 결과 등 홈페이지 공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석면해체작업장 석면비산 농도 측정 검사 2회, 측정 결과 홈페이지 공개
2024	- 석면 방진마스크 구입 - 석면해체작업장 석면비산 농도 측정 검사 3회, 측정 결과 홈페이지 공개
2025	- 석면 반면양구형 마스크 구입 - 석면해체작업장 석면비산 농도 측정 검사 등 2회, 측정 결과 홈페이지 공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100	2,442	-	658	
2024	3,200	3,114	-	86	
2025	4,750	4,230		520	10.31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성은영	담당자	행정7급 장주동	전화	2855
-----	-------	------------	-----	----------	----	------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오수처리시설 등 13개소
사업규모	관내 산업폐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양어장 등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13개소		
사업목적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 의거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 조사를 통하여 산정된 오염부하량 자료를 활용,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 평가 정확성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 제8조의10
		법 제8조의3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제8조의10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050	6,472	6,472	0	0	0	6,472	0	
국비	7,050	6,472	6,472				6,472	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472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207-01 연구용역비	· 수질분석비 : 107,870원 x 60회 =	6,472	

- 예산요구 사유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71호)에 의거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강수계기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임
- 예산증감 사유
- 증감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04. ~ 2022. 08. :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 2022. 01. ~ 2025. 12. :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추진
 - 2026. 01. :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계약 및 착수
 - 2026. 01. ~ 2026. 12. :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시행(13개소)
 - 2026. 12. : 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기간 ; 2023.05~2023.12 · 총 11개소 대상 52회(총 52회 중 52회 공정률 100%)
2024	· 사업기간 ; 2024.01~2024.12 · 총 13개소 대상 60회(총 60회 중 60회 공정률 100%)
2025	· 사업기간 ; 2025.01~2025.10 · 총 13개소 대상 60회(총 60회 중 52회 공정률 86.7%)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685	6,554	-	131	
2024	7,050	7,023	-	27	
2025	6,472	4,530	-	1,94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수질총량팀장 김선영	담당자	환경7급 권주택	전화	2245
-----	-------	------------	-----	----------	----	------

이행평가 비용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한강수계 단위유역(한강], 굴포A) 194.53km ³		
사업목적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할당부하량 초과시 대책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수질총량관리 추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 제8조의10
	해당조례	법 제8조의3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제8조의10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1,168	60,527	60,527	0	0	0	60,527	0	
국비	71,168	60,527	60,527				60,527	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527	
이행평가 비용	207-01 연구용역비	.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 60,527,000원 * 1식 =	60,527	

- 예산요구 사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0(시행평가의 이행평가)에 의거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강수계기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임.

□ 예산증감 사유

○ 증감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04. ~ 2022. 08. :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 2022. 01. ~ 2025. 12. :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추진

- 2026. 01. :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계약 및 착수

- 2026. 05. : 2026년(2025년기준) 김포시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제출

- 2026. 11. : 2026년(2025년기준)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최종 확정

- 2026. 12. : 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 | | |
|------|--|
| 2023 | · 2023.02. : 협상에의한계약 및 장기계속계약 계획수립
· 2023.05. : 계약체결(장기계속계약, 협상에의한계약)(2023.05.30 ~ 2025.12.31)
· 2023.05. : '22년도기준 이행평가보고서 제출
· 2023.06~2023.11. : 이행평가 검토 보완
· 2023.12. :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1차분 준공 |
| 2024 | · 2024.01. :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2차분 계약
· 2024.05. : '23년도기준 이행평가보고서 제출
· 2024.06~2024.11. : 이행평가 검토 보완
· 2024.12. :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2차분 준공 |
| 2025 | · 2025.01. :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2차분 계약
· 2025.05. : '24년도기준 이행평가보고서 제출
· 2025.06~2025.11. : 이행평가 검토 보완 추진중 |

- 최근3년 결산현황
- (단위 : 천원)
- | 회계연도 |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 집 행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잔액 | 비고 |
|------|----------------------|--------|----------|--------|------------------|
| 2023 | 68,773 | 59,483 | - | 9,290 | |
| 2024 | 71,168 | 59,483 | - | 11,685 | |
| 2025 | 60,527 | 41,638 | - | 18,889 |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수질총량팀장 김선영	담당자	환경7급 권주택	전화	2245
-----	-------	------------	-----	----------	----	------

전국오염원 조사

사업기간	2026. 2. ~ 2026. 10.	사업위치	관 내	
사업규모	폐수배출업소 920여개 대상 오염원 조사표 인쇄 및 발송			
사업목적	전국오염원조사 중 산업계 오염원 조사를 위한 조사표 인쇄 및 발송 비용으로, 산업계 폐수의 실제 발생·처리·배출 현황 조사를 통해 전국오염원조사의 정확성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물환경보전법		제23조
		제23조(오염원 조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별표2]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 수계영향권별 오염원조사	「물환경보전법」 제23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380	1,380	1,380	0	0	0	1,38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380	1,380	1,380				1,38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80	
전국오염원조사	201-02 공공운영비	. 조사표 인쇄·발송료 : 1,500원 * 920개소	= 1,380	

□ 예산요구 사유

- 환경부 전국오염원조사 지침에 따라 5종 폐수배출업소는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 조사 대상 사업장에 전국오염원조사 안내문, 조사표, 작성요령 등을 우체국 e-그린우편을 이용해 발송하는 비용 발생

□ 예산증감 사유

- 증감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2. ~ 2026. 03. : 관내 폐수배출업소(약 920개소)에 전국오염원 조사표 우편발송 및 자료취합

- 2026. 04. ~ 2026. 09. : 전국오염원 조사 웹시스템 자료입력 및 오류사항 개선(시→국립환경과학원)

- 2026. 11. : 전국오염원조사 통계자료 확정(한강유역환경청→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기간: 2023. 2. ~ 2023. 10. - 조사표 및 작성방법(약 17장) 관내 폐수배출업소(약 900개소 발송) - 폐수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발생, 배출량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
2024	- 사업기간: 2024. 2. ~ 2024. 10. - 조사표 및 작성방법(약 17장) 관내 폐수배출업소(약 900개소 발송) - 폐수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발생, 배출량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
2025	- 사업기간: 2025. 2. ~ 2025. 10. - 조사표 및 작성방법(약 8장) 관내 폐수배출업소(약 900개소 발송) - 폐수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발생, 배출량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34	1,233	-	101	
2024	1,380	1,082	-	298	
2025	1,380	868	-	51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수질총량팀장 김선영	담당자	행정8급 강민지	전화	2150
-----	-------	------------	-----	----------	----	------

한강수계 기초조사(모니터링)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 내
사업규모	김포시 관내 한강수계 하천 19개 지점		
사업목적	-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소권역 대표 지점 ‘포내천’ 모니터링 실시 - 물 환경 관련 사업 추진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물환경보전법	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3,000	36,000	36,000	0	0	0	36,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3,000	36,000	36,000				36,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6,000	
한강수계 기초조사 (모니터링)	201-01 사무관리비	. 인건비	= 4,820	
		. 분석비	= 20,044	
		- 포내천 수질분석비 : 104,400원 * 12회 * 1개지점		
		- 포내천 외 18개 지점 수질분석비 : 87,000원 * 12회 * 18개지점		
		. 출장비 : 50,000원 * 12회	= 600	
		. 유인물비 : 20,000원 * 4부	= 80	
		. 제경비 : 인건비 * 110%	= 5,256	
		. 기술료 : (인건비 + 제경비) * 20%	= 2,000	
		. 부가세 : 10%	= 3,200	

□ 예산요구 사유

-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한강서해권역)」에서 지정한 소권역 대표 수질 측정지점 모니터링 실시(포내천)
- 관내 주요 하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물환경 관련 사업추진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초자료로 활용

□ 예산증감 사유

- 증감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2025. 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용역과제 사전심사 의뢰
 - 2025. 12. : 2026년 한강수계 기초조사(모니터링) 용역 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 2026. 01. ~ 2026. 12. : 월별 하천 정기 모니터링 운영결과 한강유역환경청 제출
 - 2026. 12. : 한강수계 기초조사에 따른 하천별 분석 결과 최종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 김포시 15개 하천 19개 지점(계양천 5개지점)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현황 파악 - 1개 지점(포내천,소권역 대표 수질측정망) 11개 항목, 18개지점 8개 항목 측정
2024	-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 김포시 15개 하천 19개 지점(계양천 5개지점)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현황 파악 - 1개 지점(포내천,소권역 대표 수질측정망) 11개 항목, 18개지점 8개 항목 측정
2025	- 사업기간: 2025. 1. ~ 2025. 10. - 김포시 15개 하천 19개 지점(계양천 5개지점)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현황 파악 - 1개 지점(포내천,소권역 대표 수질측정망) 11개 항목, 18개지점 8개 항목 측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3,000	31,339	-	1,661	
2024	36,000	31,522	-	4,478	
2025	36,000	22,000	-	14,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수질총량팀장 김선영	담당자	행정8급 강민지	전화	2150
-----	-------	------------	-----	----------	----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비점오염저감시설 84개소		
사업목적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6항
		⑥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할 것	
		3. 그 밖에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제76조제3항
		② 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③ 법 제53조제6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降雨)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97,820	364,340	364,340	0	0	0	364,34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64,340	364,340				364,34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64,340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폐기물시험분석비 : 500,000원 = 500 . 준설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 220,000원 * 12회 = 2,640		
	201-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전기·수도) 납부 : 70,000원*45개소*12개월 = 37,800 . 시설부품 교체 : 20,000,000원 = 20,000		
	401-01 시설비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 81,090,000원 * 1식 = 81,090		
		.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공사 : 540m³ * 381,000원 = 205,700		
		. 폐기물처리 용역 : 275ton * 60,400원 = 16,610		

□ 예산요구 사유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유지관리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안정적인 시설물 운영 및 수질오염 예방
- 준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실시

□ 예산증감 사유

- 증감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유지관리용역 의뢰 및 업체 선정
 - 2026. 01. ~ 2026. 12. :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매월 납부
 - 2026. 05. : 준설공사 및 폐기물처리 용역 의뢰 및 업체 선정
 - 2026. 12. : 시설 유지관리, 준설공사, 폐기물 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총 집행액 300,238천원 · 공공운영비: 49,695천원(공공요금, 부품교체비) · 시설비 : 250,160천원(유지관리용역, 준설, 폐기물처리) · 시설부대비: 383천원(폐기물 시험분석비)
2024	- 총 집행액 270,606천원 · 사무관리비: 2,583천원(재해예방기술지도, 폐기물 시험분석비) · 공공운영비: 49,433천원(공공요금, 부품교체비) · 시설비 : 218,590천원(유지관리용역, 준설, 폐기물처리)
2025	- 총 집행액 150,453천원 · 사무관리비: 383천원(재해예방기술지도, 폐기물 시험분석비) · 공공운영비: 23,070천원(공공요금, 부품교체비) · 시설비 : 127,000천원(유지관리용역, 준설, 폐기물처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50,883	300,238	-	50,645	
2024	297,820	270,606	-	27,214	
2025	364,340	150,453	-	213,88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수질총량팀장 김선영	담당자	공업8급 오혜민	전화	2259
-----	-------	------------	-----	----------	----	------

물순환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 내
사업규모	김포시 물순환위원회 운영		
사업목적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반영 등 물순환 회복 정책의 자문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물환경보전법	제3조 제1항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물순환 기본 조례	제12조 제1항
		제12조(물순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 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김포시 물순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200	1,200	0	0	0	1,400	2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200	1,200				1,400	200	
기타		0						0	자부담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00	
물순환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물순환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 * 7명 * 2회 : 1,400,000원 =	1,400	

예산요구 사유

- 우리 시 물순환 회복 정책 자문을 위한 물순환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회의 참석 수당

예산증감 사유

- 물순환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1명 증가에 따른 참석수당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05. : 「김포시 물순환 기본 조례」 제정

- 2024. 09. : 김포시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 2025. 07. : 김포시 물순환위원회 개최[위촉식 및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

- 2026. 04. : 김포시 물순환위원회(상반기) 개최 예정

- 2026. 11. : 김포시 물순환위원회(하반기) 개최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2025. 2. 24. 김포시 물순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보고 · 2025. 7. 24. 제1회 김포시 물순환위원회 개최 [위원 위촉 및 김포시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200	600	-	6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수질총량팀장 김선영	담당자	환경8급 백승연	전화	2281
-----	-------	------------	-----	----------	----	------

환경SOS 상담반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지역
사업규모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시민		
사업목적	기업의 환경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환경SOS 상담반 및 환경교육 운영을 통해 기업활동 불편 최소화 및 환경 소양 함양 기회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환경기본 조례	제23조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1,859	32,696	32,696	0	0	0	33,751	1,05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1,859	32,696	32,696				33,751	1,05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3,751	
환경SOS 상담반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환경SOS 상담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 기본급: 11,730원*8시간*1명*167일 = 15,672 - 유급휴일수당: 11,730원*8시간*45일 = 4,223 - 명절휴가비: 500,000원*1명*1회 = 500 · 4대보험료: 20,395,000원*14% = 2,856	23,251	
	201-01 사무관리비	· 환경SOS 상담반 운영 홍보비 - 안내(홍보) 리플릿, 책자, 물품: 2,000원*2,000부 = 4,000 - 홍보 현수막·배너: 50,000원*10개 = 500	4,500	
	201-03 행사운영비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시민 환경교육 운영 - 강사료: 220,000원*1명*10회 = 2,200 - 교육자료: 200,000원*10회 = 2,000 - 현수막·배너: 50,000원*10회 = 500 - 기타 운영비: 130,000원*10회 = 1,300	6,000	

□ 예산요구 사유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 관련 상담, 컨설팅, 교육, 지원사업 정보제공 등 다각도의 환경기술지원을 통해 기업환경 애로사항 해소 및 체계적인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 환경교육 및 환경SOS 상담반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교육자료 제작, 안내·홍보비 등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도 김포시 생활임금 결정사항 반영(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1. : 2026년 환경기술지원 추진계획 수립(환경SOS 상담반 운영 및 환경교육 반영)
 - 2026.1.~12. : 환경SOS 상담반 운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시민 환경교육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 1.~12. : 온라인 교육을 통한 비대면 교육 실시 ⇒ 교육 시청 수 2,323건 · 2023. 5./10. : 2023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교육 실시 ⇒ 365명 수료 · 2023. 1.~12. : 환경SOS 상담반 운영, 개별 기업체 방문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컨설팅 ⇒ 105건
2024	· 2024. 1.~12. : 온라인 교육을 통한 비대면 교육 실시 ⇒ 교육 시청 수 2,936건 · 2024. 5./10. : 202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교육 실시 ⇒ 329명 수료 · 2024. 1.~12. : 환경SOS 상담반 운영, 개별 기업체 방문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컨설팅 ⇒ 206건, 간담회 ⇒ 394명
2025	· 2025. 1.~ : 온라인 교육을 통한 비대면 교육 실시 ⇒ 교육 시청 수 1,866건 · 2025. 6./9. : 2025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교육 실시 ⇒ 353명 수료 · 2025. 1.~ : 환경SOS 상담반 운영, 개별 기업체 방문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컨설팅 ⇒ 72건, 간담회 ⇒ 30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4,521	12,867	-	1,654	
2024	31,859	28,854	-	3,005	
2025	32,696	25,901	-	6,79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기술지원팀장 이관호	담당자	환경7급 김창국	전화	5673
-----	-------	--------------	-----	----------	----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지역
사업규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318개소		
사업목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으로 영세 사업장의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770,000	1,303,200	1,303,200	0	0	0	1,993,500	690,300	
국비	3,206,000	724,000	724,000				1,329,000	605,000	
도비	1,282,000	289,600	289,600				166,125	-123,475	
시비	1,282,000	289,600	289,600				498,375	208,775	
기타	642,000	144,800	144,800				1,329,000	1,184,2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993,500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 10.448.110원*318개소*60% =	1,993.500	

□ 예산요구 사유

-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 등 비용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반영(국비 50%, 도비 5%, 시비 15%, 자부담 40%)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2025. 12.: 추진계획 수립 및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1.: 지원사업 공고

- 2026. 2.: 사업장 선정 승인 통보

- 2026. 2. ~ 2026. 12.: 지원사업 추진

- 2026. 12.: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방지지설 설치 지원: 101시설 지원 완료(7,443,009천원)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 지원: 168시설 지원 완료(634,140천원)
2024	- 방지지설 설치 지원: 7시설 지원 완료(363,206천원)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 지원 : 126시설 지원 완료(535,536천원)
2025	- 방지지설 설치 지원: 62시설 선정, 59시설 지원 완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 지원 : 400시설 선정, 42시설 지원 완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100,000	8,100,000	-	-	
2024	5,770,000	898,742	4,871,258	-	
2025	6,174,458	5,500,326	-	674,132	10.31.기준 집행현황

- ※ '23년 : 공기관 위탁 사업추진(사업비 위탁기관 전액 교부 후 추후 정산)
- ※ '24년 : 시 자체 추진(개별 사업장 준공 완료 시 보조금 지급)
- ※ '25년 : 공기관 위탁 사업추진(사업비 위탁기관 전액 교부 후 추후 정산)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기술지원팀장 이관호	담당자	환경7급 김창국 환경9급 김상진	전화	5673 5672
-----	-------	--------------	-----	----------------------	----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자체)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지역
사업규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비의 6%		
사업목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신속한 업무 추진 가능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44,250	78,192	78,192	0	0	0	119,610	41,41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44,250	78,192	78,192				119,610	41,418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9,610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자체)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위탁수수료(총 사업비의 6%) = 1,993,500,000원*6%	= 119,610	

□ 예산요구 사유

- 서류검토, 현장조사, 심의위원회 등 대기환경분야의 전문성, 기술력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역량 있는 전문기관 위탁 필요
- 위탁수수료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지급 불가함에 따라 국·도비보조사업에 매칭된 시비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국·도비보조금 불용액 발생 및 지원 가능 사업장 개소수 감소

□ 예산증감 사유

- 위탁수수료는 사업비의 6%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2025. 12.: 추진계획 수립 및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1.: 지원사업 공고
 - 2026. 2.: 사업장 선정 승인 통보
 - 2026. 2. ~ 2026. 12.: 지원사업 추진
 - 2026. 12.: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방지시설 설치지원: 101시설 지원 완료(7,443,009천원)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 지원: 168시설 지원 완료(634,140천원) · 위탁수수료: 243,000천원 지급
2024	- 방지시설 설치지원: 7시설 지원 완료(363,206천원)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 지원 : 126시설 지원 완료(535,536천원) · 기술자문료: 38,800천원 지급
2025	- 방지시설 설치지원: 62시설 선정, 59시설 지원 완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 지원 : 400시설 선정, 42시설 지원 완료 · 위탁수수료: 78,192천원 지급 · 기술자문료: 준공 완료 사업장당 지급 예정(방지시설 사업장당 50만원, IoT 사업장당 30만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3,000	243,000	-	-	
2024	144,250	38,800	105,450	-	
2025	183,642	78,192	-	105,4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기술지원팀장 이관호	담당자	환경7급 김창국 환경9급 김상진	전화	5673 5672
-----	-------	--------------	-----	----------------------	----	--------------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 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단속차량 2대		
사업목적	생활환경 지도점검 및 환경SOS 활동을 위한 차량 유지관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환경보전법		제23조 제5항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560	6,410	6,410	0	0	0	4,300	-2,11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560	6,410	6,410				4,300	-2,110	
기타		0						0	자부담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300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하이패스 등) : 150,000 * 2대 =	300	
	201-02 공공운영비	단속차량 유지관리비(유류비 등) : 2,000,000원 * 2대 =	4,000	

예산요구 사유

- 생활환경(빛공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의 민원처리 및 환경SOS 활동을 위한 차량 운영·유지에 필요한 유류비, 검사비용, 제세공과금, 수리비 등 지급

예산증감 사유

- 차량 감소(3대 → 2대)에 따른 유지관리비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2026.12 : 차량 유류비 지급 및 유지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차량유류비 및 하이패스 요금 지급 - 차량 수리비 지급
2024	- 차량유류비 및 하이패스 요금 지급 - 차량 수리비 지급
2025	- 차량유류비 및 하이패스 요금 지급 - 차량 수리비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560	9,256	-	304	
2024	10,560	3,531	-	7,029	
2025	6,410	2,040	-	4,37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차진복	담당자	행정7급 유예나	전화	2246
-----	-------	------------	-----	----------	----	------

환경민원 비상근무 운영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환경민원 비상근무 운영(365일 비상근무)		
사업목적	환경민원 비상근무의 효율성과 직원의 안전 확보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 제3항 [별표3]
		제19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③ 수시지도·점검은 별표3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해당 년도 정기지도점검계획 횟수의 3분의 1이상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별표3] 수시 지도·점검 기준 1. 가뭄, 장마철, 추석·설 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2. 환경오염관련 민원 다발지역, 오염우심지역 및 취약지역 3.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 (생략)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000	4,000	4,000	0	0	0	4,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000	4,000	4,000				4,000	0	
기타		0						0	자부담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	
환경민원 비상근무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환경민원 비상근무 운영: 1,300,000원 .비상근무 급식비: 9,000원*2명*150일	= 1,300 = 2,700	

예산요구 사유
○ 환경민원 비상근무의 원활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근무자의 특근매식비 및 물품구입비 지급

예산증감 사유
○ 증감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9.27. ~ 계속 : 환경민원 비상근무 운영
 - 2026.01.~2026.12. : 환경민원 비상근무 운영 및 급량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18년~2025년	○ 환경민원비상근무 운영 - 운영기간 : 2018.09.27. ~ 계속 - 운영시간 : 평일 18:00~22:00(동절기 18:00~21:00), 휴일 09:00~17:00 - 운영방법 : 2인 1조 근무 - 근무대상 :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하수과 전 직원 - 근무내용 : 환경민원처리(악취, 소음, 비산먼지, 폐기물 등)
-------------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960	8,119	-	2,841	
2024	4,000	1,774	-	2,226	
2025	4,000	1,363	-	2,63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차진복	담당자	행정7급 유예나	전화	2246
-----	-------	------------	-----	----------	----	------

2026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기후에너지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전기승용 2,062대(민간 2,059대, 관용 3대), 전기화물 249대, 전기승합 14대, 전기승합(어린이) 3대, 전환지원금 1,000대		
사업목적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6,755,870	17,162,850	22,446,000	0	-4,550	-5,278,600	16,428,150	-734,700	
국비	16,635,870	10,348,450	13,690,000		-4,550	-3,337,000	10,992,000	643,550	
도비	924,000	210,000	168,000			42,000	31,050	-178,950	
시비	9,196,000	6,604,400	8,588,000			-1,983,600	5,405,100	-1,199,3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6,428,150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전기승용차 2,062대 - 4,800천원 * 2,062대 - 3,000천원 * 3대(관용) = 9,888,600천원	= 9,888,600	
		· 전기화물차 249대 - 14,000천원 * 249대 = 3,486,000천원	= 3,486,000	
		· 전기승합 14대 - 91,000천원 * 14대 = 1,274,000천원	= 1,274,000	
		· 전기승합(어린이) 3대 - 159,850천원 * 3대 = 479,550천원	= 479,550	
		· 전환지원금 1,000대 - 1,300천원 * 1,000대 = 1,300,000천원	= 1,300,000	

□ 예산요구 사유

- 민간, 공공기관 등에 전기자동차 구입 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10657(2025. 10. 16.)호 관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가내시 물량 반영하여 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승용 사업량 증가(202대 증), 화물 사업량 감소(155대 감), 전기승합 사업량 증가(6대 감) 및 전기승합(어린이) 보급(3대 증)
- 전년도 대비 차종별 시비 보조단가 감소 (2025년 승용 2,400천원/대, 화물 5,000천원/대 → 2026년 승용 1,800천원/대, 화물 4,000천원/대)
- 신규재정지원수단(전환지원금) 도입됨에 따라 예산 증액 (1,000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02.: 보급계획 수립
 - 2026. 02. ~ 06.: 상반기 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2026. 07. ~ 12.: 하반기 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전기승용 875대, 전기화물 673대, 전기버스 20대 보급
2024	· 전기승용 1,140대, 전기화물 249대, 전기버스 60대 보급
2025	· 전기승용 1,214대, 전기화물 227대 보조금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608,000	22,447,423	3,584,000	4,576,577	
2024	26,755,870	15,849,295	10,400	10,896,175	
2025	17,172,850	9,321,743	-	7,851,10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신우철	담당자	행정9급 장영옥	전화	5364
-----	--------	------------	-----	----------	----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전기이륜차 80대		
사업목적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0,000	131,200	131,200	0	0	0	128,000	-3,200	
국비	80,000	65,600	65,600				64,000	-1,600	
도비		0						0	
시비	80,000	65,600	65,600				64,000	-1,6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8,000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전기이륜차 80대 - 1,600,000원 * 80대 = 128,000,000원	= 128,000	

□ 예산요구 사유

- 민간에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이륜차를 보급하여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관내 대기질 개선 도모
-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10657(2025. 10. 16.)호 관련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가내시 물량 반영하여 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대비 전기이륜 사업량 감소(2025년 대비 2대 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02.: 보급계획 수립
 - 2026. 02. ~ 06.: 상반기 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2026. 07. ~ 12.: 하반기 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전기이륜차 53대 보급 완료
2024	· 전기이륜차 37대 보급 완료
2025	· 전기이륜차 31대 보급 완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0,000	72,004	-	87,996	
2024	124,800	88,855	400	35,545	
2025	131,600	67,511	-	64,08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신우철	담당자	행정9급 장영욱	전화	5364
-----	--------	------------	-----	----------	----	------

수소차 보급 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수소차(승용) 58대, 수소고상버스 6대, 수소저상버스 2대		
사업목적	수소차(승용) 및 수소버스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을 통해 친환경차량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125,000	3,350,000	5,775,000	0	0	-2,425,000	4,547,200	1,197,200	
국비	3,725,000	2,390,000	4,175,000			-1,785,000	3,285,000	895,000	
도비	270,000	108,000	270,000			-162,000	178,200	70,200	
시비	1,130,000	852,000	1,330,000			-478,000	1,084,000	232,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547,200	
수소차 보급 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수소승용 58대 - 32,500,000원 * 58대 = 1,885,000,000원	= 1,885,000	
		· 수소고상버스 6대 - 346,400,000원 * 6대 = 2,078,400,000원	= 2,078,400	
		· 수소저상버스 2대 - 291,900,000원 * 2대 = 583,800,000원	= 583,800	

□ 예산요구 사유

-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민간, 공공기관 등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소차 보급 확대
-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11427(2025. 10. 31.)호 관련 수소차 보급사업 가내시 물량 반영하여 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수소승용 사업량 감소(승용 2대 감), 수소고상버스 사업량 증가 (고상버스 2대 증)
- 수소저상버스 내시물량이 추가됨에 따라 예산 증액(저상버스 2대 증)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02.: 보급계획 수립
 - 2026. 02. ~ 12.: 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수소승용 37대 보급 완료
2024	· 수소승용 16대, 수소(고상)버스 3대 보급 완료
2025	· 수소승용 44대, 수소(고상)버스 3대 보조금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575,000	1,202,500	-	2,372,500	
2024	5,125,000	1,555,415	700,000	2,869,585	
2025	4,050,000	2,480,000	-	1,57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신우철	담당자	행정9급 장영욱	전화	5364
-----	--------	------------	-----	----------	----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어린이통학용 LPG차 7대		
사업목적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제1항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4. “생략”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5,000	18,000	18,000	0	0	0	21,000	3,000	
국비	22,500	9,000	9,000				10,500	1,500	
도비		0						0	
시비	22,500	9,000	9,000				10,500	1,5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1,000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7대 - 3,000,000원 * 7대 = 21,000,000원	= 21,000	

□ 예산요구 사유

-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하여 노후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을 유도하여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 및 미세먼지로부터 대기질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예산 가내시(확정) 알림 반영 [경기도 대기환경 관리과-12320(2025.10.02.)]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대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량 증가(2025년 대비 1대 증)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02. : 보급계획 수립
 - 2026. 02. ~ 12. : 보급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어린이통학용 LPG차 49대 보급 완료 (2022년 이월물량 20대 포함)
2024	· 어린이통학용 LPG차 8대 보급 완료 (2023년 이월물량 1대 포함)
2025	· 어린이통학용 LPG차 2대 보급 완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71,000	343,000	14,000	14,000	
2024	59,000	47,000	-	12,000	
2025	18,000	6,000	-	12,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신우철	담당자	행정9급 장영욱	전화	5364
-----	--------	------------	-----	----------	----	------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전기지게차 1대		
사업목적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0,000	10,000	
국비		0					5,000	5,000	
도비		0						0	
시비		0					5,000	5,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전기지게차 구매 지원 : 10,000,000원*1대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내연기관 건설기계를 무공해 건설기계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고자, 전기지게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
-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10693(2025. 10. 16.)호 관련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가내시 물량 반영하여 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전기지게차 내시물량이 추가됨에 따라 예산 증액(전기지게차 1대 증)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02.: 전기지게차 보급계획 수립
 - 2026. 03. ~ 12.: 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신우철	담당자	행정9급 장영욱	전화	5364
-----	--------	------------	-----	----------	----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산출내역 참조		
사업목적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제1항	
		제2조(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 사무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허가 및 허가 취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9,032	111,917	111,917	0	0	0	38,641	-73,27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9,032	111,917	111,917				38,641	-73,276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8,64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201-01 사무관리비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및 묶음작업 · 정기분/연납분 고지서 인쇄비 : 74원 * 13,000건 * 2회 = 1,924 · 체납분 고지서 인쇄비 : 74원 * 25,000건 * 3회 = 5,550 · 체납분 고지서 묶음(대봉투) : 350원 * 220건 * 3회 = 231 · 체납분 고지서 묶음(창봉투) : 120원 * 3,000건 * 3회 = 1,080		
		◎ 환경개선부담금 수수료 및 현수막 · 가상계좌 수수료 : 80원 * 15,000건 * 1년 = 1,200 · 우편물 반송정보 수수료 : 30원 * 30,000건 * 1년 = 900 · 자동이체 지로수수료 : 50원 * 1,000건 * 1년 = 50 · 자동이체 송수신 수수료 : 22,000원 * 5회 = 110 ·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 715,000원 * 2회 = 1,430		
		◎ 가상계좌(G-banking) 유지보수비 · 유지보수비 : 6,550,000원 * 1년 = 6,550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 정기분/연납분 고지서 : 400원 * 13,000건 * 2회 = 10,400 · 체납분 고지서 : 400원 * 2,000건 * 3회 = 2,400 · 체납분 고지서(대봉투) : 1,600원 * 220건 * 3회 = 1,056 · 체납분 고지서(창봉투) : 640원 * 3,000건 * 3회 = 5,760		
	201-02 공공운영비			

□ 예산요구 사유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 고지서 비용 및 가상계좌 수납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 시민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가상계좌, 자동이체 시스템 등 운영 수수료를 적기 납부하기 위함

□ 예산증감 사유

- 가상계좌 운영체제(OS) 노후화 서버 교체 완료 및 체납고지서 묶음배송에 따른 우편비용 감소
- 서버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비 일부 감액(HW/SW 1년 무상 유지보수 적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연납분(1차) 고지처리 및 발송
 - 2026. 3. : 연납분(2차) 및 정기분(1기분) 고지처리 및 발송
 - 2026. 5. : 정기분(1기분) 독촉분 고지서 및 체납분 고지서 발송
 - 2026. 6. : 정기분(1기분) 체납자 압류 및 압류통지서 발송
 - 2026. 7. : 체납분 고지서 발송
 - 2026. 9. : 정기분(2기분) 고지처리 및 발송
 - 2026. 11. : 정기분(2기분) 독촉분 고지서 및 체납분 고지서 발송
 - 2026. 12. : 정기분(2기분) 체납자 압류 및 압류통지서 발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부과		징수			체납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징수율	건수	금액	체납률	
2023년	25,685건	1,154,948	23,496건	1,062,547	92%	2,187건	92,401	8%	
2024년	22,507건	1,086,764	20,032건	971,053	89.35%	2,475건	115,711	10.65%	
2025년	18,715건	909,006	14,773건	726,780	80%	3,942건	182,226	20%	10.31추진실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3,000	65,759	-	7,241	
2024	79,032	59,861	-	19,171	
2025	111,917	88,978	-	22,93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신우철	담당자	공무직 박주희	전화	5365
-----	--------	------------	-----	---------	----	------

친환경자동차위반 과태료 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산출내역 참조		
사업목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항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효율적 업무처리로 시민 만족 행정 구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21,500	21,500	0	0	0	1,830	-19,67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1,500	21,500				1,830	-19,67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830	
친환경자동차 위반과태료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관리시스템 고지서 용지(3BOX) ·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 500 = 1,330	

□ 예산요구 사유

-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관리시스템 고지서 용지(사전통지서) 비용
-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관리시스템 도입 완료에 따른 2026년도 예산 감소
- 시스템 고지서 용지 구입 및 유지보수비 신규 계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반영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2024.11 반영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12. :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수시 부과

- 2026. 1. ~ 12. :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고지서(본부과/독촉) 매달 부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부과		징수			체납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징수율	건수	금액	체납률	
2023년	1,826건	159,917	1,737건	152,393	95.3%	89건	7,524	4.7%	
2024년	2,511건	217,750	2,364건	202,301	93%	147건	15,449	7%	
2025년	2,430건	205,580	1,951건	162,614	79.1%	479건	42,966	20.9%	10.31 추진실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21,500	19,350	-	2,1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신우철	담당자	공무직 박주희	전화	5365
-----	--------	------------	-----	---------	----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조기폐차 778대, 저감장치 및 엔진교체 등 42대		
사업목적	노후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을 도모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303,640	3,931,700	3,931,700	0	0	0	2,501,300	-1,430,400	
국비	2,207,920	1,965,850	1,965,850				1,250,650	-715,200	
도비	215,182	196,585	196,585				62,533	-134,052	
시비	1,880,538	1,769,265	1,769,265				1,188,117	-581,148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501,300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성능확인검사 : 37,500원*10대	= 375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노후 차량 조기폐차(5등급) : 1,200,000원*203대 · 노후 차량 조기폐차(4등급) : 2,500,000원*540대 ·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 3,500,000원*35대 · 매연 저감장치 장착 : 3,206,250원*4대 · 건설기계 DPF : 11,000,000원*1대 · 건설기계 엔진교체 : 16,500,000원*30대 ·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 38,000,000원*7대	= 243,600 = 1,350,000 = 122,500 = 12,825 = 11,000 = 495,000 = 266,000	

□ 예산요구 사유

-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 -12366(2025. 10. 2.)호 「2026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가내시분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대비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조기폐차(1,020대→778대),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43대→42대) 사업량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6. 02. : 사업 공고 및 언론 홍보
 - 2026. 02. ~ 12.: 사업 집행 및 보조금 교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조기폐차 1,764대, 저감장치 17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7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4대
2024	· 조기폐차 855대, 저감장치 7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6대
2025	· 조기폐차 1,001대, 저감장치 1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3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988,200	5,719,865	15,593	252,742	
2024	4,319,233	3,386,722	-	932,511	
2025	3,931,700	3,175,223	-	756,47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최영식	담당자	환경8급 김수정	전화	5373
-----	--------	--------------	-----	----------	----	------

운행차 저공해조치 및 배출가스 검사 안내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안내문 1,450부, 계절관리제 홍보 현수막 14개소		
사업목적	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및 계절관리제 안내문 발송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량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257	3,974	3,974	0	0	0	2,513	-1,461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4,257	3,974	3,974	0	0	0	2,513	-1,461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513	
운행차 저공해조치 및 배출가스 검사 안내	201-01 사무관리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현수막 제작 및 게시 : 70,000원*14개소 · 저감장치 장착차량 사후점검 물품 대여비 : 300,000원*1회	= 980 = 300	
	201-02 공공운영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저공해조치 안내 우편요금 : 840원*450부*3회 · 저감장치 장착차량 사후점검 안내 : 840원*100부 · 운행제한 위반차량 안내 통신요금 : 3,000원*5월	= 1,134 = 84 = 15	

□ 예산요구 사유

-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량의 저공해 조치 이행 독려 및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 시행에 따른 홍보 필요
- 보증기간 경과 저감장치 사후점검 시행을 위한 안내문 발송 및 물품 대여비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지속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으로 저공해조치 대상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2.: 저공해조치 지원(조기폐차, 저감장치 등) 안내문 발송
 - 2026. 08.: 저감장치 장착차량 사후점검 안내문 발송
 - 2026. 11.: 계절관리제 홍보 현수막 설치 및 안내문 발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저공해조치 관련 안내문 발송 8회, 현수막 제작 2회(4,145천원)
2024	· 저공해조치 관련 안내문 발송 8회, 현수막 제작 1회(4,000천원) ·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점검 실시에 따른 테이블, 천막 등 대여(244천원)
2025	· 저공해조치 관련 안내문 발송 6회(1,173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400	4,145	-	254	
2024	4,257	4,244	-	13	
2025	3,974	1,173	-	2,80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최영식	담당자	환경8급 김수정	전화	5373
-----	--------	--------------	-----	----------	----	------

LEZ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총 7대(3개소)		
사업목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한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2.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3.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해당조례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3조
		제22조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23조제1호를 위반한 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무인 단속용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을 위반하는 자를 소속 공무원이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짚어지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동차 운행 제한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8,335	59,138	59,138	0	0	0	60,046	908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58,335	59,138	59,138	0	0	0	60,046	908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046	
LEZ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 전기요금 : 98,000원*12월 · 통신요금 : 1,030,000원*12월	= 1,176 = 12,360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위탁대행수수료(10%) 및 기본경비 : 4,682,000원 ·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 40,328,000원 · 장비수리 예비비 : 1,500,000원	= 4,682 = 40,328 = 1,500	

□ 예산요구 사유

-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적정 운영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인건비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2.: LEZ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유지보수 위수탁협약 계약금 지급 : 39,910,000원 · 전기 및 통신요금 지급 : 12,982,750원
2024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유지보수 위수탁협약 계약금 지급 : 44,635,000원 · 전기 및 통신요금 지급 : 10,907,370원
2025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유지보수 위수탁협약 계약금 지급 : 45,602,000원 · 전기 및 통신요금 지급 : 10,867,57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3,210	52,892	-	318	
2024	58,335	57,685	-	650	
2025	59,138	56,470	-	2,66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최영식	담당자	환경8급 김수정	전화	5373
-----	--------	--------------	-----	----------	----	------

조기폐차 업무대행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조기폐차 1,020대 업무대행		
사업목적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업무대행을 통해 조기폐차 행정처리 능력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제14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⑭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875	28,560	28,560	0	0	0	21,784	-6,776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24,875	28,560	28,560	0	0	0	21,784	-6,776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1,784	
조기폐차 업무대행	201-01 사무관리비	·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 28,000원*778대	= 21,784	

□ 예산요구 사유

- 「대기환경보전법」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업무를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함에 따라 업무대행비 필요
- 도 내 시군을 대표하여 경기도-한국자동차환경협회간 《조기폐차 보조사업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행 비용 필요 ※ 관련공문: 기후에너지과-4378(2025. 1. 31.)호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사업량 삭감(1,020대→778대)에 따라, 업무대행비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사업비 전액 선지급(김포시→한국자동차환경협회)
 - 2026. 03. ~ 12.: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및 청구서 접수 업무대행
 - 2027. 01. ~ 02.: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김포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27,357천원 지급(폐차보조금 1,763대, 추가보조금 380대)
2024	·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16,940천원 지급(폐차보조금 855대, 추가보조금 323대)
2025	·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28,560천원 지급(폐차보조금·추가보조금 1,020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1,000	27,357	-	3,643	
2024	24,875	16,940	-	7,935	
2025	28,560	28,56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최영식	담당자	환경8급 김수정	전화	5373
-----	--------	--------------	-----	----------	----	------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신고포상금 150건		
사업목적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해 환경보전에 참여의식 확산 및 민간에 의한 배출가스 감시기능 강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3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별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5. 위반사항은 없으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관·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00	1,500	1,500	0	0	0	1,500	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1,500	1,500	1,500	0	0	0	1,500	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센터 운영	301-14 기타보상금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 10,000원 * 150건 =	1,500	

예산요구 사유

-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매연 과다발생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년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센터 운영계획 수립
 - 2026. 01. ~ 12.: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 93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 : 1,300,000원
2024	·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 114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 : 1,140,000원
2025	·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 105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 : 1,460,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00	1,300	-	-	
2024	1,500	1,140	-	360	
2025	1,500	1,460	-	4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최영식	담당자	환경8급 김수정	전화	5373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4. : 매연측정장비 정도검사 실시(연 1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정도검사 의뢰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정도검사 비용 925,100원
2024	· 정도검사 의뢰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정도검사 비용 925,100원
2025	· 정도검사 의뢰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정도검사 비용 925,1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00	925.1	-	74.9	
2024	1,000	925.1	-	74.9	
2025	1,000	925.1	-	74.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최영식	담당자	환경8급 김수정	전화	5373
-----	--------	--------------	-----	----------	----	------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저감장치 장착 차량 1,876대		
사업목적	보증기간이 경과한 저감장치 및 동시저감장치 장착 차량의 사용상 효율을 증진하고 탈거한 저감장치의 재사용 등을 통해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저공해화 사업의 효과를 지속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0,685	84,868	84,868	0	0	0	104,692	19,824	
국비	40,343	42,434	42,434				52,346	9,912	
도비	6,051	6,365	6,365				0	-6,365	
시비	34,291	36,069	36,069				52,346	16,277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4,692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클리닝 : 150,000원*494대 · 반납운송비 : 10,000원*454대 · 재사용장치클리닝 : 150,000원*30대 · 창고임대 및 관리비 : 24,000원*347대 · 반납탈거비 : 24,000원*551대	= 74,100 = 4,540 = 4,500 = 8,328 = 13,224	

□ 예산요구 사유

-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저공해조치 차량의 효율 증진
- 탈거, 반납한 장치의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에 기여
- 반납한 장치 및 엔진의 선별, 매각을 통해 저감장치 관리의 통합성 확보
-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12366(2025. 10. 2.)호 「2026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 가내시분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지속적인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추진으로 저감장치 부착(탈거)차량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성능유지관리비 증가(전년도 대비 클리닝 76대, 반납운송비 141대, 반납탈거비 321대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6. 03. : 사업비 집행 [위탁기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위탁근거 : 「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 장치 부착 차량의 관리지침」 (2025.2 환경부)
 - 2026. 03. ~ 12.: 성능유지관리 사업 추진
 - 2027. 03. :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증기간 경과차량 1,529대
2024	· 보증기간 경과차량 1,267대
2025	· 추진 중(보증기간 경과차량 예상대수 1,413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0,746	90,746	-	-	
2024	80,685	80,685	-	-	
2025	84,868	84,868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최영식	담당자	환경8급 김수정	전화	5373
-----	--------	--------------	-----	----------	----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 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기간제근로자 2명		
사업목적	미세먼지(비산먼지 등) 발생사업장 점검 및 단속 지원, 매연 및 공회전 단속 지원, 미세먼지 대책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장·공사장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 감시를 통해 우리 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21,600	63,080	63,080	0	0	0	64,200	1,120	
국비	60,800	31,540	31,540				32,100	560	
도비	30,400	15,770	15,770				16,050	280	
시비	30,400	15,770	15,770				16,050	280	
기타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4,200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보수 : 2,157,000원 * 2명 * 8월 = 34,512 · 정액급식비 : 140,000원 * 2명 * 8월 = 2,240 · 사회보험 : 300,000원 * 2명 * 8월 = 4,800 · 명절휴가비 : 1,100,000원 * 2명 = 2,200 · 피복비 : 200,000원 * 2명 = 400 · 출장비 : 440,000원 * 2명 * 8월 = 7,040 · 교육비 : 100,000원 * 2명 = 200		
	201-01 사무관리비	· 차량임차비 : 1,000,000원 * 1대 * 8월 = 8,000 · 기타 경비 : 361,000원 * 8월 = 2,888		
	201-02 공공운영비	· 유류비 : 200,000원 * 1대 * 8월 = 1,600 · 통신비 및 기타 운영경비 : 40,000원 * 8월 = 320		

□ 예산요구 사유

○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원(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

□ 예산증감 사유

- ‘26년 최저시급 반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 -12233(2025.09.30.)호에 따른 가내시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계획수립
 - 2026. 01. : 민간점검원(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
 - 2026. 01. ~ 08.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사업 민간점검원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민간점검원 운영(기간제근로자 6명, 사업기간 2023년 1월~5월)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692회,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888회
2024	· 민간점검원 운영(기간제근로자 4명, 사업기간 2024년 2월~9월)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1,191회,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2,238회, 미세먼지 신호등 및 전광판 점검 391회
2025	· 민간점검원 운영(기간제근로자 2명, 사업기간 2025년 2월~9월)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458회,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1,070회, 미세먼지 신호등 및 전광판 점검 665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8,084	95,007	-	23,077	
2024	121,600	107,554	-	14,046	
2025	63,080	51,562	-	11,51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최영식	담당자	환경8급 민다혜	전화	5374
-----	--------	--------------	-----	----------	----	------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사업규모	대기환경측정장비 (PM2.5 시료채취장비 1대)		
사업목적	내구연한 10년 초과 및 고장으로 수리불가한 PM2.5 시료채취장비를 교체하여 정확한 측정자료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제1항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	제5조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0,000	175,000	175,000	0	0	0	15,000	-160,000	
국비	90,000	87,500	87,500				7,500	-80,000	
도비	45,000	43,750	43,750				3,750	-40,000	
시비	45,000	43,750	43,750				3,750	-40,000	
기타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PM-2.5 시료채취장비 1대 =15,000,000원	= 15,000	

□ 예산요구 사유

- 고촌읍 대기측정소의 PM2.5 시료채취장비(1대) 장비 내구연한 10년 경과(2015.8 설치) 및 고장으로 수리불가(부품단종)하여 신규 장비로 교체필요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7180(2025.10.20.)호 2026년도 「대기환경측정망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월곶면측정소 대기환경측정장비 교체완료(175,000천원)에 따른 예산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2. : 고촌읍 PM2.5 시료채취장비 교체 계획 수립
 - 2026. 3. : 계약의뢰
 - 2026. 4. : 물품구매
 - 2026. 5. : 설치완료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고촌읍 측정소 대기환경측정장비 교체 - 집행액: 159,458,000원
2025	· 월곶면 측정소 대기환경측정장비 교체 - 집행액 : 141,327,58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80,000	159,458	-	20,542	
2025	175,000	141,327	-	33,673	10.31.기준 집행현황

□ 현장사진

부서	기후에너지과	사업규모	대기환경측정장비 (PM2.5 시료채취장비)	본예산 요구액 (천원)	15,000
부기명 (세부사업)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사업위치	고촌읍 신곡로 152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최영식	담당자	환경7급 임수정	전화	5372
-----	--------	--------------	-----	----------	----	------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대기오염 측정망 5개소		
사업목적	대기오염 측정망 적정 운영으로 대기질 상시 관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제1항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	제5조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0,000	165,000	165,000				165,000	0	
국비								0	
도비	45,000	49,500	49,500				49,500	0	
시비	105,000	115,500	115,500				115,500	0	
기타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65,000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측정소 유지관리 : 33,000,000원 * 5개소 *1년 =	165,000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도시대기 측정소 4개소, 도로변 측정소 1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용역비와 정도검사 등 측정망 적정 관리 필요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7233(2025.10.22.)호 2026년도 「대기환경측정망 유지관리사업」 가내시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용역 계획수립 및 계약
 - 2026. 01. ~ 12. :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실시
 - 2026. 01. ~ 12. : 정도검사, 소모품, 공공요금 등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유지관리용역 : 69,006천원 집행 · 소모품 및 공공요금 등 유지비용 : 61,964천원 집행
2024	· 유지관리용역 : 69,232천원 집행 · 소모품 및 공공요금 등 유지비용 : 67,003천원 집행
2025	· 유지관리용역 : 64,308천원 집행 · 소모품 및 공공요금 등 유지비용 : 45,890천원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0,000	130,971	-	19,029	
2024	150,000	136,235		13,765	
2025	165,000	110,198		54,802	10.31.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최영식	담당자	환경7급 임수정	전화	5372
-----	--------	--------------	-----	----------	----	------

[illegible]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업체계약
 - 2026. 1. ~ 12. :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년 전광판 유지관리용역 및 소모품비 등 집행 - 유지관리 용역 : 14,500천원 - 소모품비 및 전기·통신요금 : 9,495천원
2024	○ 2024년 전광판 유지관리용역 및 소모품비 등 집행 - 유지관리 용역 : 14,500천원 - 소모품비 및 전기·통신요금 : 12,991천원
2025	○ 2025년 전광판 유지관리용역 및 소모품비 등 집행 - 유지관리 용역 : 11,291천원 - 소모품비 및 전기·통신요금 : 8,542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5,500	23,995	-	1,505	
2024	27,550	27,491	-	59	
2025	28,400	19,834	-	8,56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최영식	담당자	환경7급 임수정	전화	5372
-----	--------	--------------	-----	----------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자원화센터 외 9개소(공공시설 폐기물 부문)		
사업목적	김포시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산정계획서 명세서 제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등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효율적 관리 필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법령 위임규정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0,000	70,000	30,000	0	40,000	0	30,000	-4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0,000	70,000	30,000		40,000		30,000	-4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201-01 사무관리비	· 검증수수료(배출량 산정계획서, 명세서) = 검증일일단가 * 소요일수 - (23일 * 650,430원/일) * 2회 = 30,000,000원 (참고 :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검증수수료 산출기준 및 방법 공고- 국립환경과학원)	= 30,000	

□ 예산요구 사유

- 제4차 계획기간(2026 ~ 2030)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계획기간 동안 이행연도의 우리시 공공시설(폐기물 분야)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산정계획서(10월 말) 및 명세서 제출(3월 말), 배출권거래 등의 의무 발생
-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행연도의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명세서 작성 등을 포괄하여 용역 추진
-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배출량 확정), 배출권 이월·차입 신청, 배출권 구매 및 제출 등 우리시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9.

: 2025년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용역 집행 의뢰 (기후에너지과→회계과)

: 계약대상자 결정통보
- 2025. 10.

: 2025년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용역 착수계 수령

: 2025년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및 제출 (검증기관 검증 후)
- 2026. 03.

: 2025년 명세서 작성 및 제출 (검증기관 검증 후)
- 2026. 06.~07.

: 배출권 구매
- 2026. 07.

: 2025년 배출권 제출(환경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2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용역(22.10.06. ~ 2023. 09.15.)
2024	· 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용역(23.10.05. ~ 2024. 09.15.)
2025	· 2024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용역(24.10.07. ~ 2025. 09.15.)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6,000	94,026	7,027	4,947	
2024	77,027	61,540	10,541	1,946	
2025	80,541	25,500	35,077	19,96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신우철	담당자	환경8급 이미현	전화	5363
-----	--------	------------	-----	----------	----	------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연회비		
사업목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온실가스 거래를 위한 배출권시장 가입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50	550	550	0	0	0	55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50	550	550				55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50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 연회비 : 550,000원 ※ 2026. 1. 1. ~ 12. 31.까지	= 550	

□ 예산요구 사유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의 부족분 등을 배출권시장에서 거래 필요
- 해당 계획기간 중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규모에 따라 연회비 발생
 - 우리시 공공시설 폐기물부문 2025년 예상 할당량 : 55,911톤 (NGMS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할당량	100만톤 이상	12만5천톤 이상	12만5천톤 미만
연회비	연간 110만원	연간 77만원	연간 55만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배출권시장(한국거래소) 가입
 - 2024. 2. : 2024년 연회비 납부
 - 2025. 2. : 2025년 연회비 납부
 - 2026. 2. : 2026년 연회비 납부
 - 2026. 6. ~ :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따라 매매 등 거래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 2. : 연회비 납부 ※(500,000원/365일*365일) * 1.1 = 550,000원
2024	· 2024. 2. : 연회비 납부 ※(500,000원/365일*365일) * 1.1 = 550,000원
2025	· 2025. 2. : 연회비 납부 ※(500,000원/365일*365일) * 1.1 = 550,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50	550	-	-	
2024	550	550	-	-	
2025	550	55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신우철	담당자	환경8급 이미현	전화	5363
-----	--------	------------	-----	----------	----	------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가입자 10,134세대		
사업목적	가정 및 학교시설 등의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현금 등)를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제2항 제4호
② 환경부장관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2,600	44,600	44,600	0	0	0	62,600	18,000	
국비	21,300	22,300	22,300				31,300	9,000	
도비		0						0	
시비	21,300	22,300	22,300				31,300	9,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2,600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 2원 * 31,300,000포인트	= 62,600	

□ 예산요구 사유

- 가정 및 상업시설 등에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감축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도모 가능

□ 예산증감 사유

-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가입자 수 증가(9,073세대 → 10,134세대)
-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18449(2025. 9. 25.)호 관련하여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운영 예산(안) 가내시 알림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2. : 사업홍보 추진 및 신청 접수
 - 2026. 07. : 2025년 하반기분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 2026. 12. : 2026년 상반기분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2022년 하반기분 인센티브 지급 ○ 총가입세대 : 7,885세대 ('23. 6. 기준) ○ 지급세대 : 3,369세대 ○ 지 급 액 : 17,444천원	■ 2023년 상반기분 인센티브 지급 ○ 총가입세대 : 8,140세대 ('23. 12. 기준) ○ 지급세대 : 3,816세대 ○ 지 급 액 : 30,751천원
2024	■ 2023년 하반기분 인센티브 지급 ○ 총가입세대 : 8,429세대 ('24. 6. 기준) ○ 지급세대 : 3,485세대 ○ 지 급 액 : 22,750천원	■ 2024년 상반기분 인센티브 지급 ○ 총가입세대 : 9,073세대 ('24. 12. 기준) ○ 지급세대 : 3,284세대 ○ 지 급 액 : 27,242천원
2025	■ 2024년 하반기분 인센티브 지급 ○ 총가입세대 : 9,952세대 ('25. 6. 기준) ○ 지급세대 : 3,316세대 ○ 지 급 액 : 18,850천원	■ 2025년 상반기분 인센티브 ※'25. 12. 지급 예정 ○ 총가입세대 : 10,134세대 ('25. 10. 기준) ○ 지급세대 : 3,675세대 ○ 지 급 액 : 25,412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4,000	32,804	-	1,196	
2024	42,600	40,592	-	2,008	
2025	44,600	18,850	-	25,750 (2025. 12. 지출예정)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신우철	담당자	환경8급 이은지	전화	5367
-----	--------	------------	-----	----------	----	------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김포시 할당대수 350대		
사업목적	기존의 가정·상가 등 건물 대상의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자동차 운행 정지로 미세먼지 발생 원천적 억제하고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자 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제2항 제4호
② 환경부장관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260	10,600	10,600	0	0	0	14,000	3,400	
국비	5,630	5,300	5,300				7,000	1,700	
도비		0						0	
시비	5,630	5,300	5,300				7,000	1,7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000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301-14 기타보상금	·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차량 인센티브 지급 - 40,000원 * 350대	= 14,000	

□ 예산요구 사유

- 기존의 가정·상가 등 건물 대상의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자동차의 운행 거리 감축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천적 억제하고 에너지 자원 절약, 교통사고 예방 등으로 사회적 비용 저감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분야 가입자수 증가(230대 → 350대)
-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18449(2025. 9. 25.)호 관련하여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운영 예산(안) 가내시 알림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02. : 제도홍보 및 참여자 모집
 - 2026. 03. ~ 04. : 신청 접수
 - 2026. 12. : 감축량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지급 ○ 할당대수 : 61대 ○ 지급대수 : 39대 ○ 지 급 액 : 2,980천원
2024	■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지급 ○ 할당대수 : 241대 ○ 지급대수 : 138대 (2023년 예산부족으로 이월인센티브(4대분) 포함) ○ 지 급 액 : 9,680천원
2025	■ 2025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지급 예정 (2025. 12.) ○ 할당대수 : 230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	2,980	-	20	
2024	11,260	9,680	-	1,580	
2025	10,260	-	-	10,260 (2025. 12. 지출예정)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신우철	담당자	환경8급 이은지	전화	5367
-----	--------	------------	-----	----------	----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취약계층 이용시설 326개소				
사업목적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무료측정과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해당조례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10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500	73,850	73,850	0	0	0	54,400	-19,450	
국비		0	0				0	0	
도비	7,351	22,155	22,155				16,320	-5,835	
시비	17,149	51,695	51,695				38,080	-13,615	
기타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4,400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95,000원 * 320개소 =	30,400	
	401-01 시설비	· 맑은숨터 조성(노후장판 및 벽지 등 실내 환경 개선공사 지원) 4,000,000원 * 6개소 =	24,000	

□ 예산요구 사유

- 법정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 측정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한 시설의 개선 지원(노후된 벽지 및 장판 등 교체 공사)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맑은숨터 조성(8개소→6개소), 맑은숨터 조성시설 유지관리(8개소→0개소) 축소에 따른 예산 감소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16567(2025.11.04.)호에 따른 가내시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수립 및 측정업체 선정
 - 2026. 03. ~ 09.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지원
 - 2026. 06. ~ 10. :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지원(맑은숨터 조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380개소
2024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350개소
2025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340개소 -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6개소 공사완료 - 맑은숨터 조성시설 유지관리 10개소 지원완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000	19,530	-	1,470	
2024	24,500	21,777	-	2,723	
2025	73,850	25,528	-	48,322 (2025. 11. 집행예정)	10. 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최영식	담당자	환경8급 민다혜	전화	5374
-----	--------	--------------	-----	----------	----	------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미세먼지신호등 유지관리 17개소					
사업목적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이 대기질 상태를 쉽게 확인하도록 정보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경기도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1항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 및 경보에 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상 조치 및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800	13,200	13,200	0	0	0	13,2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800	13,200	13,200				13,2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200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 : 58,823원 * 17개소 * 12월 = 12,000 . 미세먼지 신호등 통신요금 : 5,882원 * 17개소 * 12월 = 1,200		

☐ 예산요구 사유

- 다중이용시설 등 야외활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운영중으로 미세먼지농도 실시간 표출을 위한 신호등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illegible]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 계획 및 업체계약
 - 2026. 1. ~ 12. :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미세먼지 신호등 12개소 유지관리 용역 및 17개소 통신요금 집행(5개소 무상 유지관리) - 유지관리 용역 : 6,667,000원, 통신요금 등: 1,188,000원 집행
2024	○ 미세먼지 신호등 17개소 유지관리 용역 및 17개소 통신요금 집행 - 유지관리 용역 : 8,659,260천원, 통신요금 등: 2,122,000원 집행
2025	○ 미세먼지 신호등 17개소 유지관리 용역 및 17개소 통신요금 집행 - 유지관리 용역 : 5,119,000원, 통신요금 : 2,135,000원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900	7,855	-	45	
2024	10,800	10,781	-	19	
2025	13,200	7,254	-	5,94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최영식	담당자	환경7급 임수정	전화	5372
-----	--------	--------------	-----	----------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		
사업목적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대회개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 제1항
		정부는 국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해당조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0조 제3항, 제35조
		(제30조 제3항)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5조)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8조
		(제3조 제1항)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발굴·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8조)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400	7,400	7,400	0	0	0	7,4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400	7,400	7,400				7,4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40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201-01 사무관리비	◎ 기후변화 대응 홍보 및 대회운영비 : 2,800,000원 · 홍보물품 구입 : 5,000원 × 400개 · 심사수당 지급 : 120,000원 × 4명 · 기타 행사 물품 등 구입 : 320,000원	= 2,800 = 2,000 = 480 = 320	
	301-14 기타보상금	◎ 우수참가자에 대한 포상금 : 4,600,000원 · 최우수 : 700,000원 × 2명 · 우수 : 500,000원 × 4명 · 장려 : 300,000원 × 4명	= 4,600 = 1,400 = 2,000 = 1,200	

□ 예산요구 사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김포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김포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사업(시민 참여·홍보)의 추진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초)미세먼지 맞춤형 저감 종합대책’ 세부사업(미세먼지 교육 및 홍보)의 추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4. : 기후변화주간 및 지구의 날 행사(전국 소등행사 등)
 - 2026. 7. ~ 8. : 기후변화 대응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
 - 2026. 9. : 김포학생융합체험 한마당 행사(기후변화 대응 체험부스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기후변화대응 아이디어 공모 대회 개최 및 시상 : 총4명(우수 1, 장려 3) - 김포학생융합체험 한마당 체험부스(「탄소 ZERO 텀블러 만들기」) 운영 : 286명 참여
2024	- 지구의 날 기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및 시상 : 총36명(대상 2, 최우수 4, 우수 10, 장려 20) - 기후변화주간 및 지구의날 행사 : 전국 소등행사(공공 20개소, 공동주택 8,493세대 참여), 길거리 홍보·전시 행사 - 어린이 날 체험부스(「탄소풍선 다트게임」) 운영 및 탄소중립 퀴즈 진행 : 400명 참여 - 에너지의 날 기념 탄소중립 실천 챌린지(걷기 앱 활용) : 800명 참여 - 김포학생융합체험 한마당 체험부스(「우리집 대기전력을 찾아드립니다」) 운영 : 체험 85명, 탄소포인트가입 60명
2025	- 기후변화주간 및 지구의날 행사 : 전국 소등행사(공공 34개소, 공동주택 19,307세대 참여) - 김포시민의날 행사 : 기후 O/X퀴즈, 기후변화 인식 설문조사,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홍보(100명 참여) - 2025년 김포시 AI로 만드는 기후대응 솜품 공모전 개최(34명 참가, 10명 수상) - 김포학생융합체험 한마당 체험부스 (「할리갈리 퀴즈 풀고 탄소중립 실천해요」) 운영(100명 참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400	6,600	-	800	
2024	7,400	7,157	-	243	
2025	7,400	7,387	-	13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신우철 미세먼지대응팀장 최영식	담당자	환경7급 김정수 환경7급 임수정	전화	5362 5372
-----	--------	----------------------------	-----	----------------------	----	--------------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하성면 전류리 일원
사업규모	하성면 전류리 일원		
사업목적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 비용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시설과 제2조제7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에 사업자가 시설하기에 어려운 구간에 수요가 부담이 발생할 때에는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D)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434,408	376,920	376,920	0	376,920	0	
국비		0				0	
도비	217,204	188,460	188,460		188,460	0	
시비	217,204	188,460	188,460		188,460	0	
기타		0				0	자부담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76,920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하성면 전류리 일원 4.9km, 136세대	= 376,920	

예산요구 사유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사에 시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포시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해 필수적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3. ~ 4. : 도비보조금 신청
 - 2026. 4. ~ 11. : 사업시행
 - 2026. 12. :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장기동 장기마을 일원 : 2.7km - 양촌읍 구래리 비엔뷰 인근 : 0.65km (24년 계속사업)
2024	- 양촌읍 구래리 비엔뷰 인근 : 1.65km - 월곶면 고막리 일원 : 0.39km
2025	- 양촌읍 석모리 900번지 인근 : 1.155km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29,800	429,800	-	0	
2024	434,408	434,408	-	0	
2025	376,920	376,920	-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박유선	담당자	환경7급 권선엽	전화	5383
-----	--------	-------------	-----	----------	----	------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폭염 취약계층
사업규모	44가구		
사업목적	폭염대비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인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자)에 대한 에어컨 설치 지원을 통한 복지 증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에너지법	제16조의2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 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0,500	55,000	55,000	0	0	0	50,600	-4,400	
국비		0						0	
도비	30,250	27,500	27,500				25,300	-2,200	
시비	30,250	27,500	27,500				25,300	-2,200	
기타		0						0	자부담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600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1,150,000원 * 44가구 [지원단가 : 가구당 약 115만원(기본설치비, 검수비 등 포함)] =	50,600	

예산요구 사유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거동 불편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복지 서비스 필요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예산(안) 가내시 반영 및 사업량 축소(50가구 → 44가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2.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위탁협약
 - 2026. 04. ~ 05. : 예산확보 및 보조금 수령
 - 2026. 05. ~ 06. : 대상가구 모집
 - 2026. 06. ~ 09. : 사업 시행
 - 2026. 10. :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자 - 사 업 비 : 61,600천원 - 사 업 량 : 67가구 - 수탁기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024	- 사업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자 - 사 업 비 : 60,500천원 - 사 업 량 : 55가구 - 수탁기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025	- 사업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자 - 사 업 비 : 55,000천원 - 사 업 량 : 54가구 - 수탁기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1,600	61,600	-	-	
2024	60,500	60,500	-	-	
2025	55,000	55,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박유선	담당자	환경9급 신서영	전화	5382
-----	--------	-------------	-----	----------	----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LPG용기 취약시설 가구
사업규모	관내 LPG용기 취약시설(주택) 21세대		
사업목적	LPG사용 가구 중 가스사고 취약 계층에 대한 가스안전 확보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시설과 제2조제7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에 사업자가 시설하기에 어려운 구간에 수요가 부담이 발생할 때에는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800	0	0	0	0	0	5,850	5,850	
국비	5,400	0	0	0	0	0	2,925	2,925	
도비		0						0	
시비	5,400	0	0	0	0	0	2,925	2,925	
기타	2,400	0					650	65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850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LPG 사용 가구 시설개선 비용 * 21가구 (단독주택 : 270,000원 * 20가구 = 5,400,000원) (공동주택 : 450,000원 * 1가구 = 450,000원)	= 5,850	

□ 예산요구 사유

- LPG사용 가구 중 LPG 고무호스 배관을 사용 중인 가스사고 취약 가구에 대해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을 통해 가정 내 가스누출 및 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요가 없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026년에는 수요가 발생하여 해당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4. : 국비보조금 신청
 - 2026. 05. : 각 읍.면.동 신청접수
 - 2026. 06. :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계약
 - 2026. 07. : 시설개선 공사 실시
 - 2026. 12. :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시설개선사업 대상자 30세대 선정 후 개선사업 완료
2024	· 시설개선사업 대상자 48세대 선정 후 개선사업 완료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750	6,750	-	-	
2024	10,800	10,792	-	8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8급 김혜선	전화	5386
-----	--------	-------------	-----	----------	----	------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단독주택 70가구		
사업목적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주택용 에너지 소비 경감 및 온실가스 저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
		시장은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10,867	110,867	0	0	0	76,076	-34,791	
국비		0						0	
도비									
시비		110,867	110,867				76,076	-34,791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6,076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택지원)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988,000원 * 70가구	= 69,160	
		· 69,160,000원 * 10% (공기관 위탁수수료)	= 6,916	

□ 예산요구 사유

-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여 전력을 자체 생산·소비하는 자립형 에너지 주택 실현 및 탄소중립 실현
- 우리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및 에너지자립률 향상에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축소(102가구 → 70가구)
 - 2025년도 접수 건수와 2026년도 수요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량 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2. ~ 10.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2026. 12. :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사 업 량 : 관내 공동주택 102가구 (가구당 988천원 지원) · 사 업 비 : 110,867천원 · 수탁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10,867	110,867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6급 김연재	전화	5384
-----	--------	-------------	-----	----------	----	------

공사민원 현장 단속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약 1,900개소, 특정공사 신고사업장 약 360개소		
사업목적	김포시 전지역 공사소음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시민의 행정 신뢰도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 시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300	4,540	4,540	0	0	0	4,480	-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300	4,540	4,540				4,480	-6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480	
공사민원 현장단속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환경장비 정도검사 및 유지관리비 : 120,000원*2회 = 240 · 확인서 및 소음진동 측정 결과표 제작 : 400,000원*1회 = 400 · 점검용 물품 및 안전화 등 구입 : 300,000원*5명 = 1,500		
	201-02 공공운영비	· 공사민원처리 휴대폰 통신요금 : 35,000원*12월*2대 = 840 · 비산먼지 관리 등 안내문 우편요금 : 1,500,000원 = 1,500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환경(비산먼지·소음) 피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환경장비 정도검사 및 유지관리비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12. : 공사민원(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시 현장 점검 등 신속한 민원처리

- 2026. 3. ~ 6. : 환경장비(소음·진동측정기) 정도검사 실시 및 유지보수

- 2026. 4. ~ 5. : 공사장 안내문(주요 위반사례 및 공정별 관리 요령 등) 발송(상반기)

- 2026. 9. ~ 10. : 공사장 안내문(주요 위반사례 및 공정별 관리 요령 등) 발송(하반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기간제 근로자 급여, 보험료 등 지급 (1명*170일) · 공사민원처리 휴대폰 통신요금 (2대*12개월) · 환경장비 정도검사 및 유지관리비 (소음측정기 1대, 진동측정기 1대) · 드론 수리 및 유지비 (1대) · 드론 배상책임보험 (1대) · 확인서 및 소음진동 측정 결과표 제작 (확인서 200매, 소음측정결과표 100매, 진동측정결과표 50매)
2024	· 공사민원처리 휴대폰 통신요금 (2대*12개월) · 환경장비 정도검사 및 유지관리비 (소음측정기 2대) · 확인서 및 소음진동 측정 결과표 제작 (확인서 200매, 소음측정결과표 50매, 진동측정결과표 50매) · 점검용 물품 구입 · 점검용 작업화 구입 · 비산먼지 관리 등 안내문 우편요금 (2회(반기별 1회))
2025	· 공사민원처리 휴대폰 통신요금 (2대*9개월) · 환경장비 정도검사 및 유지관리비 (소음측정기 1대, 진동측정기 1대) · 비산먼지 관리 등 안내문 우편요금 (상반기 1회)) · 공사민원 현장점검용 물품 및 작업화 구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402	22,867	-	535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포함
2024	3,300	2,955	-	345	
2025	4,540	2,922	-	1,61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공사환경팀장 김명희	담당자	환경7급 이종왕	전화	5377
-----	--------	------------	-----	----------	----	------

환경소음측정망 측정 위탁 용역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걸포동 등 7개지역 35개소		
사업목적	정온한 도시환경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하기 위해 소음측정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전문성·신뢰성 높은 측정자료를 공개하고 소음측정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측정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별표2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다음 사무 : 상시 측정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6,400	36,400	36,400	0	0	0	36,4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6,400	36,400	36,400				36,4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6,400	
공사민원 현장단속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소음측정 7개지역 35개소*4분기 - 직접인건비(사전현황조사, 소음측정, 보고서 작성) 11,185,000원 - 직접경비(직접인건비의 10%) : 1,118,000원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20%) : 13,422,000원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30%) : 7,382,000원 · 33,107,000원+부가가치세(10%) = 36,400,000원	= 36,400	

□ 예산요구 사유

- 도시화에 따른 정온한 도시환경조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지역으로서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환경소음측정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소음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소음저감대책 강구 및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소음공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환경소음측정망 측정 위탁 운영계획 수립
- 2026. 2.

: 소음측정 전문기관 선정 및 용역 계약 체결
- 2026. 3. ~ 12.

: 소음측정 및 소음결과 매분기별 경기도 보고 및 시 홈페이지 공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분기별 각 지점별로 1일 6회씩 회당 5분 이상 소음측정 - 1분기 소음측정 완료 (20개 지점) - 환경소음측정망 확대 설치를 위한 용역 추진 - 2분기 ~ 4분기 소음측정 완료 (35개 지점)
2024	· 분기별 각 지점별로 1일 6회씩 회당 5분 이상 소음측정 - 1분기 ~ 4분기 소음측정 완료 (35개 지점)
2025	· 분기별 각 지점별로 1일 6회씩 회당 5분 이상 소음측정 - 1분기 ~ 3분기 소음측정 완료 (35개 지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6,400	28,802	-	7,598	
2024	36,400	31,970	-	4,430	
2025	36,400	23,912	-	12,488	10.31.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공사환경팀장 김명희	담당자	환경7급 박미선	전화	5378
-----	--------	------------	-----	----------	----	------

2026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환경지도과



토양오염도 조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지역
사업규모	토양오염 실태조사 대상지역 10개소, 토양오염 신고지역 4개소		
사업목적	토양오염 조사를 통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위임규정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592	6,500	6,500	0	0	0	6,5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592	6,500	6,500				6,5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500	
토양오염 실태조사 (정기조사)	201-01 사무관리비	· 토양시료채취 수수료 : 184,000원*10개소*1지점 =	1,840	분석기관 : 경기도보건환경 연구원(무료)
신고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 (수시조사)	201-01 사무관리비	· 토양시료채취 수수료 : 184,000원*4개소*4지점 = · 토양시료분석 수수료 : 53,625원*2항목*4개소*4지점 =	2,944 1,716	분석기관 : 용역기관(유료)

□ 예산요구 사유

- 토양오염실태조사는 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타공 장비(지오프로브)를 보유한 환경부지정 토양관련 전문업체 용역비용 발생.
- 토양오염 신고 접수시 오염확산방지 및 정화조치 등 긴급대응을 위해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 하여 오염여부 판단이 필요하며, 시료채취 및 분석 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토양오염 실태조사>

- 2026. 1. : 토양오염실태조사 예정지 선정 및 제출(시→도→환경부)
- 2026. 5. : 토양오염실태조사 예정지 확정 및 세부 추진계획 통보(환경부→도→시)
- 2026. 5. : 토양오염실태조사 협조요청 공문 발송(시→조사대상)
- 2026. 5. :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시료채취 용역 계약체결
- 2026. 7. :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시료채취(용역기관) 및 검사의뢰(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2026. 12. :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시료 분석결과 통보(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시)
- 2026. 12. : 조사대상 중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업체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 실시

<신고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

- 2026. 1. ~ 2026. 12. : 토양오염신고 접수 및 토양오염사실 발견 시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시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 정화명령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토양오염 실태조사(10개소) 실시 ⇒ 검사결과 1개소 기준치 초과 ⇒ 초과 사업장에 토양정밀조사 명령 조치 · 신고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신고 1건, 검사결과 적합)
2024	· 토양오염 실태조사(10개소) 실시 ⇒ 검사결과 모두 적합 · 신고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신고 1건, 검사결과 부적합) ⇒ 관련 내용을 수사중인 경찰서에 통보
2025	· 토양오염 실태조사(10개소) 실시 및 검사의뢰(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신고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예정(통진읍 도사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776	3,406	-	1,370	
2024	3,592	2,557	-	3,943	
2025	6,500	1,011	-	5,48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관리팀장 임송미	담당자	환경7급 유홍철	전화	5665
-----	-------	------------	-----	----------	----	------

수질오염 및 화학사고 처리·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지역 공공수역
사업규모	김포시 전지역 공공수역		
사업목적	유류오염사고, 화학사고 발생 시 방제작업 위탁용역, 방제장비를 이용한 신속한 방제처리를 통해 오염확산 방지 및 환경피해를 줄이고자 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해당조례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000	32,585	32,585	0	0	0	32,585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000	32,585	32,585				32,585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2,585	
수질오염 및 화학사고 처리·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방제전문업체 용역비 : 3,500,000원*3회	= 10,500	
		· 방제장비 임차료 : 500,000원*2회	= 1,000	
		· 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		
		- 유류흡착분해제거제 : 130,000원*30박스	= 3,900	
		- 유흡착제(패드형) : 100,000원*20박스	= 2,000	
		- 유흡착제(분형) 등 : 150,000원*20팩	= 3,000	
		- 케미칼흡착제(패드형,100매/박스) : 110,000원*10박스	= 1,100	
		· 화학사고 대비 방재물품 구입		
		- 방독마스크 : 220,000원*20개	= 4,400	
		- 방독정화통 : 25,000원*40개	= 1,000	
		- 방진복, 방진장갑 등 : 20,000원*30개	= 600	
		· 수질오염 및 화학사고 대응 피복비	= 5,085	

□ 예산요구 사유

-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 폐사 등 자체방제가 어려운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신속히 방제작업 실시하고자 함
- 방제장비 및 보호구를 구비하여 유류오염사고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히 초동 대응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5. 12. : 방제작업 위탁 용역 계약
- 2026. 1. ~ 2026. 12. : 오염사고 발생 시 자체방제·방제용역 실시 및 방제장비 구입 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수질오염사고				
	계	자체방제	원인자방제처리	위탁업체 방제처리	비고
	21	12	9	0	-
- 방제장비 구입내용 : 유처리제 23통, 유흡착재(분형) 37박스, 유흡착분해제거제 10박스 등					
2024	수질오염사고				
	계	자체방제	원인자방제처리	위탁업체 방제처리	비고
	16	7	7	2	
- 방제장비 구입내용 : 유흡착재(분형) 및 패드 4박스, 유흡착분해제거제 2박스, 흡착분지대 40개 등					
2025	수질오염 및 화학사고				
	계	자체방제	원인자방제처리	위탁업체 방제처리	비고
	16	13	2	1	
- 방제장비 구입내용 : 유흡착재(분형) 및 패드 10박스, 유흡착분해제거제 5박스, 흡착분지대 20개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500	9,914	-	10,586	
2024	24,000	15,844	-	8,156	
2025	32,585	14,287	-	18,29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장 이운석 환경지도2팀장 김필섭	담당자	환경7급 김민재 환경7급 이인혜 환경8급 권정현	전화	5655 5474 5883
-----	-------	----------------------------	-----	----------------------------------	----	----------------------

무인항공기 활용감시 지원체계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비행금지구역 제외)
사업규모	관내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업소 및 환경오염 민원발생지		
사업목적	점검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지역에서의 촬영·모니터링 등을 통해 점검 시 이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 불법적인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제1항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88	2,500	2,500	0	0	0	2,5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888	2,500	2,500				2,5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	
무인항공기 활용감시 지원체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드론 수리 및 유지비 : 1,000,000원*1대	= 1,000	
	201-02 공공운영비	· 드론 배상책임보험 : 500,000원*3대*1년	= 1,500	

□ 예산요구 사유

-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인력투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촬영 및 모니터링으로 효율적인 점검 가능
- 민원 현장 확인 시 상공에서 주변 일대 파악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 실현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사업물량 동일하여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6. 1. : 드론 촬영 허가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 2026. 1. : 환경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주요 항공 감시 대상 현황도 제작
 - 2026. 2. : 드론 고장·결함 여부 확인 및 유지보수 실시
 - 2026. 1. ~ 2026. 12. : 드론 활용하여 사업장 점검 및 환경오염행위 감시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무인항공기 비행 횟수 : 58회 · 무인항공기 단속 건수 : 6건
2024	· 무인항공기 비행 횟수 : 65회 · 무인항공기 단속 건수 : 4건
2025	· 무인항공기 비행 횟수 : 30회 · 무인항공기 단속 건수 : 0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300	1,687	-	1,613	
2024	1,888	1,844	-	44	
2025	2,500	1,844	-	65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장 이윤석	담당자	환경8급 김수미	전화	5657
-----	-------	-------------	-----	----------	----	------

환경피해대응 주민건강모니터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1. 30.	사업위치	대곶면 거물대리 및 초원지3리
사업규모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인정자 61명(24년도 검진자 61명 격년 검진)		
사업목적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에 대한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환경보건법	제20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	제5조
		환경피해 인정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000	200,000	200,000	0	0	0	115,095	-84,90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0,000	200,000	200,000				115,095	-84,90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5,095	
환경피해대응 주민건강 모니터링	207-01 연구용역비	· 환경피해지역 주민건강검진비 : 1,886,800원*61명	= 115,095	

□ 예산요구 사유

- 환경부에서 추진한 「김포시 환경오염정밀조사 및 피해구제방안 용역(2018)」과 관련하여, 대곶면 거물대리·초원지3리 주민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는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었기에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부터 주민건강 모니터링을 추진 중에 있음
- 환경오염에 의한 발생 가능 질환을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주민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주민건강모니터링은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어 2024년 검진 대상자 61명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고, 환경오염피해 구제 급여 지급 심사자 45명에 대해 급여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주민건강모니터링 추경 실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반영예정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6. 1.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26. 2. ~ 2026. 3. : 입찰 및 용역업체 선정
 - 2026. 4. ~ 2026. 11. : 「환경피해대응 주민건강모니터링 사업」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환경피해지역 통합건강관리사업(환경부) - 피해인정자에 대해 격년으로 진행하던 건강검진 사업을 매년 실시하는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변경 - 2023년도 피해인정자(생존자) 173명에 대해 검진 추진 122명 검진완료, 미검진자 51명(거동불편, 개인사정 등 검진거부)
2024	· 환경부 통합건강관리사업 폐지 · 김포시 자체 환경피해대응 주민건강모니터링 사업 실시(현재 피해인정자중 생존자 172명) - 피해인정자(생존자) 61명[2023년 미검진자를 우선, 작년도 검진자중 검진 희망자(고령자 우선)] 검진
2025	· 김포시 환경피해대응 주민건강모니터링 사업(피해인정자 200명 : 생존자 173명 / 사망자 27명) - 피해인정자 112명(사망 7명 확인) 검진 실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9,083	170,794	-	68,289	
2024	100,000	99,903	-	97	
2025	200,000	100,300	-	99,7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관리팀장 임송미	담당자	행정6급 신동호	전화	2837
-----	-------	------------	-----	----------	----	------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지역
사업규모	김포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4명, 연 1회 이상 회의 개최		
사업목적	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사고 대비·대응 정책과 이행사항을 심의하여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제2호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해당조례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8조에 따른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변경 3.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20	400	400	0	0	0	4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20	400	400				4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0	
화학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 100,000원*4명*1회	= 400	

□ 예산요구 사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제2호 및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함
- 심의를 위한 ‘김포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시 위촉직 위원 4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2. : 2024년 제1회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 2024. 9. : 2024년 제2회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 2025. 5. : 2025년 제1회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 2025. 10. : 2025년 제2회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 2026. 5. : 2026년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 6. 김포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2024	· 2024. 2. 김포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 2024. 9. 김포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2025	· 2025. 5. 김포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서면) 회의 개최 · 2025. 10. 김포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서면) 회의 개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20	60	0	260	
2024	320	300	0	20	
2025	400	100	-	3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장 이윤석	담당자	환경7급 김민재	전화	5655
-----	-------	-------------	-----	----------	----	------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구입 및 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지역
사업규모		인구수에 따른 제도제 및 먹는물소독약(차아염소산칼슘) 구입비 및 순환대체기간 도래한 기존 비축물자 폐기물처리			
사업목적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환경부 소관“제독제 및 먹는물소독약” 구입 및 관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①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종류의 신제품으로 대체 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등 해당 물자의 자연손실 또는 품질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140						8,000	8,000	
국비								0	
도비								0	
시비	8,140						8,000	8,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000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구입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비축물자 구입비용 : 5,500원/kg*1,200kg	= 6,600	
		· 조달청 수수료 : 400,000원	= 400	
		· 폐기물 처리비용 : 1,000,000원	= 1,000	

□ 예산요구 사유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비축물자인 “제독제 및 먹는물소독약(차아염소산칼슘)”구입 및 관리
- 비축물자 및 저장시설 관리지침에 따라 순환대체기간(2년)내에 비축물자 구입 및 기존 비축물자 폐기물 처리 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3. : 비축물자 구입

- 2024. 5. : 순환대체기간 도래한 기존 비축물자 폐기물 처리

- 2026. 3. : 비축물자 구입 및 기존 비축물자 폐기물 처리 추진(순환대체기간 2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 비축물자 구입 : 6,481천원(1,173kg) · 폐기물처리비용 : 495천원
2025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8,140	6,976	-	1,164	
2025	-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장 이윤석	담당자	환경7급 김민재	전화	5655
-----	-------	-------------	-----	----------	----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환경오염배출업소
사업규모	20건		
사업목적	신고를 통한 환경오염행위의 적발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환경법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000	1,000	1,000	0	0	0	1,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00	1,000	1,000				1,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301-14 기타보상금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 50,000원*20건	= 1,000	

□ 예산요구 사유

-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사업물량 동일하여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 작성 및 운영
 - 2026. 6. : 상반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대상 선정 및 지급
 - 2026. 12. : 하반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대상 선정 및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등 : 9건 지급
2024	·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등 : 13건 지급
2025	·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등 : 2건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00	1,100	-	-	
2024	2,000	1,450	-	550	
2025	1,000	300	-	7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장 이윤석	담당자	환경8급 김수미	전화	5657
-----	-------	-------------	-----	----------	----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저감 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지역
사업규모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업목적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통해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제1항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 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 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3,018	27,018	27,018	0	0	0	18,248	-8,77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3,018	27,018	27,018				18,248	-8,77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8,248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저감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단속용(위반확인서, 점검표 등) 용지 제작 인쇄 : 900,000원 · 단속용 마스크 구입 : 50,000원*40박스 · 환경 민원처리 비상근무 급식비 : 9,000원*23명*1회*12월 · 공무원 피복비 : 500,000원*1명	= 900 = 2,000 = 2,484 = 500	
	201-02 공공운영비	· 무인악취포집기 전기요금 : 5,000원*5대*12월 · 무인악취포집기 통신비 : 10,000원*1대*12월 · 안내문 발송용 우편요금 - 환경오염배출업소 점검관련 안내문 : 2,500원*4,000통 · 환경오염 민원처리용 통신비 : 27,000원*6대*12월	= 300 = 120 = 10,000 = 1,944	

□ 예산요구 사유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 지도·점검을 위한 위반확인서 제작, 안내문 발송

□ 예산증감 사유

- 업무용 노트북 구입 완료에 따른 노트북 구입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 통신비 집행, 단속용 용지 제작 및 우편 발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보조 기간제근로자 급여 등 : 11,666천원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원처리 급량비 등 : 16,126천원 · 민원처리용 휴대폰, 무인악취포집기 통신비 및 전기비 등 : 14,402천원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환경교육 운영 : 8,917천원
2024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원처리 급량비 등 : 7,892천원 · 민원처리용 휴대폰, 무인악취포집기 통신비 및 전기비 등 : 10,787천원
2025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원처리 급량비 등 : 3,672천원 · 민원처리용 휴대폰, 무인악취포집기 통신비 및 전기비 등 : 8,358천원 · 자산 및 물품취득 : 수사실 노트북 구입 등 : 2,812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9,679	51,111	-	8,568	
2024	23,018	18,679	-	4,339	
2025	27,018	14,842	-	12,17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장 이윤석 환경지도2팀장 김필섭	담당자	환경7급 김민재 환경8급 정성훈 환경8급 김재형 환경9급 이도형	전화	5655 5825 5659 5653
-----	-------	----------------------------	-----	--	----	------------------------------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환경오염배출업소
사업규모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및 소모품 등		
사업목적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지도·점검 및 환경민원 접수 시 정확·정밀한 환경장비 사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제1항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900	9,900	9,900	0	0	0	3,900	-6,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900	9,900	9,900				3,900	-6,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900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환경장비 정도검사 : 150,000원*2회 · 환경장비 유지관리비 : 400,000원 · 악취 포집용기 구입 : 400,000원*1박스 · 폐수시료채취용 유리병 구입 : 9,000원*200개 · 지도점검용 공구 구입 : 1,000,000원	= 300 = 400 = 400 = 1,800 = 1,000	

□ 예산요구 사유

- 지도점검용 공구 등 구입하여 지도점검 효율성 및 정확성 증대
- 측정장비 관리를 통한 상시 가용상태 유지
- 점검 시 필요한 물품(악취포집용기, 시료채취용기 등) 구입

□ 예산증감 사유

- 복합가스 측정기 구입 완료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측정장비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 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지도점검용 측정장비 구입 등 : 1,694천원 · 휴대용 악취 측정 장비 구입 등 : 4,620천원
2024	· 지도점검용 측정장비 구입 등 : 2,263천원
2025	· 지도점검용 측정장비 구입 등 : 3,378천원 · 복합가스측정기 구입 등 : 5,308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620	6,314	-	2,306	
2024	3,900	2,263	-	1,637	
2025	9,900	8,686		1,21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장 이윤석	담당자	환경8급 김재형	전화	5659
-----	-------	-------------	-----	----------	----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물질 측정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구 40개소		
사업목적	배출사업장 배출구에서 먼지 및 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시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9,000	15,000	22,000	0	0	-7,000	20,000	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9,000	15,000	22,000			-7,000	20,000	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물질 측정	201-01 사무관리비	· 대기오염물질(먼지, THC 등) 측정비 : 500,000원*40개소 =	20,000	

□ 예산요구 사유

- 최근 미세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기질 개선 요구 증대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구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오염도 저감 조치를 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
- 측정수수료 : 500,000원/개소
 - 오염물질 별 측정수수료 : 먼지(175,200원), 탄화수소(THC)(76,900원)
 - 출장비(2인) 및 부가세 포함 반영
 - ※ 측정수수료 등 측정비용 단가 근거 : 사단법인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측정수수료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대비 민원발생 감소 등으로 사업량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6. 1. : 용역계획 수립 및 용역계약
 - 2026. 3. ~ 2026. 12. : 용역실시(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 2026. 12. : 용역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측정실적: 대기배출업소 42개소(먼지 50개, THC 50개, NOx 10개, SOx 10개, HCl 5개) · 처분실적: 개선명령, 사용중지(배출허용기준 초과: THC 9개, HCl 3개)
2024	· 측정실적: 대기배출업소 29개소(먼지 50개, THC 50개) · 처분실적: 개선명령(배출허용기준 초과: THC 14개)
2025	· 측정실적: 대기배출업소 34개소(먼지 42개, THC 42개) · 처분실적: 개선명령(배출허용기준 초과: THC 7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500	14,500	—	2,000	
2024	19,000	14,642	—	4,358	
2025	15,000	-	-	15,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장 이윤석	담당자	환경7급 박선미	전화	5654
-----	-------	-------------	-----	----------	----	------

악취유발 사업장 악취 측정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악취유발 사업장
사업규모	80개 지점		
사업목적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기본권 요구가 고취됨에 따라 심미적인 환경민원인 악취관련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대하여 악취 포집과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 그 결과를 행정처분에 활용하는 등 사업장의 악취를 개선시키코자 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악취방지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제17조(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 시설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제16조의3에 따른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9,000	15,000	22,000	0	0	-7,000	20,000	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9,000	15,000	22,000			-7,000	20,000	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악취유발 사업장 악취측정	201-01 사무관리비	· 악취측정 : 250,000원*80개지점 =	20,000	

□ 예산요구 사유

- 최근 3~4년간 환경민원 중 악취민원 빈도가 제일 높으며, 이는 시민들이 악취 등 심미적 환경요인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함을 나타냄.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행정조치로 악취저감 및 시민만족도 고취 필요
- 측정수수료 : 250,000원/건
 - 오염물질 별 측정수수료 : 복합악취(132,000원)
 - 출장비(2인), 부속기기, 부가세 포함 반영
 - ※ 측정수수료 등 측정비용 단가 근거 : 사단법인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측정수수료, 견적서 등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대비 민원발생 감소 등으로 사업량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정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반영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6. 1. : 용역계획 수립 및 용역계약
 - 2026. 3. ~ 2026. 12. : 용역실시(악취포집 및 분석)
 - 2026. 12. : 용역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측정대행업체 : (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 측정 실적 : 50개 사업장(100개 지점) · 측정 결과 : 4개 사업장(4개 지점) 기준초과 · 처분 실적 : (1차초과)개선권고 4개소
2024	· 측정대행업체 : (주)청룡환경 · 측정 실적 : 54개 사업장(100개 지점) · 측정 결과 : 2개 사업장(3개 지점) 기준초과 · 처분 실적 : (1차초과)개선권고 2개소
2025	· 측정대행업체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측정 실적 : 46개 사업장(74개 지점) · 측정 결과 : 9개 사업장(10개 지점) 기준초과 · 처분 실적 : (1차초과)개선권고 8개소, (2차초과)조치명령 1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500	14,850	-	1,650	
2024	19,000	16,236	-	2,764	
2025	15,000	-	-	15,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장 이윤석	담당자	환경7급 이순복	전화	5651
-----	-------	-------------	-----	----------	----	------

2026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및 용역(원가산정, 평가)		
사업목적	-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대한 적정 사업원가 산출 및 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수행능력과 청소서비스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제14조 제8항 제1호 제14조 제8항 제2호
		- 제14조 제2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 제8항 제1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8항 제2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
	해당조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1,634,650	21,471,440	22,845,840	0	0	-1,374,400	23,377,120	1,905,68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1,634,650	21,471,440	22,845,840			-1,374,400	23,377,120	1,905,68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3,377,12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6명*2회 = 1,200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평가위원회 참석수당 : 160,000원*4명*3회 = 1,920		
	207-01 연구용역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용역 : 22,000,000원 = 22,000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 22,000,000원 = 22,000		
	307-05 민간위탁금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 23,330,000,000원 = 23,330,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관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한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적정한 사업원가 산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평가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노임단가, 차량 단가, 기타 제반 적용 비율 등의 상승에 따른 원가상승 반영
-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현장평가 확대(평가횟수 1회→3회)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2. : 2025년~202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 2025. 01. ~ 2025. 12. :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1차년도)
 - 2025. 02. ~ 2025. 08. : 202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용역 수행
 - 2025. 12. : 202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설계변경)
 - 2026. 01. ~ 2026. 12.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2차년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생활폐기물 처리량 : 106,688톤(일반생활 : 60,017톤, 음식물 : 21,447톤, 재활용 : 7,019톤, 대형·특수 : 18,205톤) -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용역 완료 -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8개 업체) 평가 완료
2024	- 생활폐기물 처리량 : 109,962톤(일반생활 : 61,954톤, 음식물 : 20,659톤, 재활용 : 7,106톤, 대형·특수 : 20,243톤) -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용역 완료 -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8개 업체) 평가 완료
2025	- 생활폐기물 처리량 : 91,834톤 (일반생활 : 52,432톤, 음식물 : 17,178톤, 재활용 : 5,237톤, 대형·특수 : 16,987톤) - 202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용역 완료 -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8개 업체) 평가 용역 진행 중(완료예정 : 2025.11.26.)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165,640	20,883,268	-	282,372	
2024	21,634,650	21,474,064	-	160,586	
2025	21,471,440	16,011,548	-	5,459,89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양승민	담당자	환경7급 이은정	전화	2752
-----	-------	------------	-----	----------	----	------

수도권매립지 관리 ·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일원
사업규모	- 2025년 12월 반입수수료 및 반입총량초과 가산금		
사업목적	-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로 안정적 반입 처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가목
		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징수규정	제4조, 제9조
		- 규정 제4조 :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분담금을 부과 징수하려는 때에는 사장 또는 수입담당은 제2조제4호에 따라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 규정 제9조 :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가 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257,115	4,763,680	4,457,118	0	266,562	40,000	1,500,000	-3,263,68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257,115	4,763,680	4,457,118		266,562	40,000	1,500,000	-3,263,68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00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2025년 12월 반입수수료 : 116,855원*3,000톤 · 2025년 반입총량초과 가산금 (연간 31,462.6톤 반입 기준) - 25% 미만 초과분 : 116,855원*5,930톤*1.2배 - 25%~50% 초과분 : 116,855원*1,813.6톤*1.5배	= 350,565 = 831,540 = 317,895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따른 수수료 납부

□ 예산증감 사유

- 2026. 1. 1.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2026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납부 예산 미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5년 12월 반입수수료 및 반입총량초과 가산금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22.12.~23.11.) : 28,254톤 - 반입수수료 납부액 : 2,742,875천원 - 2022년 반입총량 초과 가산금 : 1,467,326천원
2024	-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23.12.~24.11.) : 30,987톤 - 반입수수료 납부액 : 3,582,476천원 - 2023년 반입총량 초과 가산금 : 547,804천원
2025	-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24.12.~25.09.) : 25,582톤 - 반입수수료 납부액(24.12.~25.04.) : 1,474,445천원 - 반입수수료 선납액(25.05.~25.10.) : 1,800,000천원 - 2024년 반입총량 초과 가산금 : 1,159,767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407,656	4,210,201	-	197,455	
2024	4,257,115	4,130,280	-	126,835	
2025	4,763,680	4,434,212	-	329,46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팀장 류효녀	담당자	행정7급 전문혁	전화	2765
-----	-------	--------------	-----	----------	----	------

폐기물 처분 부담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일원
사업규모	2025년 김포시 생활폐기물 매립, 소각 처리량		
사업목적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로 생활폐기물의 소각, 매립 최소화 및 재활용 유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제1항제1호
법령 위임규정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29,995	873,600	963,600	0	0	-90,000	923,800	50,2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29,995	873,600	963,600			-90,000	923,800	50,2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23,800	
폐기물 처분 부담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폐기물 처분 부담금 - 매립 : 15,000원*31,000톤*1.192 - 소각 : 10,000원*31,000톤*1.192	= 554,280 = 369,520	

□ 예산요구 사유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구, 자원순환기본법 2018.1.1.)이 시행됨에 따라 2019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 동법 제36조에 따라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납부
- 2025년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소각 및 매립으로 처리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인상(1.168 → 1.192)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04 : 2025년 폐기물 처리량 산정 및 자료 제출(김포시→경기도)
 - 2026. 05.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2년도 정기신고 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 675,587천원 · 공사장생활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2018년분) 납부 : 41,559천원
2024	· 2023년도 정기신고 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 674,275천원 · 공사장생활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7차) 납부 : 71,159천원 · 공사장생활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2019년, 2020년분) 납부 : 183,480천원
2025	· 2024년도 정기신고 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 716,993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55,449	717,146	-	38,303	
2024	929,995	928,914	-	1,081	
2025	873,600	716,993	-	156,60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팀장 류효녀	담당자	행정7급 전문혁	전화	2765
-----	-------	--------------	-----	----------	----	------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305번길 69
사업규모	사무동, 적환동 2동, 계근대, 파쇄기 1대, 중장비 3대		
사업목적	반입불가 폐기물 등의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위탁처리를 통해 김포시 관내 발생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
		시장은 공중 보관시설의 폐기물을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0,200	84,700	86,000	0	0	-1,300	71,000	-13,7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0,200	84,700	86,000			-1,300	71,000	-13,7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1,000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임차료 : 3,000,000원 · 공무직 피복비 : 500,000원*3명*1회 = 1,500,000원 ·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 1,500,000원 ·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 5,000,000원 · 소모품비 : 7,000,000원	= 18,000	
	201-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 32,000,000원 · 시설장비유지비 : 16,000,000원 · 차량유지관리비 : 5,000,000원	= 53,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매립지 등에 반입불가 폐기물 등을 임시 적환하여 폐기물 처리업체로 위탁 맡기기 위한 시설 유지관리 비용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파쇄기 컨베이어 벨트 보수 완료하여 시설비 제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무인경비시스템, 프린트, 정수기 등 연간수수료 지급
 - 2026. 01. ~ 12. : 매월 공공요금 및 전기안전관리비 수수료 지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7. : 스키드로더 수리(1,283천원) - 2023.7. : 파쇄기 수리(3,520천원)
2024	- 2024.1. : 굴삭기 소모품 교체(2,754천원) - 2024.3. : 굴삭기 타이어 교체(4,950천원)
2025	- 2025.6. : 파쇄기 컨베이어 벨트 보수 실시(11,700천원) - 2025.10. : 굴삭기 및 로더 정비(11,307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7,000	63,791	-	13,209	
2024	91,200	73,689	-	17,511	
2025	84,700	60,788	-	23,91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하재헌	담당자	공업8급 송진우	전화	2772
-----	-------	------------	-----	----------	----	------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305번길 69
사업규모	폐합성수지 위탁처리량 11,250톤		
사업목적	수도권매립지, 자원화센터 및 파주환경관리센터에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을 민간 폐기물 처리 허가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
시장은 공중 보관시설의 폐기물을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950,000	2,620,000	2,700,000	0	0	-80,000	2,250,000	-37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950,000	2,620,000	2,700,000			-80,000	2,250,000	-37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250,000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307-05 민간위탁금	·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 폐합성수지 200,000원/톤*11,250톤 : 2,250,000,000원	= 2,250,000	

□ 예산요구 사유

- 수도권매립지 및 김포시 자원화센터, 파주환경관리센터에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민간 시설에 위탁 처리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2. : 매월 폐기물처리량 검토 및 기성금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폐합성수지 : 14,448톤*186,868원/톤 = 2,699,876천원(1,204톤/월 처리)
2024	- 폐합성수지 : 15,871톤*170,542원/톤 = 2,699,677천원(1,323톤/월 처리)
2025	- 폐합성수지 : 12,144톤*157,428원/톤 = 1,911,850천원(1,301톤/월 처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700,000	2,699,876	-	124	
2024	2,950,000	2,699,677	-	250,323	
2025	2,620,000	1,911,850	-	708,1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하재헌	담당자	공업8급 송진우	전화	2772
-----	-------	------------	-----	----------	----	------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일원
사업규모	- 2026년 김포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량(30,000톤)		
사업목적	- 직매립 금지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소각용량 초과하는 생활폐기물을 민간처리시설로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처리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9,000,000	9,0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9,000,000	9,00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000,000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	307-05 민간위탁금	·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 : 300,000원*30,000톤	= 9,000,000	

□ 예산요구 사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2026. 1. 1.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관내 생활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 처리량 외의 잔여량을 민간처리시설 위탁 처리

□ 예산증감 사유

-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처리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매립 수수료 대비 처리단가 상승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2025.10.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9 : 처리계획 수립
 - 2025. 10 : 민간 위탁 동의안 의회 의결
 - 2025. 11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계약심사 의뢰
 - 2025. 11 ~ 2025. 12 : 공개입찰 공고 및 업체 선정
 - 2026. 01. ~ 2026. 12. : 민간 위탁 처리 사업 추진
 - 2026. 12 : 민간 위탁 처리량 정산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24					
202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팀장 류효녀	담당자	행정7급 전문혁	전화	2765
-----	-------	--------------	-----	----------	----	------

폐기물 지도점검 차량 등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폐기물 단속 차량 9대		
사업목적		효율적인 청소 및 폐기물 단속을 위한 차량 유지 관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1항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4,200	41,200	41,200	0	0	0	41,2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4,200	41,200	41,200				41,2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1,200	
폐기물 지도점검 차량 등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유류 구입비 : 2,300,000원*12월 · 차량 수리비 : 1,000,000원*12월 · 차량 검사비 : 700,000원 · 자동차세 : 100,000원*9대	= 27,600 = 12,000 = 700 = 900	

□ 예산요구 사유

- 폐기물 무단투기 등 단속차량 유지 비용(유류대, 수리비, 공공요금 등)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2. : 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 등 지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유류비 : 26,804천원 · 검사, 수리비 등 : 14,497천원
2024	· 유류비 : 23,803천원 · 검사, 수리비 등 : 19,113원
2025	· 유류비 : 14,945천원 · 검사, 수리비 등 : 9,427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1,600	41,301	-	299	
2024	44,200	42,916	-	1,284	
2025	41,200	24,372	-	16,82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양승민	담당자	행정7급 황은경	전화	2767
-----	-------	------------	-----	----------	----	------

종량제봉투 제작 등 관련업무 추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종량제 봉투 20,800,000매 제작, 대형폐기물 스티커 300,000매 제작		
사업목적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거신고필증의 원활한 공급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89,708	1,091,508	1,091,508	0	0	0	1,150,008	58,5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189,708	1,091,508	1,091,508				1,150,008	58,5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50,008	
종량제봉투 제작 등 관련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 대형폐기물 수거신고필증 제작 : 200원*25,000매*12월 = 60,000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인터넷처리 수수료 : 245,000원*12월 = 2,940 ·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비 : 1,016,800원*4분기 = 4,068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 제작 : 7,000원*200개 = 1,400		
	206-01 재료비	·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 52원*5,200,000매*4회 =	1,081,600	

□ 예산요구 사유

-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거신고필증(스티커) 제작 비용
- 대형폐기물 수거신고필증 인터넷 납부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수료 지급
- 물류관리 시스템 전산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 예산증감 사유

-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종량제 봉투 제작량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제작량 : 19,382,800매 - 판매량 : 22,828,912매
2024	- 제작량 : 22,595,100매 - 판매량 : 23,571,072매
2025	- 제작량 : 20,622,500매 - 판매량 : 19,298,498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89,708	1,087,503	-	2,205	
2024	1,189,708	1,086,051	88,353	15,304	
2025	1,179,861	1,028,328	-	151,53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팀장 류효녀	담당자	행정7급 전문혁	전화	2765
-----	-------	--------------	-----	----------	----	------

찾길 동물사고 처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찾길 동물사고 사체 위탁 처리 1,250kg		
사업목적	로드킬 동물사체의 적정처리를 통한 생명존엄성 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2항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D)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0,000	20,000	20,000	0	20,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000	20,000	20,000		20,000	0	
기타		0				0	자부담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찾길 동물사고 처리	201-01 사무관리비	· 찾길 동물사고 처리 : 16,000원*1,250kg	= 20,000	

예산요구 사유

- 동물사체는 생명 존엄성 보호 및 처리의 전문성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음
- 동물사체의 적절한 처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동물사체의 방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환경훼손 예방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찾길 동물사체 처리용역 계약 의뢰
 - 2026. 01. ~ 2026. 12. : 찾길 동물사체 처리용역 추진 및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처리비용 : 8,378천원 -처리단가 : 12,375원/kg -처 리 량 : 677kg
2024	-처리비용 : 19,243천원 -처리단가 : 14,355원/kg -처 리 량 : 1,340.5kg
2025	-처리비용 : 15,303천원 -처리단가 : 14,355원/kg -처 리 량 : 1,066kg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500	8,378	-	4,122	
2024	20,000	19,243	-	757	
2025	20,000	15,303	-	4,69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양승민	담당자	행정9급 고희섭	전화	2769
-----	-------	------------	-----	----------	----	------

청소행정 주민참여 홍보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홍보물 15,000매, 현수막 200매, 신고포상금 지급 150건		
사업목적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 등 시민참여 유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①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 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가진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660	23,560	23,560	0	0	0	21,460	-2,1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660	23,560	23,560				21,460	-2,1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1,460	
청소행정 주민참여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홍보물 등 제작비	= 14,000	
	201-02 공공운영비	· 무단투기 감시장비 유지관리비 : 200,000원*10회 · 안내문 등 우편발송 : 330,000원*12월	= 2,000 = 3,960	
	301-14 기타보상금	· 폐기물 불법투기 등 신고포상금 : 10,000원*150건	= 1,500	

□ 예산요구 사유

- 무단투기 예방 및 재활용 정책의 지속적 홍보, 계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
- 무단투기 감시장비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편성
-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용을 통한 무단투기 방지

□ 예산증감 사유

- 재정여건 반영에 따른 홍보물 등 제작비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 제작 및 설치,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배포, 이동식 감시장비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무관리비 : 홍보물 및 현수막 등 제작(15,951천원) · 공공운영비 : 무단투기 감시장비(이동식CCTV) 유지관리 및 우편발송 비용 납부(5,629천원) · 기타보상금 :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100건 (2,050천원)
2024	· 사무관리비 : 홍보물 및 현수막 등 제작(14,170천원) · 공공운영비 : 무단투기 감시장비(이동식CCTV) 유지관리 및 우편발송 비용 납부(5,430천원) · 기타보상금 :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102건 (1,330천원)
2025	· 사무관리비 : 홍보물 및 현수막 등 제작(10,318천원) · 공공운영비 : 무단투기 감시장비(이동식CCTV) 유지관리 및 우편발송 비용 납부(2,142천원) · 기타보상금 :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71건 (8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960	23,630	-	1,330	
2024	24,660	20,930	-	3,730	
2025	23,560	13,260	-	10,3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양승민	담당자	행정9급 김군후 행정9급 고흥섭	전화	1936 2769
-----	-------	------------	-----	----------------------	----	--------------

클린기동대 운영

사업기간	2026. 1.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도단속, 동물사체 처리, 방치폐기물 처리 등 약 10,000건		
사업목적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취약지역 방치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한 클린기동대 운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2항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120	67,355	66,255	0	0	1,100	20,255	-47,100	
국비		10,000	10,000				0	-10,000	
도비		0						0	
시비	18,120	57,355	56,255			1,100	20,255	-37,100	
기타		0						0	자부담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255	
클린기동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정수기 임대료 : 50,000원*12월 = 600 · 청소장비 등 재료 구입비 : 2,000,000원 = 2,000 · 사무용품 구입비 : 1,000,000원 = 1,000 ·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 9,000원*3명*365일 = 9,855 · 피복비 : 140,000원*10명 = 1,400		
	201-02 공공운영비	· 폐기물 민원처리용 휴대폰 통신요금 : 75,000원*6대*12월 = 5,400		

예산요구 사유

- 무단투기의 지속적 점검 및 단속을 위하여 단속반(클린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피복비 등 지원
- 폐기물 관련 단속 및 민원 처리를 위한 휴대폰 통신요금 지급

예산증감 사유

- '25년 노후차량 교체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미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클린기동대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사무관리비 : 클린기동대 운영비(12,204천원), 단속용 피복비(2,393천원) - 공공운영비 : 단속 민원처리용 통신비(2,567천원)
2024	- 사무관리비 : 클린기동대 운영비(10,980천원), 단속용 피복비(2,400천원) - 공공운영비 : 단속 민원처리용 통신비 등(4,526천원)
2025	- 사무관리비 : 클린기동대 운영비(7,206천원), 단속용 피복비(1,400천원) - 공공운영비 : 단속 민원처리용 통신비(2,565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클린기동대 공용차량 구입(44,29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120	17,164	-	956	
2024	19,620	17,906	-	1,714	
2025	67,355	55,461	-	11,89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양승민	담당자	행정9급 고희섭	전화	2769
-----	-------	------------	-----	----------	----	------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처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방치폐기물 처리			
사업목적		읍면동에 적체된 방치폐기물 처리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D)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5,000	22,500	22,500	0	20,000	-2,5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000	22,500	22,500		20,000	-2,5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처리	201-01 사무관리비	·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처리비 - 수거차량임차비(집게차) : 500,000원*20회 -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 1,000,000원*10회	= 10,000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공공용지 상의 원인자 확인이 불가능한 무단투기 방치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치 폐기물 수거차량 임대료, 처리비 등 지출 비용
- 예산증감 사유
- 적극적인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 강화로 방치폐기물량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2. 방치폐기물 수거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집행액 : 34,034천원 - 처리량: 190.44톤
2024	- 집행액 : 5,310천원 - 처리량 : 36.55톤
2025	- 집행액 : 2,000천원 - 처리량 : 23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000	34,034	-	5,966	
2024	15,000	5,310	-	9,690	
2024	22,500	2,000	-	20,5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양승민	담당자	행정9급 김군후	전화	1936
-----	-------	------------	-----	----------	----	------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8명		
사업목적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 및 무단투기 행위 감소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4,000	280,000	280,000	0	0	0	260,000	-20,000	
국비	152,000	140,000	140,000				130,000	-10,000	
도비	76,000	70,000	70,000				65,000	-5,000	
시비	76,000	70,000	70,000				65,000	-5,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60,000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보수 : 2,500,000원*8명*8월 = 160,000 · 4대 보험료 : 164,400,000원*14% = 23,016 · 명절휴가비 : 550,000원*8명 = 4,400 · 출장비 : 220,000원*8명*8월 = 14,080 · 피복비 : 200,000원*8명 = 1,600		
	201-01 사무관리비	· 운영경비 : 52,404,000원 = 52,404		
	201-02 공공운영비	·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 : 100,000*5대*8월 = · 단체 상해보험 가입료 : 500,000원 = 4,500		

□ 예산요구 사유

-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채용·활용하여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무단투기 감시 CCTV 확인 및 계도를 시행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보조예산 감소에 따른 채용 인력 감원(산출기준 인원 : 9명 ⇒ 8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승인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계획 보고
 - 2026. 02. :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모집 공고 및 면접 실시
 - 2026. 03. : 감시원 채용 및 운영
 - 2026. 10. : 감시원 운영 종료
 - 2026. 12. :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감시원 운영비 : 376,296천원 집행 - 무단투기 관련 과태료 부과건수 : 438건 - 무단투기 관련 계도 및 홍보물배부 : 10,109장
2024	- 감시원 운영비 : 279,321천원 집행 - 무단투기 관련 과태료 부과건수 : 537건 - 무단투기 관련 계도 및 홍보물배부 22,353장
2025	- 감시원 운영비 : 249,208천원 집행 - 무단투기 관련 과태료 부과건수 : 647건 - 무단투기 관련 계도 및 홍보물배부 7,566장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13,280	376,296	-	36,984	
2024	304,000	279,321	-	24,679	
2025	280,000	249,208	-	30,79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양승민	담당자	행정9급 고희섭	전화	2769
-----	-------	------------	-----	----------	----	------

김포시 자원화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김포한강4로 419-37
사업규모	소각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수영장 등)		
사업목적	한강신도시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김포시 자원화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
	시장은 공중 보관시설의 폐기물을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917,872	8,873,611	8,824,954	31,900	162,480	-145,723	9,278,278	404,667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917,872	8,873,611	8,824,954	31,900	162,480	-145,723	9,278,278	404,667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278,278	
김포시 자원화센터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자원화센터 인건비 : 91,289,000원 · 자원화센터 운영비 : 7,518,384,000원 · 스포츠센터 인건비 : 670,380,000원 · 스포츠센터 운영비 : 911,885,000원	= 9,191,938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자원화센터 자본적지출 : 44,920,000원 · 스포츠센터 자본적지출 : 41,420,000원	= 86,340	

□ 예산요구 사유

- 한강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자원화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시설 (84톤/일), 음식물처리시설(40톤/일)] 운영
- 김포시 자원화센터 내 주민편익시설(김포한강스포츠센터)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시설 노후화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 증액
- 자재비 및 인건비 등 상승으로 인해 각종 검사 수수료, 수리 비용 및 공공요금 등 상승
- 각종 기구들의 내구연한 초과하여 교체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2. : 대행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생활폐기물 처리량 · 소각시설 : 24,022.96톤 · 음식물처리시설 : 7,442.30톤 - 수익금 · 소각시설 : 1,026,164천원(여열 및 고철판매) · 주민편익시설 : 1,121,849천원(수영장 등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요금)
2024	- 생활폐기물 처리량 · 소각시설: 23,508.53톤 · 음식물처리시설 : 8,332.53톤 - 수익금 · 소각시설 : 1,064,422천원(여열 및 고철판매) · 주민편익시설: 1,131,302천원(수영장 등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요금)
2025	- 생활폐기물 처리량 · 소각시설: 16,259.36톤 · 음식물처리시설 : 5,956.67톤 - 수익금 · 소각시설 : 802,437천원(여열 및 고철판매) · 주민편익시설: 703,512천원(수영장 등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요금)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441,014	8,079,372	-	361,642	
2024	7,917,872	7,509,639	-	408,233	
2025	8,873,611	8,873,611	-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하재현	담당자	공업8급 송진우	전화	2772
-----	-------	------------	-----	----------	----	------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파주시 방촌로 1213-52
사업규모	김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10,000톤/년)		
사업목적	우리시와 파주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소각시설인 ‘파주환경관리센터’를 운영하여 김포시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처리용량 확보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해당조례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광역화건설사업 협약서	제8조
	사업비 부담액 결정은 추후 실시설계 완료 후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하되 부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운영규약서)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800,000	2,800,000	1,700,000	0	0	1,100,000	1,700,000	-1,1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800,000	2,800,000	1,700,000			1,100,000	1,700,000	-1,10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00,000	
파주 환경관리센터 운영	308-07 자치단체간 부담금	· 비정산비(김포40 : 파주60) · 정산비(반입폐기물 비율에 따라 정산)	= 1,700,000	

□ 예산요구 사유

- 우리시 가연성 생활폐기물 일일 약 40톤씩 ‘파주환경관리센터’로 반입 처리함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지급(정산비)
-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파주환경관리센터’ 공동운영에 따라 파주시로 납부하여야 하는 우리시 부담금 지급(비정산비)

□ 예산증감 사유

-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운영규약서」에 따라 분기별 납부하고자 작년 대비 예산액 감소 및 추후 추경에 반영 요청 예정
- ※ (운영비) 제3조 2항의 다 : 납부시기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1999.02.01. :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건설 공사 착공
 - 2000.07.21. :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광역화 건설사업 협약서 체결
 - 2003.05.22. :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준공
 - 2016.07.11. ~ 현재 : 김포시 생활폐기물 반입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년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비 납부 - 폐기물 처리량 : 8,069.87톤(1월~12월), 일평균 26톤(반입일 기준) - 운영비 부담금 : 2,996,146,000원 · 비정산비 : 1,809,940,000원(김포40%, 파주60%) · 정 산 비 : 1,186,206,000원[김포18.01%, 파주81.99%] - 주민지원기금 : 300,172,000원[김포18.01%, 파주81.99%] -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권구매 : 63,924,000원[김포17.45%, 파주82.55%] - 환경관리센터 시설개선 사업비 : 70,535,000원[김포18.01%, 파주81.99%]
2024	- 2024년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비 납부 - 폐기물 처리량 : 6,880.39톤(1월~12월), 일평균 24톤(반입일 기준) - 운영비 부담금 : 2,918,004,000원 · 비정산비 : 1,888,884,000원(김포40%, 파주60%) · 정 산 비 : 1,029,120,000원[김포14.92%, 파주85.08%] - 주민지원기금 : 260,051,000원[김포14.92%, 파주85.08%] -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권구매 : 22,248,000원[김포18.07%, 파주81.99%] - 환경관리센터 시설개선 사업비 : 97,615,000원[김포14.92%, 파주85.08%]
2025	- 폐기물 처리량 : 9,146.10톤(1월~10월) 일 평균 36톤(반입일 기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00,000	2,800,000	-	-	
2024	2,800,000	2,800,000	-	-	
2025	2,800,000	2,800,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하재현	담당자	환경8급 이해정	전화	2946
-----	-------	------------	-----	----------	----	------

자동집하시설(크린넷)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한강1집하장(김포한강4로 419-37) 한강2집하장(김포한강11로 182) 장기집하장(김포한강2로 120) 양곡집하장(김포한강5로 372)
사업규모	자동집하시설 4개소(한강1, 한강2, 장기, 양곡), 관로 L = 73.75km, 투입구 821개		
사업목적	- 생활폐기물을 자동집하시설로 수거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자동집하시설을 위탁운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422,000	6,390,505	6,990,505	0	0	-600,000	6,700,000	309,49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422,000	6,390,505	6,990,505			-600,000	6,700,000	309,49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700,000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 자동집하시설 전기요금 : 61,250,000원*4개소*12월 · 자동집하시설 수도요금 : 1,250,000원*4개소*12월	= 2,940,000 = 60,000	
	307-05 민간위탁금	·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 : 2,800,000,000원	= 2,800,000	
	401-01 시설비	· 자동집하시설 시설유지비 : 900,000,000원	= 900,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처리를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4개소의 자동집하시설을 위탁운영하기 위함

□ 예산증감 사유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및 기타 제반 적용비율 상승 등에 따라 민간위탁금 증가
- 자동집하시설('08 ~ '13년 준공) 10년 이상 운영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물 유지보수비 증가
- 한강1집하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변압기 용량 증설 공사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12. :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운영 실시
전기·수도 사용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시설유지보수 집행
 - 2026.01. ~ 11. : 한강1집하장 변압기 교체 공사 추진
 - 2026.01. ~ 09. : 장기·양곡 냉각코일 교체 공사 추진
 - 2026.03. ~ 10. : 자동집하시설 탈취설비 활성탄 교체 추진
 - 2026.12. :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3차년도 계약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환경개선 및 악취방지를 위한 자동집하시설 조경유지관리 공사, 양곡집하장 탈취설비 개선공사 등 실시 - 자동집하시설 대수선 공사 - 자동집하시설 쓰레기 집하 현황 · 장기집하장 : 일반 5,019톤 · 양곡집하장 : 일반 1,493톤 · 한강1집하장: 일반 7,515톤 · 한강2집하장: 일반 6,929톤
2024	- 한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대수선 공사 및 이송관로 교체 공사 실시 - 악취 저감을 위한 한강2집하장 탈취설비 개선공사 - 2025년도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원가산정 용역 - 자동집하시설 쓰레기 집하 현황 · 장기집하장 : 일반 4,643톤 · 양곡집하장 : 일반 1,410톤 · 한강1집하장: 일반 8,521톤 · 한강2집하장: 일반 6,134톤
2025	- 한강2 자동집하시설 대수선 공사 및 이송관로 교체 공사 등 실시 - 악취 저감을 위한 장기집하장 탈취설비 개선공사 - 자동집하시설 쓰레기 집하 현황 · 장기집하장 : 일반 3,910톤 · 양곡집하장 : 일반 1,402톤 · 한강1집하장: 일반 6,131톤 · 한강2집하장: 일반 5,317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956,000	5,599,859	87,327	268,814	
2024	6,509,327	5,915,007	-	594,320	
2025	6,390,505	4,744,301	-	1,646,204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자원순환과	사업규모	자동집하시설 4개소, 관로 L = 73.75km, 투입구 821개	본예산 요구액 (천원)	6,7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자동집하시설(크린넷) 운영	사업위치	김포한강4로 419-37 외 3개소		

위치도

김포 한강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현황도

1 양곡집하장

- 위 치 : 김포한강5로 372
- 세 대 수 : 6,055세대
- 관로길이 : 9.215km
- 투 입 구 : 215(171)개
- 구청당서 : 장기포타구동서

2 한강1집하장

- 위 치 : 김포한강4로 419-37
- 세 대 수 : 32,181세대
- 관로길이 : 20.54km
- 투 입 구 : 1160(124)개
- 구청당서 : 광안구동서

3 장기집하장

- 위 치 : 김포한강2로 120
- 세 대 수 : 16,908세대
- 관로길이 : 20.04km
- 투 입 구 : 531(309)개
- 구청당서 : 장기포타구동서

4 한강2집하장

- 위 치 : 김포한강11로 182
- 세 대 수 : 22,947세대
- 관로길이 : 23.95km
- 투 입 구 : 846(229)개
- 구청당서 : 광안구동서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하재현	담당자	환경7급 소지현 환경8급 이해정	전화	2778 2946
-----	-------	------------	-----	----------------------	----	--------------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폐기물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		
사업목적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무단투기 폐기물 적정처리를 통한 깨끗한 도시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5,300	36,200	36,200	0	0	0	36,2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5,300	36,200	36,200				36,2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6,200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무단투기 등 부적정 폐기물 처리비 : 2,000,000원*7회 ·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 : 1,500,000원*10회 · 지도점검 관련 소모품 구입 : 1,500,000원 · 지도점검 관련 확인서 등 제작 : 500,000원	= 14,000 = 15,000 = 1,500 = 500	
	201-02 공공운영비	· 배출·처리업체 안내문 우편 발송 : 500원*2,000개소*4회 · 폐기물 단속 민원처리용 통신비 : 50,000원*2대*12월	= 4,000 = 1,200	

□ 예산요구 사유

- 취약지역에 무단투기 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장 폐기물(일반, 건설, 지정)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
-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순환골재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제품 성토로 인한 민원 증가로 시료 채취 및 분석 요구 급증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지도점검 단속반 물품 구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확인서 미제출에 따른 조치 독촉 안내
 - 2026.02. 폐기물 불법처리 금지 안내 및 현수막 제작
 - 2026.02.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안내
 - 2026.03. 폐기물처리(배출) 실적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독촉 안내
 - 2026.06. 상반기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 2026.11. 방치폐기물 이행보증보험 가입 안내
 - 2026.12. 하반기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지도점검 용품 제작 및 물품 구입 6건 -사업장폐기물 배출 관련 홍보 4건 -폐기물 단속 민원처리용 통신비 납부 12건 -방치폐기물 처리 3건 -토양오염 관련 시료 채취 및 분석 의뢰 6건
2024	-지도점검 용품 제작 및 물품 구입 4건 -사업장폐기물 배출 관련 홍보 4건 -폐기물 단속 민원처리용 통신비 납부 12건 -토양오염 관련 시료 채취 및 분석 의뢰 13건
2025	-지도점검 용품 제작 및 물품 구입 4건 -사업장폐기물 배출 관련 홍보 2건 -폐기물 단속 민원처리용 통신비 납부 10건 -방치폐기물 처리 2건 -토양오염 관련 시료 채취 및 분석 의뢰 2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6,320	25,957	-	363	
2024	25,300	24,360	-	940	
2025	36,200	19,583	-	16,61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지도팀장 이경준	담당자	환경7급 김윤수	전화	2754
-----	-------	------------	-----	----------	----	------

환경민원 비상근무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환경민원 비상근무자 28명		
사업목적	환경민원 비상근무자 급식비 지급을 통한 비상근무 효율성 증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19조제3항 [별표3]
		제19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③ 수시지도·점검은 별표3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해당 년도 정기지도점검계획 횟수의 3분의 1이상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별표3] 수시 지도·점검 기준 1. 가뭄, 장마철, 추석·설 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2. 환경오염관련 민원 다발지역, 오염의심지역 및 취약지역 3.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 (생략)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920	2,160	2,160	0	0	0	2,16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920	2,160	2,160				2,16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160	
환경민원 비상근무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환경민원 비상근무 급식비 : 9,000원*2명*10일*12월 =	2,160	

□ 예산요구 사유

- 환경민원 비상근무의 원활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근무자 특근매식비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2. : 환경비상근무자 특근매식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피복비 : 6,340천원 - 급식비 : 1,553천원
2024	- 급식비 : 1,571천원
2025	- 급식비 : 938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160	7,893	-	267	
2024	1,920	1,571	-	349	
2025	2,160	938	-	1,22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양승민	담당자	행정7급 황은경	전화	2767
-----	-------	------------	-----	----------	----	------

재활용수집소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금포로 1119 (김포시 재활용수집소)
사업규모	7,106톤 (19.46톤/일, 2024년 기준)		
사업목적	김포시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 및 재활용수집소의 안정적인 운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300,529	2,628,185	2,456,316	0	171,869	0	2,625,518	-2,667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300,529	2,628,185	2,456,316		171,869		2,625,518	-2,667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625,518	
재활용수집소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재활용수집소 인건비 : 1,513,547,000원 · 재활용수집소 운영비 : 1,013,171,000원	= 2,526,718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 자본적지출 : 3,000,000원	= 3,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재활용수집소 지게차 구입 : 95,800,000원	= 95,800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재활용수집소 운영
- 재활용수집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기간제근로자 46명), 공공운영비 및 시설 유지비
- 재활용품 선별 시설 노후화와 현장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보수공사
- 주요 장비인 지게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 예산증감 사유

- 재활용품 수선별 컨베이어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컨베이어벨트 교체
-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름철 온열질환과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하여 파봉인력 대기실 전력량 증설 공사(5kw→10kw)와 압축기 근무 인력 대기실 확장공사(7.2㎡→14.4㎡)로 근무환경 개선
- 재활용품 보관에 따른 침출수 발생 우려로 오염 방지를 위하여 우수관 및 오수관 보수 공사
- 종량제봉투 공급처 물류관리를 위한 PDA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및 부품수급 차질에 따른 PDA 2대 구입
- 파봉 작업방식의 변경(수거차에서 1차 선별→통합 파봉), 재활용량 지속 증가, 기존 지게차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에 대비하고자 지게차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함
- 재활용수집소 지게차 현황

취득일	내구연한	사용연수	사용위치
2017. 6. 26.	9년	9년	김포시 재활용수집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9. ~ 2025. 11 : 재활용수집소 연간 운영 계획 수립
 - 2026. 01. ~ 2026. 12 : 대행사업비 교부 및 재활용수집소 운영
 - 2026. 12. :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수거량 : 7,019톤 - 판매량 : 5,409톤 - 판매액 : 1,266,686천원
2024	- 수거량 : 7,106톤 - 판매량 : 5,458톤 - 판매액 : 1,198,698천원
2025	- 수거량 : 5,237톤 - 판매량 : 4,555톤 - 판매액 : 1,088,865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64,338	1,966,016	-	98,322	
2024	2,300,529	2,192,179	-	108,350	
2025	2,628,185	2,470,243	-	157,94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박장호	담당자	행정7급 황윤희	전화	2776
-----	-------	-------------	-----	----------	----	------

김포 재활용적환장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감암로 123(김포재활용적환장)
사업규모	재활용적환장 1,506㎡		
사업목적	재활용적환장 내 재활용품 보관시설 운영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유지관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1,200	26,000	26,000	0	0	0	26,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1,200	26,000	26,000				26,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6,000	
김포 재활용적환장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 1,000,000원*2대*1회	= 2,000	
	201-02 공공운영비	· 전기요금 : 1,000,000원*12월 = 12,000,000원 · 상하수도 요금 : 700,000원*12월 = 8,400,000원 · 시설장비 유지비 : 300,000원*12월 = 3,600,000원	= 24,000	

□ 예산요구 사유

- 재활용적환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비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매월 공공요금 지출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무관리비 : 무인경비시스템 외 1(1,968천원) - 공공운영비 :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26,279천원) - 자산취득비 : 냉난방기 등(2,079천원)
2024	- 사무관리비 : 무인경비시스템 외 1(1,968천원) - 공공운영비 :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14,390천원)
2025	- 사무관리비 : 무인경비시스템 외 1(1,918천원) - 공공운영비 :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13,451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600	30,326	-	274	
2024	21,200	16,358	-	4,842	
2025	26,000	15,369	-	10,63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박장호	담당자	행정7급 황윤희	전화	2776
-----	-------	-------------	-----	----------	----	------

폐자원 교환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교환용 새 건전지 120,000개, 교환사업용 화장지 32,700롤 등		
사업목적	무분별하게 생활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자원의 분리배출 및 회수 활성화 유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3항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6,000	42,000	42,000	0	0	0	42,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6,000	42,000	42,000				42,000	0	
기타		0						0	자부담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2,000	
폐자원 교환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폐건전지 교환사업용 알카라인 건전지 구매 : 250원*120,000개 = · 폐종이팩 교환사업용 화장지(27m, 30롤) 구매 : 11,000원*1,090팩 =	30,000 12,000	

예산요구 사유

- 일반폐기물과 혼합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자원(폐건전지, 종이팩류)을 교환물품(새건전지, 화장지)으로 교환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재활용 참여를 유도하고 폐자원 수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2026년 폐자원 교환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6. 01 ~ 2026. 12 : 폐자원 교환사업 교환물품(건전지, 화장지 등) 구입 및 읍·면·동 배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2년 폐건전지 교환사업용 재고 건전지 배부 · 알카라인 건전지(AA형) 49,296개 배부
2024	- 폐건전지 교환용 새건전지 구매 : 19,973천원 · 알카라인 건전지 AA형 46,600개, AAA형 41,700개 구매 - 화장지 구매 대금 지급(6,900롤) : 2,277천원 - 기타 물품 구입(캠페인 진행용 물품, 홍보물 등) : 6,652천원
2025	- 폐건전지 교환사업용 새건전지 구매 : 19,762천원 · 알카라인 건전지 AA형 59,760개, AAA형 34,560개 구매 - 화장지 구매 대금 지급(9,330롤) : 3,592천원 - 기타 물품 구입(캠페인 진행용 물품, 홍보물 등) : 7,71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36,000	28,902	-	7,098	
2025	42,000	31,064	-	10,936	10.31.기준 집행현황

※ 2023년 : 코로나19 무상배부 종량제봉투 잔여분 봉투 사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박장호	담당자	행정7급 황윤희	전화	2776
-----	-------	-------------	-----	----------	----	------

재활용가능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운영·관리

(※2025년 세부사업명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운영·관리'에서 변경)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재활용가능폐기물 거점배출시설 CCTV 추가설치 4대, 재활용동네마당 CCTV 전기설비 보수 2개소 등		
사업목적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 체계 구축 및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3항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2호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000	9,100	9,100	0	0	0	16,300	7,2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000	9,100	9,100				16,300	7,2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6,300	
재활용가능 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거점배출시설 유지관리비 : 500,000원*17개소	= 8,500	
	206-01 재료비	· 재활용 분리수거대 구입 : 300,000원*6개	= 1,800	
	401-01 시설비	· CCTV 추가 설치 : 1,500,000원*4대	= 6,000	

□ 예산요구 사유

- 기 설치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의 설비 고장·파손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설비보완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설치하여 폐기물의 회수율 및 재활용률 증가 도모
- 쓰레기 무단투기 빈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민원발생 억제 및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 유도

□ 예산증감 사유

- 기 설치된 거점배출시설(재활용동네마당 등)의 시설 유지보수 및 재활용동네마당 2개소의 CCTV 전원공급체계를 기존의 야간녹화방식(가로등 전기사용)에서 24시간 상시 녹화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정비하고자 함
- 기 운영중인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재활용동네마당 등)의 사각지대에 CCTV 4대 추가 설치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반영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2025.11. 반영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6.: CCTV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설비 보수 진행
 - 2026. 1. ~ 2026. 6.: 폐기물 무단투기 민원 다발 거점배출시설 CCTV 추가설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폐식용유 수거함 13개 구매 : 3,398천원 - 재활용 분리수거대 전용비닐 28,800매 구매 : 7,382천원 - 생활폐기물 수거함 9개 구매 : 2,172천원
2024	- 재활용 분리수거대(5구형) 13개 구입 : 3,840천원 - 다회용컵 전용 분리수거함 3개 제작 : 1,949천원 - 투명페트병 전용비닐 제작(8,400매) : 2,153천원
2025	- 재활용동네마당 모니터 수리 3개소 : 561천원 - 재활용품 및 투명페트병 수거전용봉투 18,000장 주문제작 : 4,615천원 - 재활용동네마당 CCTV 카메라 추가 구입 2대 : 1,502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000	14,941	-	59	
2024	8,000	7,942	-	58	
2025	9,100	6,678	-	2,422	10. 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박장호	담당자	행정8급 이지원	전화	2773
-----	-------	-------------	-----	----------	----	------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540톤/년		
사업목적	영농 후 발생되어 불법소각 및 매립되는 농촌폐비닐의 수거를 촉진하여 재활용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 제2항
법령 위임규정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5,720	105,720	58,146	0	0	47,574	57,089	-48,631	
국비		0						0	
도비	21,144	31,716	17,443			14,273	17,126	-14,590	도비30%
시비	84,576	74,004	40,703			33,301	39,963	-34,041	시비7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7,089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301-14 기타보상금	·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 검정비닐(하이덴형HDPE) kg당 100원, 흰색비닐(로덴형LDPE) kg당 140원 단가 적용 - 검정비닐 : 462,775kg × 100원 = 46,277,500원 - 흰색비닐: 77,225kg × 140원 = 10,811,500원 - 합 계 : 540,000kg, 57,089,000원	= 57,089	

□ 예산요구 사유

- 영농 후 발생하는 농촌폐비닐의 불법소각, 방치 및 매립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폐비닐의 수거를 촉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보조예산 감소에 따른 감액 [사업량 축소: 550톤/년(25년 본예산) ⇒ 540톤/년(26년 본예산)]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2026년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예산확보
 - 2026. 01. ~ 2026. 12. :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매월 지급
 - 2026. 03. : 봄철 농촌폐비닐 집중수거 실시
 - 2026. 11. : 가을철 농촌폐비닐 집중수거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촌폐비닐(하이덴형HDPE검정 · 로덴형LDPE흰색) 수거량 1,036.6톤
2024	- 농촌폐비닐(하이덴형HDPE검정 · 로덴형LDPE흰색) 수거량 1,035.8톤
2025	- 농촌폐비닐(하이덴형HDPE검정 · 로덴형LDPE흰색) 수거량 625.9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5,720	105,720	-	-	
2024	105,720	105,716	-	4	
2025	105,720	63,907	-	41,81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박장호	담당자	행정8급 이지원	전화	2773
-----	-------	-------------	-----	----------	----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000톤/년		
사업목적	영농 후 발생되어 불법소각 및 매립되는 농촌폐비닐의 수거를 촉진하여 재활용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 제1항, 제2항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D)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0,000	20,000	20,000	0	20,000	0	
국비	20,000	20,000	20,000		20,000	0	국비 10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301-14 기타보상금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 kg당 20원 - 1,000,000kg × 20원 = 20,000,000원	= 20,000	

예산요구 사유

- 영농 후 발생하는 농촌폐비닐의 불법소각, 방치 및 매립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폐비닐의 수거를 촉진하여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비닐의 순환체계 구축
-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도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수거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촌폐비닐 수거 촉진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2026년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예산확보
 - 2026. 01. ~ 2026. 12.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매월 지급
 - 2026. 03. : 봄철 농촌폐비닐 집중수거 실시
 - 2026. 11. : 가을철 농촌폐비닐 집중수거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촌폐비닐(하이덴형HDPE검정 · 로덴형LDPE흰색) 수거량 1,036.6톤
2024	- 농촌폐비닐(하이덴형HDPE검정 · 로덴형LDPE흰색) 수거량 1,035.8톤
2025	- 농촌폐비닐(하이덴형HDPE검정 · 로덴형LDPE흰색) 수거량 625.9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00	20,000	-	-	
2024	20,000	20,000	-	-	
2025	20,000	12,524	-	7,47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박장호	담당자	행정8급 이지원	전화	2773
-----	-------	-------------	-----	----------	----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배달어플 주문 및 관내 축제·행사 시 다회용기 60,000건(약 204,000개) 사용 지원		
사업목적	1회용 폐기물 발생량 절감 및 다회용기 사용 체계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 제1항, 제2항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 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10,000	300,000	300,000	0	0	0	300,000	0	
국비	155,000	150,000	150,000				150,000	0	50%
도비	46,500	45,000	45,000				45,000	0	15%
시비	108,500	105,000	105,000				105,000	0	3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0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다회용기 이용 60,000건*5,000원/건 - 다회용기 개발 및 제조, 시스템 개발, 물류, 임차 등 : 134,000,000원 = 134,000 - 소비자 인센티브 및 홍보비 : 54,600,000원 = 54,600 - 운영비(인건비,소모품 등) : 81,400,000원 = 81,400 - 부가세 : 30,000,000원 = 30,000		

□ 예산요구 사유

- 배달주문 시 1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다회용기 사용 가맹점과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관내 축제 및 행사 시에도 1회용품 없는 행사를 추진하여 다회용기 사용 체계 구축
- 다회용기의 공급-회수-세척-재사용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반 비용 필요
 - 주문시스템 개발 및 제조, 소모품 구매, 시스템 개발비(다회용기 반납신청 및 재고관리), 물류비(공급 및 회수), 세척 인건비, 임차비(세척 센터, 창고 임차비, 차량 렌탈비 등), 홍보비(배달앱 쿠폰, 홍보물품 제작) 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2025.9.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2026년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 2025. 12. : 2026~2027년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6. 1.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결정, 위수탁계약서 체결
 - 2026. 2. : 사업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주문건수: 45,749건, 가맹점수 197개소, 지역행사 9건
2024	- 주문건수: 57,031건 , 가맹점 141개소, 지역행사 5건
2025	- 주문건수: 31,129건, 가맹점 71개소, 지역행사 5건, 김포FC홈구장 4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00	265,986	0	34,014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8-13
2024	310,000	308,498	0	1,502	
2025	300,000	150,000	0	150,000	민간위탁금 307-05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박장호	담당자	행정7급 이한나	전화	2777
-----	-------	-------------	-----	----------	----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선정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26년 상반기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1회)		
사업목적	김포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0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 제1항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성과평가, 재계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000	1,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1,000	1,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선정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김포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 심의위원 수당 - 250,000원*4명*1회 = 1,000,000원	= 1,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선정위원회 개최를 위한 신규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2 : 수탁자 선정위원회 개최
 - 2026. 3 : 수탁자 선정 및 김포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개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박장호	담당자	행정7급 이한나	전화	2777
-----	-------	-------------	-----	----------	----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음식물류 폐기물 36톤/일		
사업목적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3항
		③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대행계약은 시장과 대행 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대행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100,000	1,900,000	2,100,000	0	0	-200,000	2,115,540	215,54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100,000	1,900,000	2,100,000			-200,000	2,115,540	215,54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115,540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307-05 민간위탁금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 : 161,000원*36톤/일*365일 = 2,115,540	2,115,540	

□ 예산요구 사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공 처리시설 처리량 외의 잔여량을 처리하고자 민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사업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재료비, 경비, 노무비 등의 증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단가 상승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2025.10.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내역 및 향후 계획
 - 2025. 10. :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계획 수립 및 민간 위탁 동의안 의회 의결
 - 2025. 11.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계약심사 의뢰
 - 2025. 11. ~ 2025. 12.: 공개입찰 및 업체 선정
 - 2026. 1. ~ 12. : 민간 위탁 처리 사업 추진
 - 2026. 12. : 민간 위탁 처리 정산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계약금액 : 136,000원/톤 · 처 리 량 : 14,005톤/년(38.4톤/일) · 계약방법 : 수의계약(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2024	· 계약금액 : 135,200원/톤 · 처 리 량 : 12,406톤/년(33.9톤/일) · 계약방법 : 수의계약(공개입찰, 2회 유찰)
2025	· 계약금액 : 141,200원/톤 · 처 리 량 : 10,507톤/년(34.6톤/일) ※ 1~10월 까지 처리량 · 계약방법 : 수의계약(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72,744	1,904,646	-	68,098	
2024	2,100,000	1,677,260	-	422,740	
2025	1,900,000	1,484,565	-	415,43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박장호	담당자	환경7급 이은지	전화	1937
-----	-------	-------------	-----	----------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 평가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26년 상반기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12명(당연직 4명, 위촉직 8명)		
사업목적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성과 평가 추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제1항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40	500	500	0	0	0	5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40	500	500				5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 평가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 50,000원*8명 · 성과평가보고서 제작비 : 100,000원	= 400 = 100	

□ 예산요구 사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의거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 성과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민간 위촉위원 8명을 포함하여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0-190호)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09. :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2022~2026)
 - 2026. 02. :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 평가 보고서 제작
 - 2026. 03. :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 평가위원회 개최
 - 2026. 05. : 성과 평가 결과 보고(→경기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2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 평가위원회 개최 · 민간 평가위원 전원 참여(8명), 서면심의 추진
2024	· 2023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 평가위원회 개최 · 민간 평가위원 전원 참여(8명), 서면심의 추진
2025	· 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 평가위원회 개최 · 민간 평가위원 전원 참여(8명), 서면심의 추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0	240	-	0	
2024	340	340	-	0	
2025	500	489	-	1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박장호	담당자	환경7급 이은지	전화	1937
-----	-------	-------------	-----	----------	----	------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65대		
사업목적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유도를 통한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5항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제2호
		③시장은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17,000	117,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0	0				117,000	117,000	
기타		0					13,000	13,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7,000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구매 등 설치 보조금 : 1,800,000원 * 65대 = ※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구입(설치) 비용(2,000천원/대) : 보조금(90%) 1,800,000원/대 + 자부담(10%) 200,000원/대	117,000	

□ 예산요구 사유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21.4, 환경부)으로 RFID 방식을 우선 권장
-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고히 하여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속적인 발생 억제를 위해 RFID 종량제기기 구입·설치비의 90%(최대 180만원)를 지원하고자 함
- 신도시 내 생활폐기물(일반 및 음식물)이 크린넷의 동일한 관로로 수거됨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 해소와 소각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RFID 종량제기기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유도

□ 예산증감 사유

○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반영예정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2025.11. 반영예정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6. 1. ~ 2. : 사업 세부 계획 수립
 - 2026. 3. ~ 5. : 공동주택 대상 홍보 및 수요조사 실시
 - 2026. 6. ~ 7. : RFID 종량제기기 설치 지원 사업 공고 및 접수
 - 2026. 8.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결과 발표
 - 2026. 9. ~ 12. :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정산(설치 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
2024	-	-	-	-	-
2025	-	-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박장호	담당자	환경7급 이은지	전화	1937
-----	-------	-------------	-----	----------	----	------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100개		
사업목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로 인한 악취 발생 및 해충 번식을 막아 청결하고 위생적인 주민생활 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③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대행계약은 시장과 대행 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대행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000	6,000	6,000	0	0	0	6,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000	6,000	6,000			0	6,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	206-01 재료비	·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 60,000원/개*100개 =	6,000	

□ 예산요구 사유

-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설치를 통해 관리자를 명확히하여 단독주택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수거하고자 함
-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단배출과 야생동물에 의한 종량제봉투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악취 민원을 저감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6. 01. :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설치 계획 보고 및 구입

- 2026. 01. ~ 12. : 읍면동 신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거 용기 배부(연중 수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 : 11,937천원(용기 205개)
2024	·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및 부품 구입 : 4,200천원(용기 45개, 뚜껑 30개, 바퀴 200개, 축 100개) ·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 : 1,800천원(용기 30개)
2025	·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부품 구입 : 4,200천원(용기 55개, 뚜껑 30개, 바퀴 100개, 축 50개) ·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부품 구입 : 1,800천원(용기 20개, 뚜껑 40개, 바퀴 20개, 축 30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000	11,937	-	63	
2024	6,000	6,000	-	0	
2025	6,000	6,000	-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박장호	담당자	환경7급 이은지	전화	1937
-----	-------	-------------	-----	----------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연구용역

사업기간	2026. 4. 1. ~ 2026. 9. 30.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사업목적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5개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제1항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20,000	2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0	0				20,000	2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연구용역	207-01 연구용역비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연구용역 : 20,000,000원	= 20,000	

□ 예산요구 사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및 동법 제16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감량 계획, 적정 처리 계획 등 '27년 ~ '31년(5개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고 매년 그 성과를 평가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6. 4. ~ 5. :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발주 의뢰
 - 2026. 6. ~ 8. : 연구용역 착수 및 추진
 - 2026. 9. : 연구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박장호	담당자	환경7급 이은지	전화	1937
-----	-------	-------------	-----	----------	----	------

인력운영비(자원순환과)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305번길 69
사업규모	환경미화원 3명		
사업목적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석정리 적환장)의 운영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급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해당조례	김포시·김포시 환경을 사랑하는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제28조
		제28조(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70,368	274,102	278,784	0	0	-4,682	296,122	22,02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70,368	274,102	278,784			-4,682	296,122	22,02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96,122	
인력운영비 (자원순환과)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기본급 : 4,621,530원*12월*3명=166,375,080원 · 정액급식비 : 170,000원*12월*3명=6,120,000원 · 명절휴가비 : 4,621,530원*60%*2회*3명=16,637,508원 ·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포함) : 37,710원*10시간*52주*3명=58,827,600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 201,120원*3명*10일=6,033,600원 · 배우자수당 : 40,000원*12월*3명=1,440,000원 · 기타가족수당 : 20,000원*12월*12명=2,880,000원 · 운전수당 : 40,000원*12월*3명=1,440,000원	= 259,756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259,753,800*14%=36,365,530원	= 36,366	

□ 예산요구 사유

-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한 필요경비

□ 예산증감 사유

○ 호봉 상승으로 인한 기본급 상승(2026년 공무원근로자 임금 적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환경미화원 인건비, 4대보험료 지출을 위한 계획 수립 후 월별 정산·지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월별 지출 - 피복비 지급
2024	-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월별 지출 - 피복비 지급
2025	-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월별 지출 - 피복비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63,566	238,277	-	25,289	
2024	270,368	257,108	-	13,260	
2025	274,102	215,901	-	58,20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하재현	담당자	공업8급 송진우	전화	2772
-----	-------	------------	-----	----------	----	------

2026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해양하천과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지원(사업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대표자	박남순
사업목적	관내 하천의 물환경 보전, 유지 등 하천살리기 활동을 추진하여 하천의 수질개선 및 시민참여 활동 증대		
사업구분	☐ 신규 ☒ 연(연)반복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탐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그 외 시스템명 기재) ☐ 해당없음(사유기재)		
법 적 근 거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항 시장은 추진단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김포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10,075	10,075	10,075	0	0	0	9,068	-1,007	
시비	10,075	10,075	10,075				9,068	-1,007	
자부담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김포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합 계	9,068	9,068		
		소 계	1,810	1,810		
		· 추진단 사례연구 워크숍				
		- 차량임차비 : 700,000원*1대*1일	= 700	700		
		- 여행자보험비 : 1,000원*45명	= 45	45		
		- 간 식 비 : 5,000원*45명	= 225	225		
		- 식 비 : 9,000원*45명*2식	= 810	810		
		- 현 수 막 : 30,000원*1장	= 30	30		
		소 계	600	600		
		· 하천생태교란식물 교육				
		- 강사수당 : 100,000원*3명*2회	= 600	600		
		소 계	1,898	1,898		
		· 친수하천 초화식생 조성				
		- 식생구입비 : 1,868원*1,000포트*1회	= 1,868	1,868		
		- 현 수 막 : 30,000원*1장	= 30	30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김포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소 계	1,730	1,730		
		· EM 활성화사업				
		- 재료비 : 30,000원*50회 =	1,500	1,500		
		- 홍보비 : 2,000원*100장 =	200	200		
		- 현수막 : 30,000원*1장 =	30	30		
		소 계	3,030	3,030		
		· 청소년 하천학교 운영				
		- 강사비 : 100,000원*2명*12회	2,400	2,400		
		- 교구비 : 2,500원*10명*24회	600	600		
		- 현수막 : 30,000원*1장	30	30		

□ 예산요구 사유

- 하천네트워크 조직 활성화 및 타시도 하천관리 사례연구를 위한 워크숍 추진
- 시민이 체감하는 하천환경 개선으로 친수하천 식생조성 사업(신규) 추진
- 하천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교란식물 교육(신규), 청소년 하천학교로 하천가꾸기 시민참여 유도
-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EM활용 사업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활용실적이 없는 ‘하천 모니터링 사업비(800천원)’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하천정화활동 사업비(3,210천원)’를 전액 삭감하여,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천생태교란식물교육(600천원)’과 ‘친수하천 초화식생조성(1,898천원)’ 사업비를 신규편성하였음
- ‘추진단 사례연구 워크숍’, ‘EM활성화 사업’, ‘청소년 하천학교 운영’은 물가상승률을 감안, 증액하여 각 155천원, 230천원, 120천원 증액 하였음(+505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 추진실적 : 하천정화활동, 하천모니터링, 청소년 하천학교, 관내 하천변 불법경작 금지 계도활동, 악취 및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EM 투여
2024	· 보조사업자 :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 추진실적 : 하천정화활동 및 위해식물제거, 하천모니터링, 청소년 하천학교, EM 활성화사업 (EM비누만들기, 흙공만들기, 친환경캠페인)
2025	· 보조사업자 :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 추진실적 - 하천정화활동 및 초화류식재(100명, 3회), 하천살리기 사례연구 워크숍(45명, 1회) - 하천모니터링(1회) - 청소년 하천학교(110명, 10회) - EM 활성화사업(8회)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11,660	11,660	-	11,660	11,660	-	-	-	-	
2024	10,075	10,075	-	10,075	10,075	-	-	-	-	
2025	10,075	10,075		8,460	8,460		1,615	1,61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장 민경수	담당자	행정7급 이승철	전화	5422
-----	-------	------------	-----	----------	----	------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지원(운영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대표자	박남순
사업목적	관내 하천의 물환경 보전, 유지 등 하천살리기 활동을 추진하여 하천의 수질개선 및 시민참여 활동 증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탐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그 외 시스템명 기재) ☐ 해당없음(사유기재)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물환경보전법	제6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 환경부 유권해석[물환경정책과 - 3624('14. 10. 17.)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10,075	37,702	37,702	0	0	0	37,362	-340	
시비	10,075	37,702	37,702				37,362	-340	
자부담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37,362	37,362		
		소 계	861	861		
		· 사무실 운영비				
		- 사무실운영비 : 21,750원*12월	= 261	261		
		- 통 신 요 금 : 50,000원*12월	= 600	600		
		소 계	34,311	34,311		
		· 사무국 인건비				
		- 기 본 급 : 1,995,250원*12월	= 23,943	23,943		
		- 상 여 금 : 1,925,200원*2월	= 3,850	3,850		
		- 4대 보험 : 250,167원*12월	= 3,002	3,002		
		- 퇴직적립금 : (기본급+상여금)/12월	= 2,316	2,316		
		- 여 비 : 25,000원*4일*12월	= 1,200	1,200		
		소 계	2,190	2,190		
		· 추진단 운영비				
		- 운영위원 회의수당 : 50,000원*8명*3회	= 1,200	1,200		
		- 운영회 관계자 식비 : 9,000원*10명*11회	= 990	99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실 운영비용(인건비 포함) 지원
- 네트워크 조직 활성화를 위한 회의개최 비용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추진단 사무실 운영비(-339천원) 감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10.31. 기준)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3	· 집행률 93% - 사무국 운영비 : 지원(37,369천원)-집행(35,097천원)=잔액(2,272천원) - 네트워크 운영비 : 지원(1,920천원)-집행(1,570천원)=잔액(350천원)
2024	· 집행률 97% - 사무국 운영비 : 지원(37,369천원)-집행(36,836천원)=잔액(532천원) - 네트워크 운영비 : 지원(1,920천원)-집행(1,420천원)=잔액(500천원)
2025	· 집행률 77% - 사무국 운영비 : 지원(35,512천원)-집행(28,759천원)=잔액(6,753원) - 네트워크 운영비 : 지원(2,190천원)-집행(400천원)=잔액(1,790천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39,289	39,289	-	36,667	36,667	-	2,622	2,622	-	
2024	39,289	39,289	-	38,256	38,256	-	1,033	1,033	-	
2025	37,702	37,702	-	29,159	29,159	-	8,543	8,543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장 민경수	담당자	행정7급 이승철	전화	5422
-----	-------	------------	-----	----------	----	------

하천 ·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하천
사업규모	목표 쓰레기 수거량 150톤		
사업목적	하천·하구의 부유물(쓰레기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재난재해 예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물환경보전법	제6조 제1항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환경부 유권해석[물환경정책과 - 3624('14. 10. 17)]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0,000	40,000	40,000	0	0	0	47,143	7,143	
국비	28,000	28,000	28,000				33,000	5,000	
도비		0						0	
시비	12,000	12,000	12,000				14,143	2,143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7,143	
2026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인건비	· 인력수거 : 11,400원*5시간*25명*25회	=	35,625	
		물품구입	· 하천 유출구 거름망 : 60,000원*10개소*12회	=	7,200	
	· 정화소모품 : 172,720원*25회		=	4,318		

□ 예산요구 사유

- 하천 내 쓰레기 및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하천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
- 하천 유입구 오염물질 사전차단으로 깨끗한 수질의 하천환경 조성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 추진실적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5월~11월, 30명(주2회), 쓰레기수거 109.4톤
2024	· 보조사업자 :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 추진실적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5월~11월, 30명(주2회), 쓰레기수거 84.2톤
2025	· 보조사업자 :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 추진실적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6월~10월, 25명(주2회), 쓰레기수거 92톤(2025.10.31.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국·시비	자부담	계	국·시비	자부담	계	국·시비	자부담	
2023	45,000	45,000	-	45,000	45,000	-	-	-	-	
2024	40,000	40,000	-	40,000	40,000	-	-	-	-	
2025	40,000	40,000	-	25,000	25,000	-	15,000	15,000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장 민경수	담당자	행정7급 이승철	전화	5422
-----	-------	------------	-----	----------	----	------

하천 유지관리용 공용차량 임차료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하천
사업규모	하천 유지관리용 공용차량 2대		
사업목적	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기동성 확보 및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으로 신속한 대응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6항
		소하천 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3,800	15,960	15,960	0	0	0	15,96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3,800	15,960	15,960				15,96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960	
하천유지관리용 공용차량 임차료	201-01 사무관리비	· 공용차량 임차료 : 970,000원*1대*12개월	= 11,640	
	201-02 공공운영비	·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 180,000원*2대*12개월	= 4,320	

□ 예산요구 사유

- 하천 범람, 하천 수동 차단 등의 재난상황 대비 긴급출동에 필요한 기동성 확보
- 하천 내 조성된 산책로 및 제방도로 유지·관리 및 불법사항 지도·단속
- 김포시 하천살리기추진단 차량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사무관리비] 2026년 1월 공용차량 임차 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으로 임차료 동결 예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2025.10. 반영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9. : 공용차량 정수배정 요청(회계과)
 - 2022. 10. : 전기차 이외 차종 구매에 따른 자동차 구매·임차실적 제외 요청 사유서 및 설명서 제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2023. 01. : 하천 유지관리용 공용차량 임차 계약(스포티지)
 - 2024. 06. 12. : 하천 유지관리용 공용차량 인수[회계과->해양하천과(스타렉스)]
 - 2026. 01. : 공용차량 임차 만료 및 재계약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하천 유지관리용 공용차량 임차 계약
2024	· 하천 유지관리용 공용차량 인수
2025	· 공용차량 운영을 통한 재난상황 등 현장 대응력 제고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500	13,295	-	205	
2024	13,800	13,730	-	70	
2025	15,960	11,389	-	4,57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장 민경수	담당자	행정8급 손지민	전화	5425
-----	-------	------------	-----	----------	----	------

한국하천협회 연회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사우중로 1
사업규모	한국하천협회 연회비(연간 1회 납부)		
사업목적	하천관련 정책 및 관련기술 교육, 기술자문 등 관련 기관·단체·기업간 업무 효율성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하천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88조 제4항
		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회원의 종류(한국하천협회 정관) - 정회원 : 하천 및 하천환경 등에 관한 단체 또는 개인 - 특별회원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 하천관련 단체 - 명예회원 : 본 협회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그 발전에 협조 또는 공로가 있는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0	1,000	1,000	0	0	0	1,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00	1,000	1,000				1,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	
한국하천협회 연회비	201-02 공공운영비	· 협회 연회비 : 1,000,000원*1회 =	1,000	

□ 예산요구 사유

- 하천 및 하천환경 보전, 복원 및 쾌적한 수변 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효율성 증대
- 한국하천협회 하천 관련 기술·조사연구 자료 등 하천정책 동향 및 기술 자문 등을 통한 공익 증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2. : 연회비 납부 및 협회활동 참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년 하천관리 워크숍 참석 (2023.4.27.~4.28. 3명) · 2023년 해외도시하천 기술교류 워크숍 (2023.10.23.~10.27. 2명)
2024	· 2024년 하천관리 워크숍 참석 (2024.3.28.~3.29. 2명) · 한강하구 관련 연구자료 제공(한강하구에서 하도변화와 식물천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습지형성 기작,이삼희 2022)
2025	· 2025년 김포시 하천 시민참여 정책토론회 관련 전문가 섭외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00	1,000	-	-	
2024	1,000	1,000	-	-	
2025	1,000	1,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정책 팀장 민경수	담당자	행정7급 이승철	전화	5422
-----	-------	-------------	-----	----------	----	------

공유재산 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해양하천과 소관 시유지 866필지(682,999㎡)		
사업목적	공유재산의 현행화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5항
		-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7,000	7,000	0	0	0	7,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7,000	7,000				7,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000	
공유재산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무단점유 방지 안내문 제작 : 1,000,000원	1,000	
	401-01 시설비	. 공유재산 유지관리(측량, 펜스 설치 등) : 6,000,000원	6,000	

□ 예산요구 사유

- 무단점유 방지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시·도유) 관리 업무를 추진 중이나,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김포시 총괄예산(자산관리과 집행)만 있는 실정이므로 해양하천과 소관 시유재산의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도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5. ~ 2026. 09.: 공유재산(시·도유) 실태조사 실시(자산관리과)
 - 2026. 08. ~ 2026. 11.: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정조치
 - 2026. 12. : 공유재산 관리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기간 : 2023. 06. ~ 2023. 07. (대상 : 토지 2,055필지)
2024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기간 : 2024. 06. ~ 2024. 07. (대상 : 토지 2,102필지) · 도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 기간 : 2024. 04. ~ 2024. 12. (대상 : 토지 99필지) · 측량(도유재산) : 2건(경계측량 1, 지적측량 1)
2025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기간 : 2025. 05. ~ 2025. 10. (대상 : 토지 2,171필지, 건물 23동)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7,000	282	-	6,71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	담당자	주무관 김현섭	전화	5424
-----	-------	-------	-----	---------	----	------

생태하천개선 시민참여 정책토론회

사업기간	2026. 3. ~ 2026. 10.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시민참여 하천정책 토론회 연 1회		
사업목적	하천관리의 궁극적 수혜자인 시민의 정책 수립과 이행과정 참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5조
	해당조례 시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2,095	0	2,095	0	0	5,000	2,90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95		2,095			5,000	2,90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	
생태하천개선 시민참여 정책토론회	201-01 사무관리비	홍보	· 현수막 : 110,000원*1개 · x 배너 : 50,000원*1개 · 표 찰 : 30,000원*5개 · 백 일 : 700,000원*1개	= = = =	1,010 110 50 150 700	
		토론	· 토론자 수당 : 230,000원*5명*2H · 전문가 발제 : 1,000,000원*1명*1H · 토론자 여비 : 25,000원*6명 · 토론자 원고료 : 10,000원*6명*9P	= = = =	3,990 2,300 1,000 150 540	

□ 예산요구 사유

- 민선8기 공약사항 ‘전국 최고의 명품 수변길 조성’ 추진 시민요구 반영
- 하천정책 개선과제 도출
- 하천정책 추진 시민 홍보
- 하천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체감 만족도 고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2. : 기본계획 수립
 - 2026. 03. ~ 08. : 전문가섭 외 등 토론회 준비
 - 2026. 09. : 토론회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2025년 제1회 추경예산반영 (10월 추진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2,095	-	-	2,09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정책 팀장 민경수	담당자	행정7급 이승철	전화	5422
-----	-------	-------------	-----	----------	----	------

반려공존 하천문화공간 조성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구래동 6874-28 외 2필지
사업규모	가마지천 하천부지 반려문화공간 조성 총면적 약 2,700㎡		
사업목적	하천 시민여가문화 공간 조성으로 '일상중심'의 하천이용 활성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3조(국가등의 책무) 제1항
		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000,000	1,000,000	
국비		0						0	
도비		0					500,000	500,000	
시비		0					500,000	50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0	
반려공존 하천문화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 반려테마 하천공간 400,000원/㎡*700㎡ · 반려놀이터 조성 350,000원/㎡*2,000㎡ · 야관경관 공사 20,000원/㎡*1,000㎡	= 280,000 = 700,000 = 20,000	

□ 예산요구 사유

- 증가하는 반려가구(전체가구 중 약 13.5%)의 필요정책 1순위*는 반려놀이터 수요임
* 가족문화과 설문조사(2024.5.25.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줍깅' 캠페인 결과보고)
- '반려동물 친화도시' 및 '명품 수변공원길 조성' 시역점사업의 시행
- '하천유희부지를 활용', 시민에게 유용한 하천문화여가공간으로 조성
- '일상중심'의 하천공간으로 체류시간 증가 등 인근 상권이용의 '경제적 효과' 실현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지방하천정책 오디션 공모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신규사업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2. : 실시설계용역
 - 2026. 03. : 공사착공
 - 2026. 12. : 공사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약 2,700㎡	본예산 요구액 (천원)	1,000,000
부기명 (세부사업)	반려공존 하천문화공간 조성	사업위치	구래동 6874-28 외 2필지		
위치도					
현장사진					
	(사업부지 : 하천 앞 비탈, 교각하부)		(사업부지 : 제방면)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장 민경수	담당자	행정7급 이승철	전화	5422
-----	-------	------------	-----	----------	----	------

하천가꾸기 운동 활성화

사업기간		2026. 1. ~ 2026. 1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지방·소하천
사업규모		하천 가꾸기 운동 홍보표지판 6개소, 하천교란식물 교육 성적우수 시상금 3개 기관(단체), 하천가꾸기 공감행사 1개소			
사업목적		하천가꾸기 시민참여로 지속가능한 하천생태, 친수 여건 마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물환경보전법			제6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포상조례			제8조 제2항
		전항의 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2,000	12,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0				12,000	12,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0	
하천가꾸기 운동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 하천가꾸기 운동 홍보표지판 : 600,000원*6개소 · 주민참여활동 집기(장갑 등) : 7,000원*200개	= 3,600 1,400	
	301-14 기타 보상금	· 하천교란식물교육 성적 최우수 : 1,000,000원*3개	= 3,000	
	206-01 재료비	· 하천자생식물 확대조성 : 2,000원*2,000주	= 4,000	

□ 예산요구 사유

- 시장님 지시사항(2024-시-123) 및 하천가꾸기 운동 개선사항 추진(해양하천과-8387)
 - 지시사항 : ‘하천가꾸기운동 홍보방안과 우수관리 구역에 대한 포상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 개선사항 : ‘홍보표지판 설치 확대’, ‘자생식물 지원 확대’, ‘내실 있는 생태교란식물 교육 운영’
- 하천생태교란식물 위해성(제거) 교육 우수기관(단체)에 시상금 지급으로 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장려하고 하천생태계 개선
- 2026년 시민공감 하천가꾸기 행사 추진 시, 하천 자생식물 구역을 확대 조성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4. : 상반기 시민공감 하천가꾸기 행사
 - 2026. 09. : 하반기 시민공감 하천가꾸기 행사
 - 2026. 11. : 하천가꾸기 운동 평가 및 시상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약 1,000㎡	본예산 요구액 (천원)	12,000
부기명 (세부사업)	하천가꾸기 운동 활성화 (자생식물 확대 조성)	사업위치	동지역(나진포천), 읍면(수요조사)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장 민경수	담당자	행정7급 이승철	전화	5422
-----	-------	------------	-----	----------	----	------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한강, 굴포천
사업규모	국가하천 2개소 유지관리		
사업목적	국가하천 유지·보수, 점검을 통한 사전 재해예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위임규정	하천법	제92조 제1항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령	하천법	제27조 제7항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⑦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28,111	87,407	184,800	0	-97,393	0	196,824	109,417	
국비	628,111	87,407	184,800	0	-97,393	0	196,824	109,417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96,824	
국가하천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 수초목 제거 : 760원*92,140m ² *1회	= 70,027	
		· 국가하천 안전점검 : 11,749,250원*4개소	= 46,997	
		· 국가하천 유지보수 : 11,400,000*7	= 79,800	

□ 예산요구 사유

- 국비(100%) 보조사업으로 2026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가내시[경기도 하천과-18345 (2025. 9. 19.)호]
- 하천변 수목 및 수초 제거를 통한 유수 흐름 개선
- 하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 유지보수로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하천변 유지보수 및 수초제거 예산 부족분 확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4. : 2026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요구서 제출
 - 2026. 01. ~ 12.: 사업추진(공사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굴포천 제방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 한강둔치 산책로 나대지 수초목 제거 공사 · 국가하천 2개소(한강둔치, 굴포천) 유지관리 공사
2024	· 굴포천 제방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 국가하천 2개소(한강둔치, 굴포천) 유지관리 공사
2025	· 굴포천 제방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 국가하천 2개소(한강둔치, 굴포천) 유지관리 공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0,000	115,307	65,585	9,108	
2024	678,294	97,050	532,389	48,855	
2025	619,796	522,746	-	97,0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임수진	담당자	녹지6급 진미란	전화	5428
-----	-------	------------	-----	----------	----	------

국가하천 유지보수-한강전류리구간 사면복구공사

사업기간	2025. 10. ~ 2026. 4.	사업위치	국가하천 한강(하성면 봉성리 640-18번지 일원)
사업규모	국가하천 사면 보강 L=100m		
사업목적	국가하천 무제부 구간 사면 유실 및 침하를 복구하여 하천 기능을 회복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확보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92조 제1항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령	하천법	제27조 제7항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⑦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70,827	0	0	0	170,827	329,173	158,346	
국비		170,827				170,827	329,173	158,346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29,173	
국가하천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 한강 전류리구간 사면복구공사 : 1,028,666원/m ² *320m ² =	329,173	

□ 예산요구 사유

- 국비(100%) 보조사업으로 2026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내시[경기도 하천과 -18345(2026. 9. 19.)호]
- 하천 사면부 세굴이 가속화되면서 사면 안정성이 저하됨에 따라 갈수기 신속한 복구공사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총 소요 사업비 5억원 중 1차분 170,827천원 배정(3회 추경 편성) 후 2차분 내시 됨에 따른 사업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5. 09. : 하천제방 하단부 침하발생, 사업비 요구(총사업비 5억원)
- 2025. 09. 19. : '25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편성(1차분 170백만원, 국비 100%)
- 2025. 09. 19. : '26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가내시(2차분 329백만원, 국비 100%)
- 2025. 10. 15.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5. 10. ~ 12.: 실시설계 용역 및 군협의 추진
- 2026. 01. ~ 04.: 공사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500,000	19,683	480,317	480,317	0	0	
공 정 별	설계비	19,683	19,683	0				
	보상비	0		0				
	공사비	480,317		480,317	480,317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2025	· 「한강 전류리구간 사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량: 사천사면 복구 L=65m, H=3~4m - 사업비: 19,683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70,827	-	-	170,827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하천사면 보강 L=100m	본예산 요구액 (천원)	329,173
부기명 (세부사업)	한강 전류리구간 사면 복구공사	사업위치	하성면 봉성리 640-18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임수진	담당자	녹지6급 진미란	전화	5428
-----	-------	------------	-----	----------	----	------

하천불법행위 감시 용역

사업기간		2026. 3.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하천
사업규모		관내하천 55개소(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15개소, 소하천 37개소)의 불법행위 감시		
사업목적		하천불법행위 감시 및 계도를 통한 하천시설물 보호, 친수공간 관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46조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2,000	94,626	94,626	0	0	0	97,000	2,37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2,000	94,626	94,626				97,000	2,374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7,000	
하천불법행위 감시 용역	401-01 시설비	· 하천 불법행위 감시원 운영 - 인건비 : 10,000천원*9개월(감시원 3명) - 경 비 : 차량 1대 운영비	= 90,000 = 7,000	

□ 예산요구 사유

- 지속되는 하천불법행위에 대응하고자 감시용역을 통해 불법행위 적발 및 단속
- 하천 불법단속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용역비 인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용역 착수
 - 2026. 11. : 용역 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불법 낚시 계도(월평균30회), 쓰레기 불법 투기(월평균5회), 불법 경작 계도(월평균5회)
2024	· 불법 낚시 계도(월평균73회), 쓰레기 불법 투기(월평균1회), 불법 경작 계도(월평균4회)
2025	· 불법 낚시 계도(월평균62회), 쓰레기 불법 투기(월평균1회), 불법 경작 계도(월평균2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1,618	82,503	-	9,115	
2024	92,000	75,260	-	16,740	
2025	94,626	54,552	-	40,07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임수진	담당자	공업8급 이상진	전화	5430
-----	-------	------------	-----	----------	----	------

하천유지관리 - 일반운영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하천
사업규모		하천 관리물품 구입 및 전기요금 납부 등		
사업목적		하천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및 공공요금 납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27조 제7항
		소하천정비법		제26조 제3항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제7항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 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소하천정비법」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3항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5,704	72,224	72,224	0	0	0	114,040	41,81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5,704	72,224	72,224				114,040	41,816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4,040	
하천유지관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하천관리 물품구입 : 100,000원*25개	계 3,100	
		· 소하천위원회 참석 수당 : 100,000원*6명	= 2,500	
			= 600	
	201-02 공공운영비	· 하천차단시설 운영비 : 95,100원*92개소*12개월	계 110,940	
		· 경관조명 등 전기요금 : 99,000원*5개소*12개월	= 105,000	
			= 5,940	

□ 예산요구 사유

-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편성
- 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 예산증감 사유

- 하천자동차단시설 30개소 추가설치에 따른 전기 및 회선 비용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년	· 불법행위금지 안내 현수막 제작 및 설치,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과금 납부 등
2024년	· 불법행위금지 안내 현수막 제작 및 설치,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과금 납부 등
2025년	· 불법행위금지 안내 현수막 제작 및 설치,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과금 납부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년	8,620	7,887	-	733	
2024년	55,704	55,704	-	-	
2025년	72,224	65,401	-	6,823	10. 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임수진	담당자	공업9급 김태호	전화	5429
-----	-------	------------	-----	----------	----	------

하천유지관리 - 시설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하천
사업규모	관내 하천 및 친수공간 유지관리·보수		
사업목적	하천 유지보수 및 수초목제거 실시로 유수 흐름 개선, 시민 친수공간 유지관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6항
	제36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제6항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92,000	992,000	992,000	0	0	0	1,112,000	12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92,000	992,000	992,000				1,112,000	12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12,000	
하천 유지관리사업	401-01 시설비	. 수초목제거(연간단가) : 1,600원*320,000m ² = 512,000 . 하천유지관리(연간단가) - 하천준설 및 폐기물처리 : 50,000원*4,800ton = 240,000 - 하천시설물 긴급복구 및 보상 등 : 1,000,000원*360m = 360,000 계 600,000		

□ 예산요구 사유

- 유수소통 지장물의 제거를 통한 침수피해 예방과 하천시설물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수초목제거 예산 확보 필요
- 하도에 수초와 우천시 토사물이 지속적으로 쌓여 유수흐름을 막아 통수단면이 부족한 실정으로 정비 필요
- 집중 호우에 따른 제방도로 유실 및 파손 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비 필요
- 구래동천 하천구역 2020년 수용재결 후 미공탁으로 발생한 미지급 보상비 지급을 위한 예산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하천유지관리(연간단가) 공사 착공
 - 2026. 12. : 하천유지관리(연간단가)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수초목 제거공사(연간단가) · 하천유지관리 (연간단가) · 준설공사(가마지천, 고창천) · 거물대천 제방도로 보수공사 · 하천 환경개선 및 시설물 정비
2024	· 수초목 제거공사(연간단가) · 하천유지관리 (연간단가) · 신곡천 호안보수공사 · 포내천 제방도로 보수공사 · 하천 환경개선 및 시설물 정비
2025	· 수초목 제거공사(연간단가) · 하천유지관리 (연간단가) · 하천 환경개선 및 시설물 정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30,000	1,057,442	12,932	259,626	
2024	992,000	627,181	76,783	288,036	
2025	992,000	607,975	-	384,025	10.31.기준 집행현황

□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하천 유지관리 연간단가 (수초목제거 및 준설 등)	본예산 요구액 (천원)	1,112,000
부기명 (세부사업)	하천 유지관리	사업위치	하천 55개소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임수진	담당자	공업9급 김태호	전화	5429
-----	-------	------------	-----	----------	----	------

하천 시설물 설치공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하천
사업규모		관내 하천 및 하천시설물 보수 및 보강		
사업목적		기후 이상으로 인한 집중호우 및 기록적 폭우 등으로 손상된 하천시설물의 신속 복구로 재해예방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6항
		제36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제6항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300,000	3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0	0				300,000	30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0	
하천 시설물 설치공사	401-01 시설비	. 하천 제방 및 호안 보강공사 : 100,000,000원*3개소	= 300,000	

□ 예산요구 사유

- 최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 및 기록적 폭우가 빈발함에 따라 하천 제방·호안 및 부대시설물이 심각하게 손상, 추가 피해 및 재해 확산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복구사업 추진 필요
- ※ 2025년 피해 발생 하천 : 봉성포천(지방하천), 울안천·관청천·신곡천(소하천) 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03. : 공사 실시설계용역 집행
 - 2026. 03. ~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하천제방 보강공사 6개소, 안전시설물 설치	본예산 요구액 (천원)	300,000
부기명 (세부사업)	하천시설물 설치공사	사업위치	신곡천 등 7개소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임수진	담당자	녹지6급 진미란 녹지7급 최성은	전화	5428
-----	-------	------------	-----	----------------------	----	------

대명항 어촌뉴딜300사업

사업기간	2026. 1. ~ 2026. 4.	사업위치	대곶면 대명항1로 109
사업규모	대명항 1개소(면적: 52,010㎡)		
사업목적	어촌어항 개선을 통한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 연(연)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어촌어항법		제47조의3, 제47조의6
	제47조의3(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7조의6(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 ① 어촌·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800,000	7,800,000	3,000,000	0	0	4,800,000	1,705,232	-6,094,76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800,000	7,800,000	3,000,000			4,800,000	1,705,232	-6,094,768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05,232	
대명항 어촌뉴딜300 사업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일괄위탁 사업비 : 1,705,232,000원 =	1,705,232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계속비 승인분 485,232천원 예산 반영 필요
- 건축공사 실정 반영 및 야간문화 조성을 위한 부족사업비 12억 원 예산 반영 필요
- 2026년 사업 준공식 개최 예산 20,000천원 반영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건축공사 부서별 협의사항 이행, 감리 지적사항 반영, 야간문화 조성을 위한 옥상조명 설치
- 수산물직판장 1층 42개 점포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셔터 변경, 천장고 20cm 상향 등 실정 반영
- 2026년 상반기 전국 어촌뉴딜사업 성공사례로서 품격 있는 준공식 행사 개최를 위한 홍보 및 시설물 안전관리, 교통주차 안내 등 부대 비용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추진	-	-	-	-	승인	-	-	-	-
일자	2025.11. 반영	2021.2.(도)	-	-	-	-	2022.9.(도)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12. : 공모사업 대상지 대명항 확정
- 2021. 02. : 지방재정 道 투자심사 완료
- 2021. 09. :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원안 승인
- 2023. 02. : 건축물 디자인 선정 및 세부설계 착수
- 2023. 12. : 경관심의,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어항·항만시설) 완료, 가로경관정비 완료
- 2024. 02. :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 협의
- 2024. 09. : 인허가 협의 완료
- 2024. 10. : 분수조형물, 문화광장 조성 완료, 수산물직판장 신축공사 착수
- 2025. 12. : 수산물직판장 신축 완료
- 2026. 01. : (구)수산물직판장 철거 및 주차장 조성 착수
- 2026. 04. : 주차장 조성 완료[어촌뉴딜사업 완료]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25,712,744	24,007,512	1,705,232	1,705,232	0	0	
공 정 별	설계비	1,165,000	1,165,000	0				
	보상비	0		0				
	공사비	18,821,744	17,136,512	1,685,232	1,685,232			
	감리비	0		0				
	부대비	5,726,000	5,706,000	20,000	2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건축물 디자인 선정 및 시행계획 세부설계 착수 · 가로경관사업 완료 · 경관심의,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완료
2024	· 어업인 소득 법인 설립 완료 ·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 협의 완료 · 분수조형물, 문화광장 조성 완료, 수산물직판장 신축공사 착수
2025	· 수산물직판장 신축 공사 완료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250,800	6,250,800	-	-	
2024	3,800,000	3,800,000	-	-	
2025	7,800,000	7,800,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 수산물판매장 신축 4,309㎡ - 가로경관, 주차장정비 15,359㎡ - 문화광장, 분수조형물 설치 1,200㎡	본예산 요구액 (천원)	1,705,232
부기명 (세부사업)	대명항 어촌뉴딜300사업	사업위치	대곶면 대명항1로 109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안영준	전화	5451
-----	-------	------------	-----	------------	----	------

해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기간	2026. 3. ~ 2026. 12.	사업위치	서해 일원
사업규모	조피볼락, 꽃게 / 2종 73만마리		
사업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고급어종 방류를 통한 관리형 어장조성 및 어업소득 증대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4호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

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D)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347,500	326,668	326,668	0	330,000	3,332	
국비		0				0	
도비	69,500	98,000	98,000		99,000	1,000	
시비	278,000	228,668	228,668		231,000	2,332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30,000	
해면 수산자원 조성	308-13 공기간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조피볼락 : 600원*416,666마리 · 꽃 게 : 250원*320,000마리	= 250,000 = 80,0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특성에 맞는 고급어종 방류를 통한 관리형 어장을 조성하여 수산자원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3.~2026.04. : 사업계획 수립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위·수탁 계약 체결
 - 2026.06.~2026.09. : 어종별 방류 실시
 - 2026.10. : 사업완료 및 정산
 - 2026.12. : 방류사업에 따른 어업인 설문조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조피볼락 1,213,175마리, 꽃게 437,364마리 방류
2024	· 조피볼락 1,010,000마리, 꽃게 325,270마리 방류
2025	· 조피볼락 959,479마리, 꽃게 280,000마리 방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0,000	400,000		0	
2024	347,500	347,500		0	
2025	326,668	326,668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8급 김효근	전화	5454
-----	-------	------------	-----	------------	----	------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기간	2026. 3. ~ 2026. 12.	사업위치	한강 일원
사업규모	참개, 황복 / 2종 46만마리		
사업목적	지역 특성에 맞는 고급어종 방류를 통한 관리형 어장 조성 및 어업소득 증대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4호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①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D)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40,000	240,000	240,000	0	130,000	-110,000	
국비		0				0	
도비	48,000	72,000	72,000		39,000	-33,000	
시비	192,000	168,000	168,000		91,000	-77,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0,000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참개 : 250원 * 400,000마리 · 황복 : 500원 * 60,000마리	= 100,000 = 30,0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 실정에 맞는 형질이 우수한 수산종자를 한강에 방류하여 지속적 관리 및 내수면 어업생산력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예산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2025. 04. : 사업계획 수립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위·수탁 계약 체결

- 2026. 06. ~ 2025. 09. : 어종별 방류 실시

- 2026. 10. : 사업완료 및 정산

- 2026. 12. : 방류사업에 따른 어업인 설문조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참게 277,489마리, 황복 353,600마리 방류
2024	· 참게 262,162마리, 황복 352,431마리 방류
2025	· 참게 282,124마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0,000	240,000		0	
2024	240,000	240,000		0	
2025	240,000	240,000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8급 김효근	전화	5454
-----	-------	------------	-----	------------	----	------

수산종자 방류행사 지원

사업기간	2026. 6. ~ 2026. 8.	사업위치	서해 및 한강 일원
사업규모	수산종자 4종(참게, 항복, 꽃게 및 조피볼락)		
사업목적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방류효과 극대화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4호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00	1,960	1,960	0	0	0	1,96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800	1,960	1,960				1,96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960	
수산종자 방류행사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수산종자 방류사업 진행 물품 구입	= 52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방류행사 참석자 급량비 : 9,000원*40명*4회	= 1,440	

□ 예산요구 사유

- 수산종자 방류행사 진행을 위한 장갑, 장화 등 물품 구입 및 참석자 급식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사업물량 동일하여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사업계획 수립
 - 2026. 06. ~ 2026. 08. : 어종별 방류에 따른 행사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참석자 식대 지급(4회), 방류 물품 구입(토시, 모자 등)
2024	· 참석자 식대 지급(4회), 방류 물품 구입(토시, 물, 우비 등)
2025	· 참석자 식대 지급(2회), 방류 물품 구입(토시, 물, 우비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00	1,721	-	79	
2024	1,800	1,706	-	94	
2025	1,960	1,514	-	44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8급 김효근	전화	5454
-----	-------	------------	-----	------------	----	------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항·포구
사업규모		해양쓰레기 150톤		
사업목적		항·포구 및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이관 저해요소 제거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해안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000	100,000	100,000	0	0	0	150,000	50,000	
국비	50,000	50,000	50,000				75,000	25,000	
도비	25,000	25,000	25,000				37,500	12,500	
시비	25,000	25,000	25,000				37,500	12,5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0	
해양쓰레기 정화	380-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해양쓰레기 처리비 : 1,000,000원(톤당)*150톤 =	150,000	

□ 예산요구 사유

- 바다 및 한강에서 떠내려온 폐어구, 폐어망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미관 저해요소 제거

□ 예산증감 사유

- 해양쓰레기 증가로 예산 50%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2. : 사업계획 수립 및 위·수탁 계약
 - 2026. 02. ~ 2026. 12.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2026. 12.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양쓰레기 210톤 수거·처리
2024	· 해양쓰레기 200톤 수거·처리
2025	· 해양쓰레기 189톤 수거·처리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0,000	100,000	-	-	
2024	100,000	100,000	-	-	
2025	100,000	100,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박성원	전화	5452
-----	-------	------------	-----	------------	----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항·포구
사업규모	조업 중 인양쓰레기 93.5톤		
사업목적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수매하여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환경개선조치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2.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 및 처리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0,000	110,000	110,000	0	0	0	93,500	-16,500	
국비		0						0	
도비	33,000	33,000	33,000				28,050	-4,950	
시비	77,000	77,000	77,000				65,450	-11,55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3,500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및 처리 : 1,000,000원(톤당)*93.5톤 =	93,500	

□ 예산요구 사유

-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수매하여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환경 개선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2. : 사업계획 수립 및 위·수탁 계약
 - 2026. 02. ~ 2026. 12.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및 처리
 - 2026. 12.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조업 중 인양쓰레기 98톤 처리
2024	· 조업 중 인양쓰레기 70.72톤 처리
2025	· 조업 중 인양쓰레기 78.64톤 처리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0,000	96,335	-	13,665	
2024	110,000	75,907	-	34,093	
2025	110,000	110,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박성원	전화	5452
-----	-------	------------	-----	------------	----	------

대명항 풍어제 행사지원

사업기간	2026. 2. ~ 2026. 4.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어촌계	대표자	김동형
사업목적	어업인의 안전조업과 풍어를 기원하고 어업인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화합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แท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산업법	제93조 제1항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D)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4,000	10,000		0	10,000	-	
시비	7,000	5,000			5,000	-	
자부담	7,000	5,000			5,00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10,000	보조금 5,000	자부담 5,000	
대명항 풍어제 행사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합 계				
		· 풍어제 주재자 초빙 : 4,000,000원 * 1회 =	4,000	2,000	2,000	
		· 제수비용 : 1,000,000원 * 1회 =	1,000	500	500	
		· 풍어제 식비 : 8,000원 * 375명 =	3,000	1,500	1,500	
		· 몽골텐트, 테이블, 의자 등 행사보조비 : 2,000,000원 * 1식 =	2,000	1,000	1,000	

□ 예산요구 사유

- 어업인의 안전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는 전통적인 지역문화 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예산증감 사유

- 재정 여건 반영한 행사 간소화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간소화 개최 / 3,500천원 집행
2024	- 대동풍어제 개최 / 7,000천원 집행
2025	- 대동풍어제 개최 / 5,000천원 집행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7,000	3,500	3,500	7,000	3,500	3,500	-	-	-	
2024	14,000	7,000	7,000	14,000	7,000	7,000	-	-	-	
2025	10,000	5,000	5,000	10,000	5,000	5,000	-	-	-	10.31.기준 집행현황

□ 현장사진(현장사진 또는 예시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풍어제 행사 500명 참석 예정	본예산 요구액 (천원)	5,000
부기명 (세부사업)	대명항 풍어제 행사지원	사업위치	대곶면 대명항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8급 김효근	전화	5454
-----	-------	------------	-----	------------	----	------

수산업 경영인 행사지원

사업기간	2026. 6. ~ 2026. 8.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한국수산업경영인 김포시연합회	대표자	최영필
사업목적	수산업 경영인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수산업 발전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탐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 ☐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수산업법		제93조 제1항
법령 위임규정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D)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3,000	3,000	3,000	0	2,000	-1,000	
시비	3,000	2,700	2,700		1,800	-900	
자부담	0	300	300		200	-1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2,000	1,800	200	
수산업 경영인 행사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차 량 임 대 : 700,000원 * 1일	= 700	700	0	
		· 식 비 : 10,000원 * 40명 * 2식	= 800	700	100	
		· 기 타 경 비 : 12,500원 * 40명	= 500	400	100	

□ 예산요구 사유

- 행사 참여를 통하여 수산업 경영인 상호 간 정보 교류로 선진 수산업 경영 기법을 습득하고 경영인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수산업 발전에 기여
- 2026년 경기도 대회 참여에 따른 예산 필요 (홀수연도 전국대회, 짝수연도 도대회)

□ 예산증감 사유

- 올해는 전국대회 행사였으나 2026년은 경기도 대회로 행사 규모 축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령시에서 주관하는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어업인 23명 참석
2024	·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제8회 경기도 수산업경영인대회 어업인 40명 참석
2025	· 전남 여수에서 주최하는 제15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어업인 40명 참석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3,000	3,000	-	3,000	3,000	-	-	-	-	
2024	3,000	2,700	300	3,000	2,700	300	-	-	-	
2025	2,223	2,000	223	2,223	2,000	223	-	-	-	10.31.기준 집행현황

□ 현장사진(현장사진 또는 예시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40명	본예산 요구액 (천원)	2,000
부기명 (세부사업)	수산업 경영인 행사지원	사업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8급 김효근	전화	5454
-----	-------	------------	-----	------------	----	------

수산물 질병예방약품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양식장
사업규모	양식어가 12개소		
사업목적	질병예방을 통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수산물 생산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1항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7,980	24,000	24,000	0	0	0	22,000	-2,000	
국비		0						0	
도비	5,596	7,200	7,200				6,600	-600	
시비	22,384	16,800	16,800				15,400	-1,4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2,000	
수산물 질병예방약품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질병예방약품 1,833,333원(어가당)*12개소	= 22,000	

□ 예산요구 사유

○ 소독제, 수질개선제 및 면역증강제 등 양식장 질병예방약품 지원을 통한 우수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2. : 사업 신청 및 접수
 - 2026. 03. ~ 2026. 10. :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2026. 11.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수산생물질병예방약품 지원 : 12개소
2024	· 수산생물질병예방약품 지원 : 12개소
2025	· 수산생물질병예방약품 지원 : 12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0	30,000	-	-	
2024	27,980	23,995	-	3,985	
2025	24,000	16,000	-	8,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8급 김효근	전화	5454
-----	-------	------------	-----	------------	----	------

수산업 안전보험 가입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어선 및 어업인	
사업규모		어선 80척, 어선원 210명				
사업목적		연안 어선원 및 어선 보험료 부담경감을 통해 해상재난사고 발생 시 보험에 의한 신속한 피해복구로 안정적 어로활동 보장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항	
		제4조(국가등의 재정지원)①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3,500	151,900	151,900	0	0	0	147,192	-4,708	
국비	0	0	0					0	
도비	30,700	45,570	45,570				44,500	-1,070	
시비	122,800	106,330	106,330				102,692	-3,638	
기타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7,192	
수산업 안전보험 가입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어선 보험료 : 556,250원*80척 · 어선원 보험료 : 489,010원*210명	= 44,500 = 102,692	

□ 예산요구 사유

- 각종 해상 재난사고 발생 시 보험에 의한 신속한 피해복구와 안정적인 어업활동 재개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2. : 사업 신청 및 접수
 - 2026. 3. ~ 2026. 12. :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 지원
 - 2026. 12.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어선 79척, 어선원 209명 지원
2024	· 어선 80척, 어선원 208명 지원
2025	· 어선 80척, 어선원 210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46,850	84,143	-	62,707	
2024	153,500	137,656	-	15,844	
2025	151,900	151,9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9급 장서진	전화	5456
-----	-------	------------	-----	------------	----	------

수산물 보관 저장용기 지원

사업기간	2026. 6. ~ 2026. 12.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어촌계		대표자	김동형	
사업목적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보관 용기를 지원함으로써 품질보증 및 어민 소득 증대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탬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산업법			제93조 제1항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51,000	51,000	51,000	0	0	0	51,000	0	
시비	25,500	25,500	25,500				25,500	0	
자부담	25,500	25,500	25,500				25,50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51,000	25,500	25,500	
수산물 보관 저장용기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아이스박스(꽃게, 활어 등)				
		- 2kg 박스 : 660원*9,500개	= 6,270	3,135	3,135	
		- 3kg 박스 : 880원*12,000개	= 10,560	5,280	5,280	
		- 10kg 박스 : 1,155원*9,190개	= 10,614	5,307	5,307	
		· 플라스틱 용기(새우젓 등)				
		- 5L 용기 : 1,650원*7,500개	= 12,376	6,188	6,188	
		- 1.65L 용기 : 660원*13,000개	= 8,580	4,290	4,290	
		- 0.7L 용기 : 467원*5,500개	= 2,568	1,284	1,284	
		· 스티커 제작 : 32,500원*1개	= 32	16	16	

□ 예산요구 사유

- 어획된 수산물을 위생적인 저장용기에 보관·유통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예산 증감 없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꽃게 아이스박스 2kg, 3kg, 10kg 및 새우젓용기 0.7L, 1.65L, 5L 구매
2024	· 꽃게 아이스박스 2kg, 3kg, 10kg 및 새우젓용기 0.7L, 1.65L, 5L 구매
2025	· 꽃게 아이스박스 2kg, 3kg, 10kg 및 새우젓용기 0.7L, 1.65L, 5L 구매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60,000	30,000	30,000	60,000	30,000	30,000	-	-	-	
2024	51,000	25,500	25,500	51,000	25,500	25,500	-	-	-	
2025	51,000	25,500	25,500	51,000	25,500	25,500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9급 장서진	전화	5456
-----	-------	------------	-----	------------	----	------

수산물 가공·처리장비 지원

사업기간	2026. 3. ~ 2026. 12.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어촌계	대표자	김동형
사업목적	수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여 어업 소득 증대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tam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수산업법	제93조 제1항	
법령 위임규정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D)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58,000	50,000	50,000	0	50,000	0	
시비	29,000	25,000	25,000		25,000	0	
자부담	29,000	25,000	25,000		25,00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5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50,000	25,000	25,000	
수산물 가공·처리장비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 선별기 : 11,500,000원 * 1개	= 11,500	5,000	6,500	
		· 저온저장고 : 17,005,000원 * 1개	= 17,005	10,000	7,005	
		· 상업용 냉장·냉동고 : 2,149,500 * 10개	= 21,495	10,000	11,495	

□ 예산요구 사유

- 어획된 수산물 중 단기간 소비되지 않는 수산물을 가공·처리(선별, 급냉, 건조 등) 하여 신선한 수산물 유통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예산 증감 없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건조기 2대, 냉동고 13대 지원
2025	· 건조기 2대, 냉동고 19대 지원 예정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해		당		없		음		
2024	58,000	29,000	29,000	58,000	29,000	29,000	-	-	-	
2025	50,000	25,000	25,000	50,000	25,000	25,000	-	-	-	10.31.기준 집행현황

□ 현장사진(현장사진 또는 예시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건조기 2대, 냉동고 19대	본예산 요구액 (천원)	25,000
부기명 (세부사업)	수산물 가공·처리장비 지원	사업위치	김포시		
예시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8급 김효근	전화	5454
-----	-------	------------	-----	------------	----	------

어업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해·내수면 및 항·포구 5개소
사업규모	공유수면(해안선 29.28km, 갯벌 31km ²), 항·포구(대명항, 고양항, 신안항, 전류리포구, 누산리포구)		
사업목적	해면 공유수면 및 항포구 등 해양수산분야 불법행위 근절 및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운영 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어항관리조례	제4조제2항, 제10조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② 시장은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김포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3,900	2,500	2,500	0	0	0	12,500	1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3,900	2,500	2,500	0	0	0	12,500	1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500	
어업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수당 : 100,000원*5명*1회 · 불법행위 지도단속 물품 구입 및 관리비 : 2,000,000원	= 2,500	
	201-02 공공운영비	· 항포구 시설물 유지관리 : 10,000,000원	10,000	

□ 예산요구 사유

- 해면 공유수면 및 항포구 5개소에 대하여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
-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내수면 수산어업 분야 관리 및 정책사업 반영
- 전류리 포구 공용화장실 개방을 위한 유지보수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전류리 포구 공용화장실 유지보수 비용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해·내수면 및 항·포구 불법행위 지도단속 추진
 - 2026. 01. ~ 2026. 04. : 전류리 포구 공용화장실 유지보수
 - 2026. 12. :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유흡착제 7,000개, 오일펜스 12개 구입 · 대명항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 10개소 고발 ·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1회 개최
2024	· 어업법인 3개소 해산 조치 완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일 해산명령 청구)
2025	·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12월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400	12,435	-	2,965	
2024	33,900	3,296	30,000	604	
2025	32,500	297	-	32,20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박성원	전화	5452
-----	-------	------------	-----	------------	----	------

어업지도선 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해·내수면 및 항·포구 5개소	
사업규모		어업지도선 1척					
사업목적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한 어업지도선 운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어선법			제37조의2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등록·설비·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900	2,000	2,000	0	0	0	1,500	-5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900	2,000	2,000				1,500	-5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	
어업지도선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공제회비 등 : 1,100,000원 · 유류비(휘발유): 100,000원 · 수선유지비 : 300,000원	= 1,100 = 100 = 300	

□ 예산요구 사유

- 어업지도선을 활용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실시로 깨끗하고 청정한 김포바다 조성
- 공유수면 및 무인도서 등 행정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09년 구입한 행정선의 내구연한(8년) 8년 초과로 운항에 어려움이 있어 최소 유지비용 외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어업지도선 운항 및 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제보험료 납부, 구명조끼 구입
2024	· 공제보험료 납부
2025	· 공제보험료 납부 · 트레일러 자동차세 납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0	1,841	-	159	
2024	1,900	928	-	972	
2025	2,000	1,060	-	94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안영준	전화	5451
-----	-------	------------	-----	------------	----	------

김포대명항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1로 109
사업규모	대명항 관리(면적 52,010㎡)		
사업목적	대명항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효율성 제고 및 쾌적한 어업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김포시 어항관리조례	제11조 제2항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40,351	140,351	0	0	0	176,154	35,803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40,351	140,351				176,154	35,803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6,154	
김포대명항 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대명항 운영 대행사업비 : 172,524,000원 =	172,524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 밀폐공간 출입 시 질식 및 중독재해 물품 구입 : 3,630,000원 =	3,630	

□ 예산요구 사유

- 대명항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효율성 제고 및 쾌적한 어업환경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수산물직판장 신축에 따른 규모 및 범위 확대에 관리비 증액
- 어촌뉴딜사업 완료에 따른 CCTV(11대 → 41대) 추가 설치에 따른 월 임차비용 증가
- 대명항 분수대 신규 운영에 따른 수질관리를 위한 전문 청소용역, 저수조 밀폐공간 출입 안전장비 구입
- 젓갈건어물 시장 페인트 박리제거 및 도색, 냉난방시설 16기 유해균 제거를 위한 화학세척 실시
- 젓갈건어물 시장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내진진단 실시 대상 *안전기획관-16561(2025.7.31.)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김포시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 지급
 - 2026. 01. ~ 2026. 12. : 어항시설관리 및 분기별 현황보고(김포시도시관리공사→해양하천과)
 - 2026.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젓갈건어물 시장, 창고, 급유시설 등 위탁관리비 지급
2024	·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젓갈건어물 시장, 창고, 급유시설 등 위탁관리비 지급
2025	·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젓갈건어물 시장, 창고, 급유시설 등 위탁관리비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0,279	237,283	-	2,996	
2024	126,447	122,447	-	4,000	
2025	140,351	140,351	-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안영준	전화	5451
-----	-------	------------	-----	------------	----	------

대명항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1로 109
사업규모	대명항(면적 : 52,010㎡) 수산물직판장, 젓갈건어물 시장 등 어항시설		
사업목적	대명항 활성화 계획 수립, 수산물직판장에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공급 및 대명항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김포시 어항관리조례	제11조 제2항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0,200	72,000	72,000	0	0	0	65,000	-7,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0,200	72,000	72,000				65,000	-7,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5,000	
대명항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어항시설 수선유지 : 40,000,000원	= 40,000	
	401-01 시설비	· 대명항 부잔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 1개소*25,000,000원	= 25,000	

□ 예산요구 사유

- 대명항 물양장, 선착장 및 기타 어항기반시설 수선유지 필요
- 2026년 시행 대명항 퇴적갯벌 준설공사에 대명항 부잔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교체여부 결정
총사업비 30억 원(도비 80% 시비 20%) *3년차 사업으로 '26년 250,000천원 설계비 내시 예정
- 대명항 멀티미디어 분수조형물 정기점검 용역
- 신축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및 주차타워 천장 고는 3m~7m 사이로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전등
교체 등 유지관리 작업 중 낙상 시 큰 부상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고소작업대 반드시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대명항 부잔교는 현재 퇴적된 갯벌에 의해 해수면 저조(썰물) 시 PE 함선이 갯벌에 얹혀 15° 이상 길이 7m~8m의 경사각이 생겨 어업인의 통행에 위험 *매년 어업인 낙상사고 발생 중
- 2019년 설치된 부잔교는 하루 2회 고조와 저조 영향으로 PE 함선 연결부는 이미 끊어진 상태이나 수리를 위해서는 함선을 육상으로 분리 인양 작업이 필요하며 840㎡(420㎡×2) 크기에 따라 많은 예산이 필요함
-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총사업비 80%가 지원되는 대명항 퇴적갯벌 준설 사업에 부잔교 재설치를 반영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비용 증액
- 대명항 멀티미디어 분수조형물 정기점검, 물양장, 선착장 및 기타 어항기반시설 수선유지 필요
-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및 주차타워 등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는 약 7m 높이의 주차타워 전등 교체에 삼각 사다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낙상시 큰 부상이 예상되고 신축 수산물직판장의 천장 고는 2.5m~3m로 그리 높지 않으나 약 400개의 조명이 설치됨에 따라 작업의 안전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등 고소작업대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대명항 어항시설 유지보수
 - 2026. 02. : 고소작업대 구입
 - 2026. 03. ~ 2026. 06. : 대명항 부잔교 정밀 안전진단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수저장시설 보수공사 설계 완료 및 공사 추진 · 수산물보관 저온저장고 개폐기 교체 완료 · 대명항 안내판 전기사용료 지급(2개소)
2024	· 대명항 연계 관광 활성화 TF 운영 · 대명항 부잔교 현판정비 및 미끄럼 방지 설치 완료 · 대명항 정류소 유리파손에 따른 긴급 정비 · 주차타워 진출입램프 설치 공사 완료 · 해수저장시설 해수탱크 교체 및 보관소 재설치 공사 추진 중
2025	· 대명항 불법광고탑 철거 완료 · 대명항 부잔교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완료 · 해수관정 설치 및 저온저장고 수리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72,110	33,400	218,270	20,440	
2024	278,470	231,688	15,000	31,782	
2025	87,000	34,983	-	52,017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안영준	전화	5451
-----	-------	------------	-----	------------	----	------

내수면 양식장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양식장
사업규모	내수면 양식어가 2개소		
사업목적	내수면 양식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경쟁력 강화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1항
	제66조(보조등)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5,000	0	0	0	0	0	17,500	17,500	
국비		0						0	
도비	9,000	0					5,250	5,250	
시비	36,000	0					12,250	12,250	
기타	45,000	0					17,500	17,5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500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양식장 개보수(수조, 배관 공사 등) : 17,500*2개소*50% =	17,500	

☐ 예산요구 사유

- 내수면 양식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한 내수면 양식어업 생산성 향상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2. : 사업 신청 및 접수
 - 2026. 03. ~ 2026. 10. :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2026. 11.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 없음
2024	· 내수면 양식장 지원 : 1개소
2025	·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45,000	45,000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8급 김효근	전화	5454
-----	-------	------------	-----	------------	----	------

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

사업기간	2026. 1. ~ 2026. 3.	사업위치	하성면 전류리 67-18, -20, -21
사업규모	부지면적 1,184㎡[부지 소유자 : 영어조합법인 한강어촌체험마을(법인 해산)]		
사업목적	체험장 부지 매입을 통해 토지(법인 소유) 및 건물(시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일원화하여 향후 체험장 건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5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농교류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육성 2. 농어촌 체험교육 및 도농자매결연 4. 농특수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및 홍보 6. 그밖에 도농교류 활동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245,360	1,245,3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1,245,360	1,245,36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45,360	
한강어촌 체험장 부지 매입	401-01 시설비	· 부지매입비(전류리 67-18) : 1,100,000원*1,089㎡ · 부지매입비(전류리 67-20) : 360,000원*56㎡ · 부지매입비(전류리 67-21) : 700,000원*39㎡	= 1,197,900 = 20,160 = 27,300	

□ 예산요구 사유

- 장기미운영 및 운영자가 없어 방치되어있는 체험장 운영 정상화 및 전류리포구 연계 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 추진
- 향후 체험장 위탁운영자 모집 후 어촌체험 방안 모색 및 체험장 운영프로그램 내실화
- 향후 국·도비 지원 전류리포구 개발사업(어판장 및 체험장 신축 건립 등) 연계 어업환경 인프라 개선 및 관광객 이용 활성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	-	-	-	-	-	승인	-	-	-
일자	-	-	-	-	-	-	2025. 2.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7. : 부지매입 계획 수립
- 2025. 02. :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 2025. 09. : 매매계약 체결
- 2026. 01. : 토지매매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등기, 대금 지급
- 2026. 02. : 위탁운영 방안 수립 및 체험장활성화 방안 모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31 .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부지면적 1,184㎡	본예산 요구액 (천원)	1,245,360
부기명 (세부사업)	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	사업위치	하성면 전류리 67-18, -20, -21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박성원	전화	5452
-----	-------	------------	-----	------------	----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항·포구
사업규모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요원 2명		
사업목적	해양폐기물이 집중하여 발생하는 취약해안에 대한 폐기물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수거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해안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32,400	32,400	
국비		0					16,200	16,200	
도비		0					8,100	8,100	
시비		0					8,100	8,1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2,400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요원 : 2,700,000원*2명*6개월	= 32,400	

□ 예산요구 사유

- 대명항 등 성수기 해양폐기물이 집중하여 발생하는 취약해안에 대한 해안가 폐기물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수거 및 2차 해양환경오염 방지

□ 예산증감 사유

-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 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4.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요원(2명) 모집 공고
 - 2026. 05. ~ 2026. 10.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박성원	전화	5452
-----	-------	------------	-----	------------	----	------

대명항 개발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대명항
사업규모	어항 내 수역 20,000㎡		
사업목적	대명항 퇴적 갯벌 준설 및 어항시설 정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어촌어항법	제19조, 제23조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둘 이상의 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250,000	250,000	
국비		0						0	
도비		0					200,000	200,000	
시비		0					50,000	5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00	
대명항 개발	401-01 시설비	· 대명항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개소*250,000,000원 =	250,000	

□ 예산요구 사유

- 대명항은 퇴적 갯벌로 인해 선박 입출항이 어려우며 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가 커 개선이 시급함
- 이에따라, 항내 준설 및 시설 정비를 통해 어항 기능 회복과 어업·관광 활성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 2026. 02. ~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안영준	전화	5451
-----	-------	------------	-----	------------	----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어업인
사업규모	관내 청년 어업인 1명		
사업목적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
제15조(가족여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4,200	14,200	
국비	0	0	0				9,740	9,740	
도비	0	0	0				0	0	
시비	0	0	0				4,460	4,460	
기타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200	
청년어촌정착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청년어촌정착지원 행정비	= 1,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어촌정착 지원금 1,100,000원*12개월	= 13,200	

□ 예산요구 사유

- 청년의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 방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계획수립 및 사업신청서 접수
 - 2026. 01. ~ 2026. 12. : 사업추진 및 추진 상황 점검
 - 2026. 12. : 사업 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9급 장서진	전화	5456
-----	-------	------------	-----	------------	----	------

수산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매월 49부		
사업목적	어업인에게 최신 경향의 수산정보지를 제공함으로써 어가소득증대 및 어업기술향상에 기여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수산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업수산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업수산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4,410	4,410	
국비		0						0	
도비		0					1,323	1,323	
시비		0					3,087	3,087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410	
수산소식 및 정보제공	201-01 사무관리비	· 수산소식 및 정보제공지 : 7,500원*12개월*49명	= 4,410	

□ 예산요구 사유

- 후계어업인들에게 최신 어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업기술을 향상하여 급변하는 시장에 신속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

□ 예산증감 사유

-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수산소식 및 정보지 구독계약
 - 2026. 01. ~ 2026. 12. : 수산소식 및 정보지 제공
 - 2026. 12. :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박성원	전화	5452
-----	-------	------------	-----	------------	----	------

하천 친수시설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하천 친수공간
사업규모		데크 등 시설물 정비, 보행교, 징검다리, 경관시설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		
사업목적		하천 친수공간 내 시설물 정비 및 이용자 안전 확보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3조(국가등의 책무) 제 1항
		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50,000	175,000	175,000	0	0	0	170,000	-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50,000	175,000	175,000				170,000	-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0,000	
하천 친수시설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걸포체육관 보행데크 난간 교체 : 192,000원/m*260m · 하천 친수시설 유지관리 : 4,000,000원/개소*30개소	= 50,000 = 120,000	

□ 예산요구 사유

- 걸포체육관 인근 하천구역 내 노후된 데크 산책로 휨스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 하천 친수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필요
- 계양천 징검다리 상습 침수에 따른 보행교 설치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노후된 하천 친수시설 정비에 따른 민원 증가
- 보행자 데크, 경사로 편의시설 등 하천 친수시설 추가 설치로 유지관리 비용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2. : 실시설계용역
 - 2026. 03. : 공사착공
 - 2026. 12. :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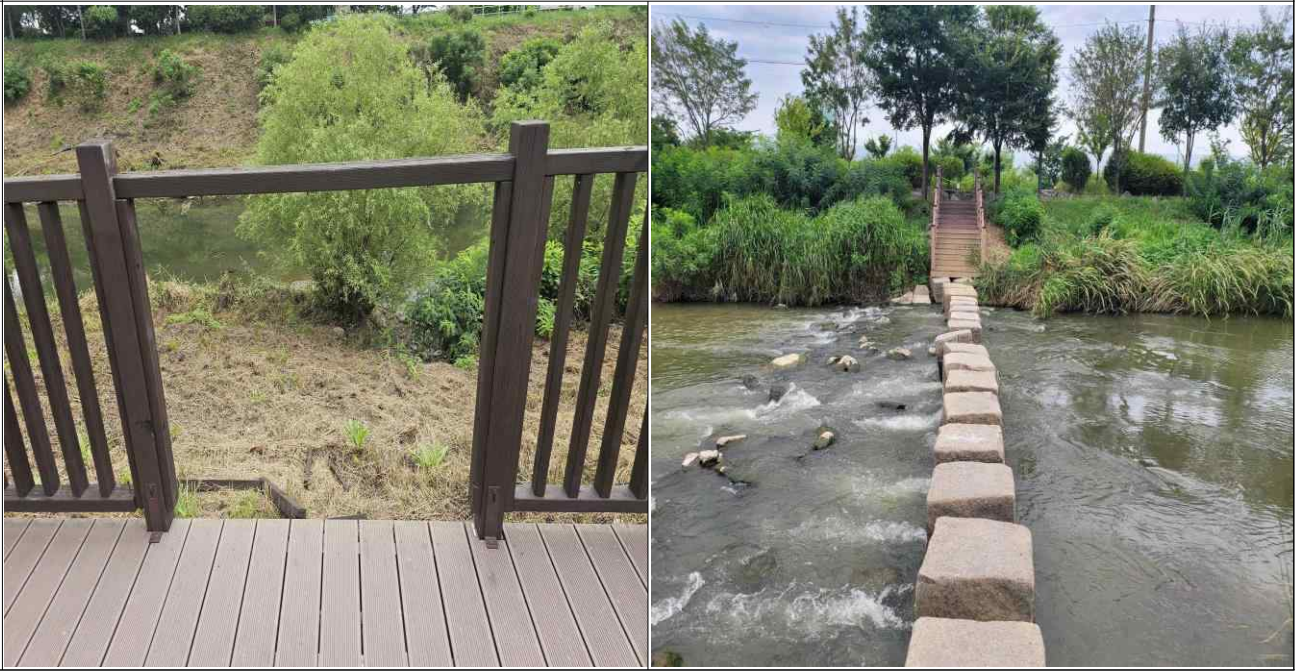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2024. 02. ~ 04. : 신향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완료 · 2024. 04. ~ 06. : 신향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4. 08. ~ : 신향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추진중
2025	· 2025. 01. ~ 02. : 곽포체육관 앞 보행데크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5. 02. ~ 04. : 곽포체육관 앞 보행데크 정비공사 완료 · 2025. 08. ~ : 가마지천 징검다리 보수공사 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50,000	248,413	-	1,587	
2025	175,000	152,666	-	22,334	10.31 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산책로 정비 260m 외 하천 친수시설 30개소 정비	본예산 요구액 (천원)	170,000
부기명 (세부사업)	하천 친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위치	걸포동 1550-57 외 관내 하천 친수공간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친수조성팀장 황지영	담당자	녹지8급 이나경	전화	5415
-----	-------	------------	-----	----------	----	------

풍무동 원당교(계양천)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

사업기간		2026. 3. ~ 2026. 6.	사업위치	풍무동 573-3
사업규모		데크산책로 설치 L=105m(울타리 70경간)		
사업목적		김포시-인천광역시 서구 간 계양천 산책로를 연결하는 하부 산책로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
		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220,000	0	0	20,000	200,000	170,000	-50,000	
국비								0	
도비								0	
시비		220,000			20,000	200,000	170,000	-50,000	2025 특별교부세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0,000	
풍무동 원당교(계양천)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	401-01 시설비	· 산책로 연결 보행데크(L=105m*W=2m) : 1,619,000원*105m =	17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3년 주민참여제안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서구 구간의 사업주체 미확정과 인천검단 수질개선시설 공사중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2023년 2회 추경 예산 반납 처리
- 인천검단 수질개선시설의 준공(5월)과 2025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측에서 산책로 연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업 재추진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8월 특별교부세를 200백만원을 교부 받았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 예산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0.: 주민참여예산 채택
- 2023. 07.: 인천광역시 서구 사업주체 미확정, 계양천 수질개선시설 공사
- 2023. 12.: 2023년 2회 추경 전액감액
- 2025. 09.: 원당교 하부 산책로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26. 03.: 공사 착공
- 2026. 06.: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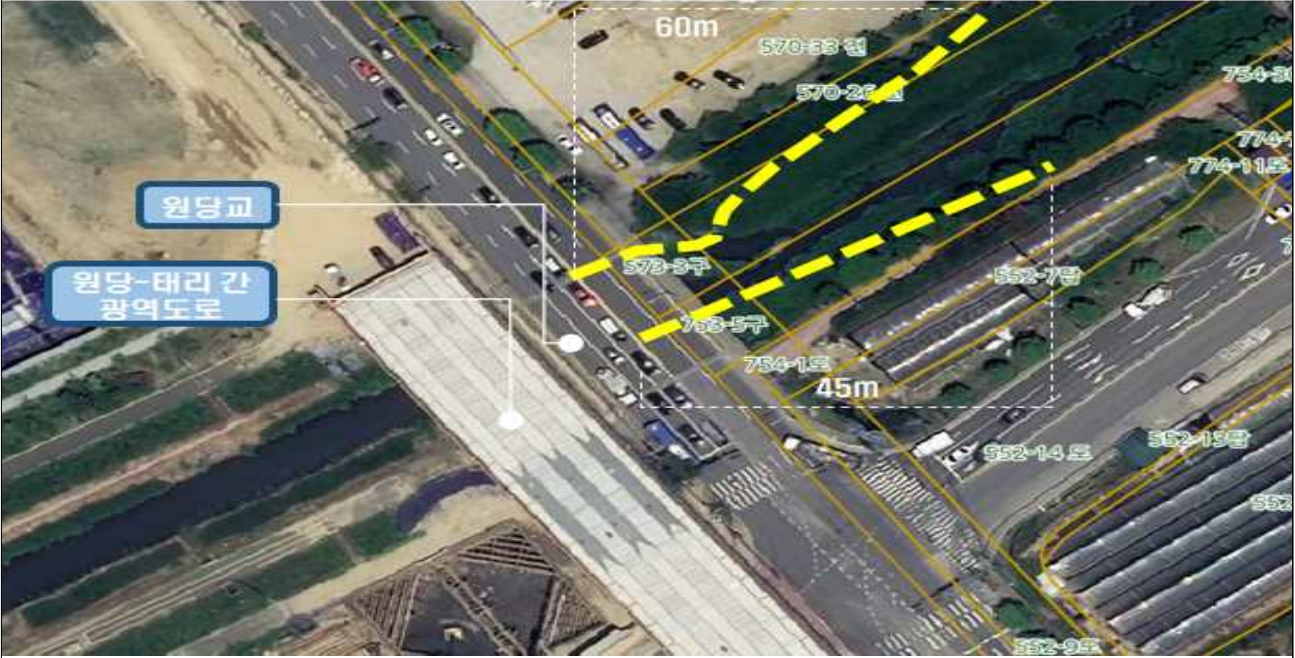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220,000	-	-	220,000	10.31 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데크산책로 설치(L=105m, B=2m)	본예산 요구액 (천원)	170,000
부기명 (세부사업)	풍무동 원당교(계양천) 하부 산책로 연결 사업	사업위치	풍무동 573-3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친수조성팀장 황지영	담당자	녹지8급 이나경	전화	5415
-----	-------	------------	-----	----------	----	------

서암천 산책로 조성사업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동일산리 200-2번지 일원
사업규모	테크전망대 1개소, 벤치, 퍼걸러 설치		
사업목적	하천변 유휴공간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들의 일상 속 휴식처 제공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3조(국가등의 책무) 제 1항 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95,000	9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95,000	9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5,000	
서암천 산책로 조성공사 (주민참여예산)	401-01 시설비	· 전망대 조성 80,000,000 * 1개소 · 벤치 1,000,000 * 2개 · 퍼걸러 13,000,000 * 1개	= 80,000 = 2,000 = 13,0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 내 유휴공간인 서암천을 활용하여 생태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조성하고, 향후 관광자원 또는 문화공간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서암천 인근 주민 간 소통과 커뮤니티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예산증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3. : 기본계획 구상 및 실시설계 실시
 - 2026. 4. ~ 2026. 12. : 서암천 산책로 조성공사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 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데크전망대 1개소, 벤치, 퍼걸러 설치	본예산 요구액 (천원)	95,000
부기명 (세부사업)	서암천 산책로 조성공사	사업위치	통진읍 동을산리 200-2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친수조성팀장 황지영	담당자	녹지8급 이나경	전화	5415
-----	-------	------------	-----	----------	----	------

해 · 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08. 12. ~ 2028. 12.	사업위치	(한강구간) 일산대교 ~ 김포대교 8.4km (염하구간) 초지대교 ~ 세어도선착장 6.6km
사업규모	한강구간 경계철책 철거(8.4km), 염하구간 경계철책 철거(6.6km), 군·작전보완시설 공사 등		
사업목적	경계철책 철거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수변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	제5조 제1항
		김포시장은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09,762	1,400,000	1,000,000	0	0	400,000	1,740,000	340,000	
국비	648,524	0					200,000	200,000	
도비	350,000	0						0	
시비	2,011,238	1,400,000	1,000,000			400,000	1,540,000	14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40,000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	401-01 시설비	· 한강구간 경계철책 철거사업 - 경계철책(백마도~김포대교) 철거사업 = 1,600,000 - 어민통문 출입절차 개선사업비 : 25,000,000원*4개소 = 100,000		
	401-02 감리비	· 한강구간 경계철책 철거사업 - 전기 및 건축 공사 감리비 = 40,000		

□ 예산요구 사유

- 50여년 간 경계철책에 막혀 있던 자연환경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김포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고, 김포 한강 및 대명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한강구간]

- 2008년 합의각서에 따라 설치한 감시장비(삼성SDS)의 군성능시험불합격으로 중단되었던 한강 구간 경계철책 철거사업이 최근 군부대(육군 제17사단)와의 합의각서 체결 협의로 사업 계획이 수립됨

- 군부대(육군제17사단)과의 합의각서 체결 완료에 따른 경계철책(백마도~김포대교) 철거 및 백마도 개방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함

[염하구간]

- 염하강 산책로 구간 현장 여건상 그늘 및 휴게 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경관 개선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후행 공사가 필요함
- 2022년 약암방조제 유실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되어 전기·통신선 가이설 및 철거와 같은 설계 변경 요인이 다수 발생되어 염하1구간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증액됨
- 군부대(육군제17사단)과의 합의각서 수정 체결에 따른 염하2구간 경계철책 완전 철거 추진을 위한 전기·통신·토목 공사 물량 증가 및 군작전보완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추진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22.11. (재심사)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한강구간]

- 2008.12. : 합의각서 체결 (김포시 - 육군 제17사단)
- 2010.06.~2021.11. : 감시장비 설치 및 관련 소송 진행(김포시 승소)
- 2021.11.~2022.10. : 감시장비 설치사업비 환수(78억원) 및 철거 완료
- 2022.10.~ : 사업추진을 위한 유관기관(한강유역환경청, 육군 제17사단) 협의
- 2024.09. : 경계철책 구간 중 부분개방 협의 완료(육군 제17사단)
 - ↳ ① 율령철책 철거(7.9km) ② 데크산책로 설치(3.4km) ③ 어민이동로포장(2.7km) ④ 통문개방(3개소)
- 2025.07. : 어민이동로 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5.07. : 백마도 개방 및 철책철거를 위한 현장토의 (김포시장-육군제17사단장)
- 2025.10. : 합의각서 체결 (김포시 - 육군 제17사단, 백마도 개방 및 일원 철책철거)

[염하구간]

- 2021.01.~06. :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
- 2021.07. : 합의각서 체결 (김포시 - 육군 제17사단, 해병대 제2사단)
- 2021.08. : 염하구간 철책 철거사업 착공
- 2022.04. : 염하구간 공사중지(약암방조제 유실에 따른 보수공사 선행, 건설도로과 추진)
- 2024.12. : 약암방조제 보수공사 준공(건설도로과)
- 2025.05. : 염하2구간 경계철책 철거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착수
- 2025.10. : 합의각서 변경 체결 (김포시 - 육군 제17사단, 염하2구간 철책 완전 철거)

○ 향후계획

[한강구간]

- 2025.11.~2026.04. : 한강 철책(백마도~김포대교) 철거 및 백마도 일원 친수공간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 2025.12. : 어민이동로 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6.01.~07. : 어민이동로 포장공사
- 2026.04.~12. : 한강 철책(백마도~김포대교) 철거 및 백마도 친수공간 조성 공사

[염하구간]

- 2025.11.~2026.06. : 염하1구간 경계철책 철거 공사 재착공 및 준공
- 2025.12. : 염하2구간 경계철책 철거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6.06.~12. : 염하2구간 경계철책 철거 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38,835,302	21,235,302	6,900,000	1,740,000	5,160,000	10,700,000	
공 정 별	설계비	1,021,000	621,000	100,000	100,000		300,000	
	보상비	0		0				
	공사비	37,010,000	19,850,000	6,760,000	1,600,000	5,160,000	10,400,000	
	감리비	40,000		40,000	40,000			
	부대비	764,302	764,302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한강구간) (일산대교 - 전류리포구 8.4km) 철책철거 구간 자전거도로 조성 완료 · (염하구간) 염하강 경계철책 철거구간 통신공사 계약 및 착공(초지대교 ~ 인천시계 6.6km) · (염하구간) 염하강 경계철책 철거구간 3.3km에 대한 통신, 전기선로 가이설 완료
2024	· (염하구간) 염하강 산책로 경관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2025	· (한강구간) 어민이동로 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합의각서 체결 · (염하구간) 염하2구간 경계철책 철거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 합의각서 수정 체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339,361	1,679,600	2,659,761	-	
2024	3,009,762	100,141	2,909,621	-	
2025	4,309,621	17,248	4,292,373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철책 철거, 군 작전보완시설 설치 등	본예산 요구액 (천원)	1,740,000																															
부기명 (세부사업)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	사업위치	(한강구간) 일산대교 ~ 김포대교 8.4km (염하구간) 초치대교 ~ 세어도선착장 6.6km																																	
위치도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 위치도 한강1구간(1선, 8.4km) * 2선 경계철책 철거(2023. 6.) 한강2구간(1선, 8.4km) 염하1구간(완전철거, 3.3km) 염하2구간(완전철거, 3.3km) 경계철책 철거 개요 <table><thead><tr><th>구 분</th><th>계</th><th>연장</th><th>철거계획</th><th>비 고</th></tr></thead><tbody><tr><td rowspan="3">한강구간</td><td>소계</td><td>16.8km</td><td></td><td></td></tr><tr><td>1구간</td><td>8.4km</td><td>1선, 2선</td><td>23. 6. 2선 불거하역</td></tr><tr><td>2구간</td><td>8.4km</td><td>1선</td><td></td></tr><tr><td rowspan="3">염하구간</td><td>소계</td><td>6.6km</td><td></td><td></td></tr><tr><td>1구간</td><td>3.3km</td><td>1선, 2선</td><td></td></tr><tr><td>2구간</td><td>3.3km</td><td>1선, 2선</td><td></td></tr></tbody></table> 현장사진					구 분	계	연장	철거계획	비 고	한강구간	소계	16.8km			1구간	8.4km	1선, 2선	23. 6. 2선 불거하역	2구간	8.4km	1선		염하구간	소계	6.6km			1구간	3.3km	1선, 2선		2구간	3.3km	1선, 2선	
	구 분	계	연장	철거계획	비 고																															
한강구간	소계	16.8km																																		
	1구간	8.4km	1선, 2선	23. 6. 2선 불거하역																																
	2구간	8.4km	1선																																	
염하구간	소계	6.6km																																		
	1구간	3.3km	1선, 2선																																	
	2구간	3.3km	1선, 2선																																	
현장사진	한강 구간 염하 구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친수조성팀장 황지영	담당자	시설7급 남지연	전화	5413
				녹지7급 정다운		5417

배수문 유지관리-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굴포배수문 등 57개소
사업규모	배수문 관리 인부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목적	배수문 사전 정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2조, 제4조	
		[하천법 제2조]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소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하천법 제4조]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89,842	391,761	391,761	0	0	0	425,409	33,64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89,842	391,761	391,761				425,409	33,64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25,409	
배수문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배수문관리 인건비	계 276,829	
		- 상 : 11,730원 * 8시간 * 11개소 * 109일	= 112,515	
		- 중 : 11,730원 * 8시간 * 11개소 * 66일	= 68,128	
		- 하 : 11,730원 * 8시간 * 25개소 * 41일	= 96,186	
	201-01 사무관리비	· 배수문관리자 특별안전보건교육 : 160,000원*37명	계 14,060	
		· 배수문관리자 상해보험료 : 220,000원*37명	= 5,920 = 8,140	
	201-02 공공운영비	· 배수문 홍수관리시스템 전용회선비 : 400,000원*24개소*12월	계 134,520	
		· 배수문 전기요금 : 650,000*12월 7,800,000원	= 115,200	
		· 배수문 유지관리비 : 960,000원*12월	= 7,800	
			= 11,520	

□ 예산요구 사유

- 배수문은 관리범위가 넓고(市 전역)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설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 투입 필요
- 안정적 배수문 가동을 위한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집중호우 대비 배수문 가동 횟수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 전기요금 월평균 : 2024년 520,930원 → 2025년 640,580원(23% 증가)
-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5개소 신설로 전용회선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2. ~ 2026. 6. : 상반기 배수문(57개소) 점검 및 유지보수
 - 2026. 3. : 배수문 관리 인부임 읍·면·동 재배정
 - 2026. 5. : 배수문 관리자 상해보험 가입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전문기관위탁)
 - 2026. 5. ~ 10. : 배수문 관리자 투입
 - 2026. 7. ~ 2026.12. : 하반기 배수문(57개소) 점검 및 유지보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굴포배수문 등 57개소 전기요금 납부 · 김포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전용회선비 지급
2024	· 굴포배수문 등 57개소 전기요금 납부 · 김포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전용회선비 지급 · 배수문관리자(37명) 상해보험 가입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2025	· 굴포배수문 등 57개소 전기요금 납부 · 김포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전용회선비 지급 · 배수문관리자(37명) 상해보험 가입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90,326	350,597	-	39,729	
2024	389,842	364,732	-	25,110	
2025	391,761	361,078	-	30,68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방재시설팀장 이동근	담당자	시설8급 위인복 방재안전8급 김민형	전화	5446 5444
-----	-------	------------	-----	------------------------	----	--------------

배수문 유지관리-시설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굴포배수문 등 57개소
사업규모	배수문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목적	배수문 사전 정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하천법		제2조, 제4조
	[하천법 제2조]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소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하천법 제4조]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66,000	361,000	361,000	0	0	0	470,000	109,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66,000	361,000	361,000				470,000	109,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70,000	
배수문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배수문 시설 보수보강 · 배수문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 70,000 = 400,000	

□ 예산요구 사유

- 배수문 시설 보수보강
 - 배수문 정상 작동 불가 시 침수피해 우려로 상시 안정적 시설 관리 필요
 - 노후 토목·건축구조물 보수 보강
 - 기계, 전기, 통신, 등 시설물 보수 및 소모품 교체
- 배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지방하천 배수문은 2종 시설로 정밀안전점검 대상
 - 김포시 지방하천 배수문 12개소 해당

□ 예산증감 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배수문은 시특법 대상시설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6. : 노후 배수문 권양기 교체공사 및 안전시설 보수공사
 - 2026. 01. ~ 2026. 12. : 배수문 57개소 정비공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포내자동문비 정비용 차수막(스톱로그) 제작 구입 · 포내자동문비 정비공사(내문)
2024	· 2024년 상반기 노후 배수문 시설물 교체공사 · 고양배수문 외 3개소 구조물 보수공사 · 배수문 안전시설 설치공사 · 포내배수문 방류부 권양기 보수공사
2025	· 포내배수문 전기실 배수로 정비공사 · 노후배수문 권양기 교체 · 봉성1배수문 외 3개소 유입부 준설공사 · 고양배수문 전력공급방식 변경에 따른 전기공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50,000	382,910	-	67,090	
2024	466,000	441,705	-	24,295	
2025	361,000	309,576	-	51,424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굴포배수문 등 57개소	본예산 요구액 (천원)	470,000
부기명 (세부사업)	배수문 유지관리-시설비	사업위치	고촌읍 신곡리 194-21 등 57개소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방재시설팀장 이동근	담당자	시설8급 위인복	전화	5446
-----	-------	------------	-----	----------	----	------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금포로 1127 등 26개소
사업규모	운양배수펌프장 등 26개소 유지관리		
사업목적	체계적인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와 운영으로 침수피해 최소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2조 및 제4조
		[하천법 제2조]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 배수펌프장 ·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하천법 제4조]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646,009	3,210,859	2,810,859	0	0	400,000	2,784,624	-426,23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646,009	3,210,859	2,810,859			400,000	2,784,624	-426,23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784,624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누 계	991,964	
		· 전기안전관리자(연중) 인건비	= 248,465	
		- 기본급 : 133,046원*5명*249일	= 165,643	
		- 수당 : 165,643,000원*50%	= 82,822	
		·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	= 142,094	
		- 기본급 : 133,046원*4명*178일	= 94,729	
		- 수당 : 94,729,000원*50%	= 47,365	
		· 전기안전관리원 인건비	= 205,517	
		- 기본급 : 128,287원*6명*178일	= 137,011	
		- 수당 : 137,011,000원*50%	= 68,506	
		· 보조관리원 인건비	= 270,260	
		- 기본급 : 93,840원*16명*120일	= 180,173	
		- 수당 : 180,173,000원*50%	= 90,087	
		· 4대 보험료 : 866,336,000원*14%	= 121,288	
		·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 140,000원*31명	= 4,340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누 계	198,520	
		·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정기검사 : 4,150,000원*21개소 =	87,150	
		·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용역(전기, 소방, 무인경비 등) =	70,000	
		· 유지관리용 물품 구입 : 1,250,000원*12월 =	15,000	
		· 기간제근로자 상해보험료 : 220,000원*31명 =	6,820	
		· 기간제근로자 안전보건교육비 : 300,000원*48시간 =	14,400	
		· 기간제근로자 비상근무 급식비 : 150,000원*31명 =	4,650	
		· 공무원 피복비 : 500,000원*1명 =	500	
	201-02 공공운영비	누 계	1,594,140	
		· 공공요금(전기, 수도) : 120,000,000원*12월 =	1,440,000	
		· 통신요금 : 1,500,000원*12월 =	18,000	
		· 협잡물 처리비 : 330,000*66톤 =	21,780	
		·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 550,000원*10월 =	5,500	
		· 시설물 유지관리 : 330,000원*26개소*12월 =	102,960	
		·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 100,000원*17명 =	1,700	
		·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 350,000원*12월 =	4,200	

□ 예산요구 사유

-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시설로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보강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성능 유지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재정 여건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승인

□ 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6. 01. ~ 2026. 12. :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납부
 - 2026. 02. ~ 2026. 04. :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정기검사
 - 2026. 05. ~ 2026. 10. :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대응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배수펌프장 기간제근로자 30명 채용 · 공공운영비(전기, 수도, 통신) 납부 ·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용역(전기, 소방, 무인경비 등)
2024	· 배수펌프장 기간제근로자 31명 채용 · 공공운영비(전기, 수도, 통신) 납부 ·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용역(전기, 소방, 무인경비 등)
2025	· 배수펌프장 기간제근로자 31명 채용 · 공공운영비(전기, 수도, 통신) 납부 ·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용역(전기, 소방, 무인경비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622,201	2,229,589	-	392,612	
2024	2,858,571	2,461,999	-	396,572	
2025	3,210,859	2,621,545	-	589,31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방재시설팀장 이동근	담당자	공업7급 손준영 방재안전8급 김민형	전화	5443 5444
-----	-------	------------	-----	------------------------	----	--------------

배수펌프장 정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금포로 1127 등 26개소
사업규모		운양배수펌프장 등 26개소 보수 및 보강		
사업목적		노후 시설물 정비 등 안정적인 배수펌프장 설비 성능 유지를 통해 침수피해 최소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2조 및 제4조
		[하천법 제2조]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 배수펌프장 ·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하천법 제4조]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30,000	1,152,000	1,152,000	0	0	0	255,000	-897,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30,000	1,152,000	1,152,000				255,000	-897,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55,000	
배수펌프장 정비	401-01 시설비	· 배수펌프장 예초 및 관목전정공사 : 55,000,000원 · 배수펌프장 준설 : 100,000,000원 · 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수 및 보강	= 55,000 = 100,000 = 100,000	

□ 예산요구 사유

-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시설로 정기적인 보수 및 보강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성능 유지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재정 여건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6. 01. ~ 2026. 12. : 배수펌프장 26개소 예초, 전정 및 준설
- 2026. 02. ~ 2026. 04. : 운양1배수펌프장 게이트펌프 권양기 제어반 6대 교체
- 2026. 09. ~ 2026. 12. : 배수펌프장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 2026. 05. ~ 2026. 10. :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대응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석탄배수펌프장 흡수정 준설 공사 · 운양1배수펌프장 외 10개소 제진기컨베이어 개선(기계설비) 공사 · 향산2배수펌프장 토출밸브 교체공사 · 석탄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2024	· 봉성2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 제촌, 월드배수펌프장 노후 제어설비 교체공사 · 노을간이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 도사간이펌프장 우수관로 침하부 보강공사 · 노을간이펌프장 기동반 증설 공사 · 배수펌프장 예초 및 관목전정 공사 · 월드배수펌프장 외 7개소 준설공사 · 배수펌프장 토목 및 건축구조물 보수·보강공사
2025	· 운양배수펌프장 노후 계단 교체 · 봉성3배수펌프장 제진기 점검로 설치 · 향산1·3배수펌프장 제어설비 교체 · 석탄배수펌프장 외 3개소 준설 · 봉성2·3배수펌프장 유입부 준설 · 배수펌프장 예초 및 관목전정 · 향산2배수펌프장 진입도로 재포장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905,367	1,383,132	1,091,278	430,957	
2024	2,121,278	2,089,328	-	31,950	
2025	1,152,000	657,493	-	494,507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배수펌프장 26개소 예초 등 유지관리	본예산 요구액 (천원)	255,000
부기명 (세부사업)	배수펌프장 정비	사업위치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386-44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방재시설팀장 이동근	담당자	시설7급 지정은 공업7급 손준영	전화	5442 5443
-----	-------	------------	-----	----------------------	----	--------------

노후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사업기간	2026. 1. ~ 2026. 6.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누산봉성로178번길 165
사업규모	봉성2배수펌프장 배수펌프 1대 교체		
사업목적	노후 배수펌프 교체를 통해 재난발생 예방 등 침수 피해 최소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2조 및 제4조	
		[하천법 제2조]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 배수펌프장 ·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하천법 제4조]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00,000	300,000	0	0	0	300,000	470,000	17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00,000	300,000				300,000	470,000	170,000	2025 특별교부세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70,000	
노후 배수펌프장 정비	401-01 시설비	· 봉성2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 470,000,000원*1대 =	470,000	

□ 예산요구 사유

-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시설로 정기적인 보수 및 보강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성능 유지 필요
- 봉성2배수펌프장 배수펌프 노후(2008년 설치)에 따른 교체사업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도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결정(2025. 8. 18.)에 따른 「봉성2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사업 예산 부족분 반영(470,00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6. 01. : 배수펌프 물품 구매
 - 2026. 06. : 시운전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향산2배수펌프장 배수펌프 2대 교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100,000	800,000	-	30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배수펌프 1대 교체	본예산 요구액 (천원)	470,000
부기명 (세부사업)	노후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누산봉성로178번길 165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방재시설팀장 이동근	담당자	공업7급 손준영	전화	5443
-----	-------	------------	-----	----------	----	------

유수지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장기동 2006번지 외 30개소
사업규모		유수지 31개소		
사업목적		여름철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수지(우수 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제3항 제5호
	위임규정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수립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529,000	529,000	0	0	0	533,000	4,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29,000	529,000				533,000	4,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33,000	
유수지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유수지 유용미생물 운반 임차료(7개소) : 600,000원*15회	= 9,000	
	201-02 공공운영비	· 유수지 시설 유지관리(31개소)	= 4,000	
	401-01 시설비	· 유수지 준설공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 : 240,000,000원	= 240,000	
		· 유수지 예초 및 관목전정공사 : 240,000,000원	= 240,000	
		· 유수지 시설물 보수공사 : 14,000,000원	= 14,000	
		· 유수지 방류부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 13,000,000원*2회	= 26,000	

□ 예산요구 사유

-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빈도 증가에 따라 우수관거 및 하수도의 설계홍수량을 초과한 우수 유출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수지의 철저한 관리 필요
- 여름철 유수지의 야생 유해동물 출현, 미관저해, 악취 등 민원 발생으로 예초 및 벌목, 준설 등 시설물 보수공사를 통한 유수지 환경 개선

□ 예산증감 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유수지 방류부 정기안전점검 용역(연2회) 추진
- 유수지 예초공사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0. : 유수지 정기점검을 통한 시설물 보수 및 보강
- 2026. 03. ~ 06. : 유수지 퇴적토사 준설공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
- 2026. 03. ~ 11. : 유수지 예초 및 관목전정공사(1,2권역)
- 2026. 05. ~ 10. : 유수지 유용미생물 투입 살수차 용역
- 2026. 05. ~ 06. : 상반기 유수지 방류부 정기안전점검 용역
- 2026. 11. ~ 12. : 하반기 유수지 방류부 정기안전점검 용역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10.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유수지 8개소 퇴적토사 준설공사 및 폐기물처리 용역 · 풍무유수지 법면 정비공사 및 폐기물처리 용역 · 걸포공원유수지 등 3개소 환경정비 공사 · 유수지 방류부 보수공사(2개소) · 유수지 유지관리공사(예초 및 관목전정)-1,2권역
2024	· 유수지 11개소 퇴적토사 준설공사 · 유수지 11개소 준설토 폐기물처리 용역 · 유수지 유용미생물 투입 살수차 용역 · 유수지 유지관리공사(예초 및 관목전정)-1,2권역 · 청수유수지 외 4개소 안전웬스보수 및 출입문 설치공사 · 마성교회유수지 외 2개소 시설정비공사 · 걸포공원유수지 안전웬스 정비공사 등
2025	· 유수지 5개소 퇴적토사 준설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 유수지 예초 및 관목전정공사(1,2권역) · 유수지 주의사항 안내표지판 구매설치 · 유수지 유용미생물 투입 살수차 용역 · 한가람유수지 외 3개소 안전웬스 보수공사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00,000	433,542	-	166,458	
2024	497,000	487,699	-	9,301	
2025	529,000	276,048	-	252,952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유수지 유지관리 31개소	본예산 요구액 (천원)	533,000
부기명 (세부사업)	유수지 유지관리	사업위치	김포시 구래동 6873-1외 30개소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방재시설팀장 이동근	담당자	시설7급 지정은	전화	5442
-----	-------	------------	-----	----------	----	------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재난 예·경보시스템(재난감시 CCTV 114개소, 기상관측장비 6개소, 수위·음성경보시스템 17개소) 유지관리 등			
사업목적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등 유지보수를 통해 재난 발생 예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제1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277,535	277,535	0	0	0	283,735	6,2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77,535	277,535				283,735	6,2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83,735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서버용 백신 프로그램 갱신 : 425,000원*5대 = · PC용 백신 프로그램 갱신 : 40,000원*9대 = · 통합 백신프로그램 갱신 : 850,000원*1대 =	2,125 360 850	
	201-02 공공운영비	·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 2,000,000원*12월 = · 기상관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1,900,000원*12월 = · 기상관측시스템 보안장비 유지보수 용역 : 750,000원*12월 = · 재난감시 CCTV 유지보수 용역 : 3,200,000원*12월 = · 서버실 향온향습기 유지보수 용역 : 200,000원*12월 = · 전기요금 : 900,000원*12월 = · 통신요금 : 14,000,000원*12월 =	24,000 22,800 9,000 38,400 2,400 10,800 168,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해양하천과 서버실 UPS 설치 : 5,000,000원 =	5,000	

□ 예산요구 사유

-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한 사전 재난감시체계 구축

□ 예산증감 사유

- 재난 예·경보시스템(CCTV) 확충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증가
 - 2025년 : CCTV 16개소, 수위관측장비 2개소 / 2026년 : CCTV 33개소
- 정전 시 재난관리시스템 상황 유지를 위한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설치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2026. 12. : 용역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김포시 관내 예·경보시스템(CCTV, 기상관측시스템 등) 유지관리 · 기상관측시스템 상반기 정기점검에 따른 배터리(4개), 공기순환기(5개) 교체 · CCTV 17개소 신규설치 집행(재난예·경보확충사업)
2024	· 김포시 관내 예·경보시스템(CCTV, 기상관측시스템 등) 유지관리 · 노후 AWS(5대), 음성경보시스템(1대), 수위관측장비(1대) 교체(재난예·경보확충사업)
2025	· 김포시 관내 예·경보시스템(CCTV, 기상관측시스템 등) 유지관리 · 수위관측장비(1대) 및 CCTV(10대) 신규설치, 수위관측장비(1대) 및 CCTV(15대) 교체(재난예·경보확충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24,365	220,296	-	4,069	
2024	274,079	142,999	-	131,080	
2025	277,535	136,145	-	141,39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방재시설팀장 이동근	담당자	방재안전8급 김민형	전화	5444
-----	-------	------------	-----	------------	----	------

스마트 하천안전차단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하천 8개소
사업규모		하천차단시스템 98개소 유지관리		
사업목적		관내 하천 내 설치되어 운영중인 하천안전차단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안전확보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3조
		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30,000	30,000	0	0	0	30,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000	30,000				30,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세부사업명 입력	401-01 시설비	. 유지관리용역비 : 4,000,000원*5개월(통신설비자 4명) = 20,000 . 시설물 교체에 따른 자재비 = 10,000 - 하천 차단 시설물 : 350,000원*20개 = 7,000 - 하천 안전 시설물(말뚝 등) : 25,000원*40개 = 1,000 - 하천 안전시설 보수 물품(안전체인, 카라비너 및 표지판 등) = 2,000		

□ 예산요구 사유

- 2022년~2025년 구축된 스마트하천안전차단시스템의 우기철 정상운동을 위하여 운영시스템 및 현장 시설물의 전기·통신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가 필요
- 침수위험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로서 전기·통신에 대한 점검 및 보수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며, 유지관리용역을 통하여 우기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용역착수
 - 2026. 07. ~ 09. : 호우대비 집중관리
 - 2026. 10. : 용역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월별 정기점검 3회 실시 장마철 수시점검 4회 실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30,000	-	-	3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하천차단시설 94개소 유지관리	본예산 요구액 (천원)	30,000
부기명 (세부사업)	스마트 하천안전차단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위치	관내 하천차단시설 94개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임수진	담당자	공업9급 김태호	전화	5429
-----	-------	------------	-----	----------	----	------

재난 예·경보시스템 서버교체 사업

사업기간	2026. 1. ~ 2026. 3.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재난 예·경보시스템 서버교체		
사업목적	노후화된 서버 교체를 통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안정성 확보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제1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70,000	17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170,000	17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0,000	
재난 예·경보시스템 서버교체 사업	401-01 시설비	· 재난 예·경보시스템 통신서버 교체 : 170,000,000원 =	170,000	

□ 예산요구 사유

- 기존 통신서버(2016년 설치) 노후로 장애 예방 및 안정적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장비 교체 필요(내용연수 7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반영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2025.11. 반영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2. : 사업 착수
 - 2026. 03. : 사업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방재시설팀장 이동근	담당자	방재안전8급 김민형	전화	5444
-----	-------	------------	-----	------------	----	------

인력운영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봉성2배수펌프장(양촌읍 누산리 1052-127)
사업규모	배수펌프장 공무원 1명		
사업목적	체계적인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와 운영으로 침수피해 최소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2조 및 제4조
		[하천법 제2조]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 배수펌프장 ·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하천법 제4조]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0,175	72,372	72,372	0	0	0	75,168	2,79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0,175	72,372	72,372				75,168	2,79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5,168	
인력운영비	101-03 공무원(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배수펌프장 공무원 급여 - 기본급 : 3,542,290원*1명*12월 - 정액급식비 : 140,000원*12월 - 명절휴가비 : 3,542,290원*60%*2회 - 가족수당 : 170,000원*12월 - 초과근무수당 : 28,980원*40시간*12월 - 연차유급휴가수당 : 154,560원*10일	= 65,936 = 42,508 = 1,680 = 4,251 = 2,040 = 13,911 = 1,546	
	304-04 공무원(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 배수펌프장 공무원 4대보험료 : 65,936,000원*14%	= 9,232	

□ 예산요구 사유

- 원활한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력운영비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임금협상에 따른 단가 및 호봉 상승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6. 01. ~ 2026. 12. :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무직 근로자 1명 : 봉성2배수펌프장 운영 및 방재시설 운영 지원
2024	· 공무직 근로자 1명 : 봉성2배수펌프장 운영 및 방재시설 운영 지원
2025	· 공무직 근로자 1명 : 봉성2배수펌프장 운영 및 방재시설 운영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0,175	56,173	-	14,002	
2024	70,175	56,238	-	13,937	
2025	72,372	49,950	-	22,42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방재시설팀장 이동근	담당자	공업7급 손준영	전화	5443
-----	-------	------------	-----	----------	----	------

간이침대 구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부서 운영을 위한 물품(복합기 1대) 구입		
사업목적	직원들의 업무 효율 향상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 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400	4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0	0				400	4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0	
기본경비 (해양하천과)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 간이침대 구입 : 200,000원*2대 =	400	

□ 예산요구 사유

- 연속되는 비상근무(2교대)로 사무실 내 근무자의 휴식 공간 필요
- 간이침대 구비로 비상근무 환경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일자	2025.11.반영예정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간이침대 구입 계약 체결
 - 2025. 02. : 물품 납품 및 검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구매물품 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물품규격	간의침대 2대	본예산 요구액 (천원)	400
부기명 (세부사업)	간의침대 구입	설치장소	사우중로 1, 해양하천과		
물품사진	홈 / 침대 / (1인용)싱글 뉴라꾸라꾸침대1인용 4탄 싱글 간이 접이식침대 CBK-004S 판매가177,000원 국내·해외배송국내배송 배송방법택배 배송비무료 선택 - [필수]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 (최소주문수량 1개 이상) TOTAL (QUANTITY) 0 (0개) BUY IT NOWCARTWISH LIST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장 민경수	담당자	행정8급 손지민	전화	5425
-----	-------	------------	-----	----------	----	------